

2023년 제1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2023년도 제1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연구진 >

■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 서대현 초빙연구위원(연구총괄)
주재민 연구원

외부 연구진 : 변태근 대표 유진도시건축연구소
최복균 책임연구원 유진도시건축연구소

검토위원 : 임 선 대표 주식회사 반석피엠씨

목 차

요약	1
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51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51
가. 사업의 추진 배경	51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51
2. 사업의 주요 내용	52
가. 사업의 추진 근거	52
나. 사업의 추진경위	55
다. 사업의 개요	56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66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66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68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70
1. 사업대상 지역 주변 환경 분석	70
가. 부산광역시	70
나. 사하구	75
2. 사업대상 지역 치안 환경 분석	78
3. 시설 현황 분석	82
4. 관련 계획 검토	85
가. 사업대상 부지 관련 계획	85
나. 사업대상 관련 계획	87
5.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91
가. 사업계획 관련 쟁점	91

나. 비용 관련 쟁점	92
다. 정책성 분석 관련 쟁점	93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95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95
2. 사업부지의 적절성 검토	97
가. 부지 위치의 적절성 검토	97
나. 부지 면적의 적절성 검토	99
3.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02
가. 사업계획안의 시설계획	102
나. 세부 시설규모의 검토 기준	105
다. 경찰서 인원 기준(정원)	112
라. 대안 설정	113
마.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15
Ⅳ. 비용 추정	128
1. 비용 추정의 개요	128
가.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28
나. 사업계획안의 총사업비	129
다.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130
2. 총사업비 추정	131
가. 공사비	131
나. 보상비	144
다. 시설부대경비	144
라. 예비비	157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158

V. 정책성 분석	160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160
2. 사업 추진 여건	162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162
나.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	165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168
1. 지역낙후도	168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168
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174
2. 균형발전효과	176
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176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176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98
1. 종합평가	198
2. 정책제언	200
참고문헌	202
부록	204
1. 관련 공문	204

표 목차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	56
〈표 Ⅰ-2〉 사업의 주요 내용(당초)	57
〈표 Ⅰ-3〉 총사업비 내역(당초)	57
〈표 Ⅰ-4〉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당초)	58
〈표 Ⅰ-5〉 연차별 투자 계획(당초)	61
〈표 Ⅰ-6〉 사업의 주요 내용(변경)	61
〈표 Ⅰ-7〉 총사업비 내역(변경)	62
〈표 Ⅰ-8〉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변경)	62
〈표 Ⅰ-9〉 연차별 투자 계획(변경)	66
〈표 Ⅱ-1〉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70
〈표 Ⅱ-2〉 부산광역시 등록인구 현황	71
〈표 Ⅱ-3〉 부산광역시 점유형태별 가구수	72
〈표 Ⅱ-4〉 부산광역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73
〈표 Ⅱ-5〉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 현황	74
〈표 Ⅱ-6〉 사하구 행정구역 현황	75
〈표 Ⅱ-7〉 사하구 등록인구 현황	76
〈표 Ⅱ-8〉 사하구 거처의 종류별 점유형태별 가구수	77
〈표 Ⅱ-9〉 사하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77
〈표 Ⅱ-10〉 전국 범죄 발생현황	78
〈표 Ⅱ-11〉 부산광역시 범죄 발생현황	79
〈표 Ⅱ-12〉 부산광역시 5대 범죄 발생현황	80
〈표 Ⅱ-13〉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81
〈표 Ⅱ-14〉 1별관 신축 총사업비	84
〈표 Ⅱ-15〉 신축과 리모델링(증축 포함) 기준	87
〈표 Ⅱ-16〉 시설 및 면적 기준 주요 변경 사항	88

〈표 II-17〉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주요 변경 사항	90
〈표 II-18〉 부산경찰청 통합 유치장 운영 현황	92
〈표 III-1〉 1인당 사무실 면적 산정	96
〈표 III-2〉 협소도 산정	96
〈표 III-3〉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개보수 비용 현황	96
〈표 III-4〉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의 산출 사례	101
〈표 III-5〉 1별관동(준치 예정) 규모	101
〈표 III-6〉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	102
〈표 III-7〉 사업계획안의 사업개요	102
〈표 III-8〉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안의 세부 시설구성	103
〈표 III-9〉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106
〈표 III-10〉 경찰관서 설계기준 실면적 세부 산출내역	107
〈표 III-11〉 사하경찰서 부서별 정원(일반·수사부서)	112
〈표 III-12〉 사하경찰서 직무별 인원 현황	112
〈표 III-13〉 부산 사하경찰서 직급별 인원 구성	112
〈표 III-14〉 사하경찰서 직무별 인원 현황	113
〈표 III-15〉 대안의 설정	114
〈표 III-16〉 1별관동 이용시설 현황	114
〈표 III-17〉 2022년 통합 유치장 수용 현황	116
〈표 III-18〉 업무시설 규모 검토	116
〈표 III-19〉 편의시설 규모 검토	118
〈표 III-20〉 정보통신시설 규모 검토	119
〈표 III-21〉 저장보관시설 규모 검토	120
〈표 III-22〉 관리시설 규모 검토	121
〈표 III-23〉 보조시설 규모 검토	122
〈표 III-24〉 전용면적 산출내역	122
〈표 III-25〉 대안의 시설관리 및 기타시설(공용시설) 규모 검토	123

〈표 Ⅲ-26〉 주차규모 검토의 산출 사례(유사사례)	124
〈표 Ⅲ-27〉 지상가용면적 산출	124
〈표 Ⅲ-28〉 지상주차장의 산출 사례	125
〈표 Ⅲ-29〉 지상 가능 주차대수 산정	125
〈표 Ⅲ-30〉 법정주차대수 검토	126
〈표 Ⅲ-31〉 대안 규모 검토 결과	127
〈표 Ⅳ-1〉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128
〈표 Ⅳ-2〉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129
〈표 Ⅳ-3〉 총사업비 세부내역	129
〈표 Ⅳ-4〉 총사업비 추정 기준면적	130
〈표 Ⅳ-5〉 조달청 자료의 경찰서 유사사례(2022)	132
〈표 Ⅳ-6〉 유사사례 평균단가 산출내역	133
〈표 Ⅳ-7〉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133
〈표 Ⅳ-8〉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134
〈표 Ⅳ-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135
〈표 Ⅳ-10〉 단위 에너지사용량 및 지역계수	135
〈표 Ⅳ-11〉 에너지사용량 산정	136
〈표 Ⅳ-12〉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산정	136
〈표 Ⅳ-13〉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37
〈표 Ⅳ-14〉 태양광 및 지열 설치 규모 산정	138
〈표 Ⅳ-15〉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138
〈표 Ⅳ-16〉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산정	139
〈표 Ⅳ-17〉 개별시설 인증 수수료	140
〈표 Ⅳ-18〉 BF본인증 수수료 산정	140
〈표 Ⅳ-19〉 철거비 및 설계비 책정기준	141
〈표 Ⅳ-20〉 폐기물 처리비 단가 기준	141
〈표 Ⅳ-21〉 철거 건축물 면적	141

〈표 IV-22〉 철거비 산정	142
〈표 IV-23〉 폐기물처리비 산정	142
〈표 IV-24〉 1별관동 자체 안전진단 결과(2015)	143
〈표 IV-25〉 헬리컬파일 공사비 단가 산출	143
〈표 IV-26〉 헬리컬파일 공사비 산출	143
〈표 IV-27〉 공사비 종합	144
〈표 IV-28〉 건축공사의 종별 구분 기준	146
〈표 IV-29〉 건축부문 요율	146
〈표 IV-30〉 건축설계 적정요율 산정	147
〈표 IV-31〉 기본설계비 추정	148
〈표 IV-32〉 실시설계비 추정	148
〈표 IV-33〉 개별시설 인증 수수료	149
〈표 IV-34〉 BF예비인증 수수료 산정	149
〈표 IV-35〉 녹색건축인증 요율	150
〈표 IV-36〉 녹색건축인증 비용 산정	150
〈표 IV-37〉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51
〈표 IV-38〉 에너지절약계획서 비용 산정	151
〈표 IV-39〉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면적	152
〈표 IV-40〉 교통영향평가 요율 산정	152
〈표 IV-41〉 교통영향평가 비용 산정	152
〈표 IV-42〉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정	153
〈표 IV-43〉 조사 및 측량비 종합	154
〈표 IV-44〉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54
〈표 IV-45〉 감리비 적정요율 산정	155
〈표 IV-46〉 감리비 추정	155
〈표 IV-47〉 건설부문 요율	156
〈표 IV-48〉 시설부대비 추정	156
〈표 IV-49〉 시설부대경비 종합	157

〈표 IV-50〉 예비비 반영비율	157
〈표 IV-51〉 예비비 산정 결과	158
〈표 IV-52〉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추정 결과	158
〈표 V-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요	161
〈표 V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169
〈표 VI-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결과)	173
〈표 VI-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174
〈표 V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74
〈표 VI-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75
〈표 VI-6〉 상품분류 구분	182
〈표 VI-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193
〈표 VI-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194
〈표 V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195
〈표 V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196
〈표 VI-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197
〈표 VII-1〉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요약표	200

그림 목차

[그림 Ⅰ-1] 부산 사하경찰서 재건축 부지	56
[그림 Ⅰ-2]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67
[그림 Ⅱ-1] 부산 사하경찰서 기구표	82
[그림 Ⅱ-2] 부산 사하경찰서 건물 배치 현황	83
[그림 Ⅱ-3] 부산 사하경찰서 1별관 시설 현황	83
[그림 Ⅱ-4]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	86
[그림 Ⅱ-5] 연약지반에 따른 건물 침하(부동)	93
[그림 Ⅲ-1] 사업부지 위치	98
[그림 Ⅲ-2] 사업부지 세부사항	98
[그림 Ⅲ-3] 사업위치 현장사진	99
[그림 Ⅵ-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79
[그림 Ⅵ-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180
[그림 Ⅵ-3] 산업연관분석 유발효과와 개념	190

요 약

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추진 배경

□ 사업의 추진 배경

- 현 청사는 1989년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며, 내·외부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다수 발생
- 건물 배관의 노후화로 수년간 다수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저수조 노후화는 경찰서 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임
- 경찰서 방문 민원인은 일평균 약 300명 수준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며, 피의자 및 피해자 대기 공간 부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
- 현 부지는 매립지 및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사업의 목적

- 노후·협소한 기존 청사를 대체할 신규 청사 건립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 사업의 기대효과

-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방문 민원인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사업의 주요 내용

가. 사업의 추진 근거

- 주무부처가 제시한 지원 근거
 -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 그러나 본 사업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음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경찰서), 제58조(하부조직)
 - 제42조만 본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사업의 추진경위

〈표 1〉 사업의 추진 경위

연월	내용
2022. 2.~202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전 안전성평가 현장조사• 안전성평가 결과 C등급
202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자료: 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2023. 2.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무부처는 현 청사가 건축 후 33년이 경과한 노후관서이며, 청사 협소도 60% 이하로 확인되어 청사 신축을 추진
 - 현 부지는 매립지 및 연약지반으로 본 사업과 함께 신축할 예정이던 별관동은 건물 기울어짐이 발생하여 별도로 신축사업을 실시하고 완료('22년 10월)
- 조사 진행 중에 사업계획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사업계획 변경 공문이 제출됨
 - 면적 산정을 위한 정원 정정 및 오류와 준치 예정인 별관 면적을 제외

다. 사업의 개요

□ 당초 사업계획

- 사업위치: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신평동 569-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596㎡
 - 연면적: 17,187㎡
- 총사업비: 51,825백만원
- 사업기간: 2024~2029년(6년)

〈표 2〉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당초)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업무 시설	1. 회의실			1,106.00	-
	대강당	596	명	450.00	• 400~600명 미만: 450㎡ ※ 지역관서 포함
	대회의실	287	명	123.00	• 100~200명 미만: 99㎡ •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 가산
	소회의실	10	개	500.00	• 20명 미만: 50㎡ ※ 112상황실 제외
	업무자료실	1	실	33.00	• 서고·열람실: 33㎡
	2. 순 사무실			3,524.00	-
	서장실	1	명	80.00	-
	과장실	11	명	330.00	-
	행정업무부서	197 ^{주)}	명	1,379.00	• 근무자 수×7㎡
	수사·조사부서	163 ^{주)}	명	1,630.00	• 근무자 수×10㎡ ※ 근무자(7㎡)+피의자(3㎡)
	과학수사팀	15	명	105.00	• 근무자 수×7㎡ ※ 광역과학수사팀 운영 경찰서만 적용
	3. 특수시설			2,200.00	-
	진술녹화실	163 ^{주)}	명	176.00	• 11㎡ ※ 수사관 10명당 1실 ※ 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조사, 청문 근무자 해당
	진술녹화모니터실	163 ^{주)}	명	160.00	• 10㎡ ※ 수사관 10명당 1실

〈표 2〉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대기실	6	개	90.00	• 과별 5명 기준 ※ 피의자(피해자)×3㎡
	민원실	287	명	220.00	• 200~300명 미만: 220㎡
	유치장	일반	-	384.00	-
	상황실(지령실)	287	명	125.00	• 200~400명 미만: 125㎡
	상무관	596	명	400.00	• 400~600명 미만: 400㎡ ※ 지역관서 포함
	사격장	596	명	570.00	• 400~600명 미만(10개 사로): 570㎡ ※ 지역관서 포함
	정보화교육장	1급	등급	75.00	• 경찰서 급지별 교육인원×3㎡ ※ 1급서 교육인원: 25명
	소계			6,830.00	-
편의 시설	1. 직원휴게실	287	명	67.76	• 9.9㎡+(정원-24인)×0.22㎡
	2. 여경, 여직원 휴게실	58	명	54.00	• 17~24인 기준: 54㎡
	3. 체육실	287	명	104.92	• 75㎡+(정원-100)×0.16㎡
	4. 관복보관 및 탈의실	287	명	157.85	• 직원 수×0.55㎡
	5. 목욕실(남·여)	287	명	150.00	• 200~400명 미만: 150㎡
	6. 종교단체	3	실	120.00	• 1실: 40㎡ ※ 경목, 경승, 경신실
	7. 협의회	2	실	66.00	• 1실: 33㎡ ※ 경우회, 청소년육성회
	소계			720.53	-
정보 통신	1. 통신장비실	8	조	40.00	• 장비 1조×5㎡
	2. 전산장비실	10	수	50.00	• 전산기 수×5㎡
	3. 전산실 및 전산자료실	-	수	-	• 전산기 수×5㎡
	4. 교환실	-	실	-	-
	5. 보안실	1	실	33.00	• 1실: 33㎡
	소계			123.00	-
저장 시설	1. 문서고	3,524	㎡	246.68	• 순 사무실 면적×7%
	2. 비품창고	3,524	㎡	246.68	• 순 사무실 면적×7%
	3. 소모품창고	3,524	㎡	246.68	• 순 사무실 면적×7%
	4. 피복창고	596	명	101.32	• 직원 수×0.17㎡ ※ 지역관서 포함

〈표 2〉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5. 수사+과학수사			137.00	-
	영치물 압수보관실	1	실	20.00	• 1실: 20㎡
	수사자료(송치)실	1	실	34.00	• 1실: 34㎡
	증거분석(보관)실	1	실	83.00	• 1실: 83㎡
	6. 경무			120.00	-
	문서보관실	1	실	28.00	• 1실: 28㎡
	지출서류 보관실	1	실	32.00	• 1실: 32㎡
	물품보관실	1	실	60.00	• 1실: 60㎡
	7. 생활안전			127.00	-
	즉결유실물보관실	1	실	15.00	• 1실: 15㎡
	압수물보관실	1	실	52.00	• 1실: 52㎡
	자료, 장비보관실	1	실	60.00	• 1실: 60㎡
	8. 정보기록보관실	1	실	74.00	• 1실: 74㎡
	9. 경비 장비, 물품보관실	1	실	145.00	• 1실: 145㎡(피복보관실 포함)
	10. 무기·탄약			140.00	-
	무기고	596	명	60.00	• 400~600명미만: 60㎡ ※ 지역관서 포함
	탄약고	1	실	20.00	• 1실: 20㎡
	민간소유 총포실	1	실	30.00	• 1실: 30㎡
	화학보관실	1	실	30.00	• 1실: 30㎡
	소계			1,584.36	-
관리 시설	1. 정문안내소	1	실	15.00	• 15㎡
	2. 당직실	1급	등급	160.00	• 1급서: 160㎡
	3. 차고			-	-
	대형차	-	대	-	-
	중형차	-	대	-	-
	소형차	-	대	-	-
	4. 지하주차장	86	대	2,949.80	• 차량 수×34.3㎡
	5. 운전원 대기실	-	명	-	-
	6. 청소관리용역사무실	1급	등급	18.00	• 1급서: 18㎡
	소계			3,142.80	-

〈표 2〉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보조 시설	1. 식당	287	명	310.00	• 200~400명 미만: 310㎡
전용면적 계				12,710.69	-
시설관리	1. 기계실	9,760.9	㎡	450.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450㎡
	2. 전기실	9,760.9	㎡	175.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175㎡
	3. 발전기	9,760.9	㎡	38.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38㎡
시설관리 계				663.00	-
공용면적		12,710.7	㎡	3,813.21	• 전용면적의 30% 추가
합계				17,186.90	

주: 행정업무부서, 수사·조사부서 인원이 오기입된 상태로 사업계획이 작성
 자료: 부산경찰청,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부산 사하경찰서)」, 2023. 7. 3.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표 3〉 총사업비 내역(당초)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사업비	51,825	-
1. 공사비	47,056	• 연면적 × 2,662천원/㎡
2. 보상비	-	-
3. 시설부대경비	4,769	-
3-1. 설계비	2,308	• 기본설계비: 1,182 • 실시설계비: 1,126
3-2. 감리비	2,353	• 공사비 × 5.00%
3-3. 시설부대비	108	• 공사비 × 0.23%
4. 예비비	-	-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2023. 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 연차별 투자 계획(당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기본설계비	1,182	242	940	-	-
실시설계비	1,126	-	200	926	-
건설보상비	-	-	-	-	-
공사비	47,056	-	-	-	47,056
감리비	2,353	-	-	-	2,353
시설부대비	108	9	-	-	99
합계	51,825	251	1,140	926	49,508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23~'2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서」, 202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변경 사업계획

- 사업위치: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신평동 569-1)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596㎡
 - 연면적: 13,733㎡
- 총사업비: 42,005백만원
- 사업기간: 2024~2029년(6년)

〈표 5〉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변경)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업무 시설	1. 회의실			843.60	-
	대강당	596	명	450.00	• 400~600명미만: 450㎡ ※ 지역관서 포함
	대회의실	288	명	123.00	• 100~200명 미만: 99㎡ •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 가산
	소회의실	288	명	237.60	• 20명 미만: 50㎡, 1명 증가 시 0.7㎡
	업무자료실	1	실	33.00	• 서고·열람실: 33㎡
	2. 순 사무실			2,854.00	-
	서장실	1	명	80.00	-
	과장실	11	명	330.00	-

〈표 5〉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행정업무부서	117	명	819.00	• 근무자 수×7㎡
	수사·조사부서	159	명	1,590.00	• 근무자 수×10㎡ ※ 근무자(7㎡)+피의자(3㎡)
	과학수사팀	15	명	35.00	• 근무자 수×7㎡ ※ 1별관: 70㎡
	3. 특수시설			1,857.00	-
	진술녹화실	159	명	153.00	• 11㎡ ※ 수사관 10명당 1실 ※ 1별관: 12㎡
	진술녹화모니터실	159	명	140.00	• 10㎡ ※ 수사관 10명당 1실 ※ 1별관: 10㎡
	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대기실	6	개	90.00	• 과별 5명 기준 ※ 피의자(피해자)×3㎡
	민원실	288	명	220.00	• 200~300명 미만: 220㎡
	유치장	일반		384.00	-
	상황실(지령실)	288	명	125.00	• 200~400명 미만: 125㎡
	상무관	596	명	100.00	• 400~600명 미만: 400㎡ ※ 지역관서 포함 ※ 1별관: 300㎡
	사격장	596	명	570.00	• 400~600명 미만(10개 사로): 570㎡ ※ 지역관서 포함
	정보화교육장	1급	등급	75.00	• 경찰서 급지별 교육인원×3㎡ ※ 1급서 교육인원: 25명
	소계			5,577.60 ^{주)}	-
편의 시설	1. 직원휴게실	288	명	-	• 9.9㎡+(직원-24인)×0.22㎡ ※ 1별관: 75㎡
	2. 여경, 여직원 휴게실	58	명	-	• 17~24인 기준: 54㎡ ※ 1별관: 54㎡
	3. 체육실	288	명	105.08	• 75㎡+(직원-100)×0.16㎡
	4. 관복보관 및 탈의실	288	명	158.40	• 직원 수×0.55㎡
	5. 목욕실(남·여)	288	명	-	• 200~400명 미만: 150㎡ ※ 1별관: 150㎡
	6. 종교단체	3	실	120.00	• 1실: 40㎡ ※ 경목, 경승, 경신실

〈표 5〉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7. 협의회	2	실	33.00	• 1실: 33㎡ ※ 경우회, 청소년육성회 ※ 1별관: 33㎡
	소계			416.48	-
정보 통신	1. 통신장비실	8	조	40.00	• 장비 1조×5㎡
	2. 전산장비실	10	수	50.00	• 전산기 수×5㎡
	3. 전산실 및 전산자료실	-	수	-	• 전산기 수×5㎡
	4. 교환실	-	실	-	-
	5. 보안실	1	실	33.00	• 1실: 33㎡
	소계			123.00	-
저장 시설	1. 문서고	2,854	㎡	149.78	•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 50㎡
	2. 비품창고	2,854	㎡	149.78	•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 50㎡
	3. 소모품창고	2,854	㎡	149.78	•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 50㎡
	4. 피복창고	596	명	51.30	• 직원 수×0.17㎡ ※ 지역관서 포함 ※ 1별관: 50㎡
	5. 수사+과학수사			141.00	-
	통합증거물보관실	1	실	37.00	• 1실: 103㎡ ※ 1별관: 66㎡
	수사기록보관실	1	실	104.00	• 경찰서 급지별 구분 ※ 1급서: 104㎡
	6. 경무			60.00	-
	문서보관실	1	실	28.00	• 1실: 28㎡
	지출서류 보관실	1	실	32.00	• 1실: 32㎡
	물품보관실	1	실	-	• 1실: 60㎡ ※ 1별관: 60㎡
	7. 생활안전			127.00	-
	즉결유실물보관실	1	실	15.00	• 1실: 15㎡
	압수물보관실	1	실	52.00	• 1실: 52㎡
	자료, 장비보관실	1	실	60.00	• 1실: 60㎡

〈표 5〉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8. 정보기록보관실	1	실	74.00	• 1실: 74㎡	
	9. 경비 장비, 물품보관실	1	실	145.00	• 1실: 145㎡(피복보관실 포함)	
	10. 무기 탄약			140.00	-	
	무기고	596	명	60.00	• 400~600명 미만: 60㎡ ※ 지역관서 포함	
	탄약고	1	실	20.00	• 1실: 20㎡	
	민간소유 총포실	1	실	30.00	• 1실: 30㎡	
	화학보관실	1	실	30.00	• 1실: 30㎡	
	소계			1,187.64	-	
관리 시설	1. 정문안내소	1	실	15.00	• 15㎡	
	2. 당직실	1급	등급	160.00	• 1급서: 160㎡	
	3. 차고			-	-	
	대형차	-	대	-	-	
	중형차	-	대	-	-	
	소형차	-	대	-	-	
	4. 운전원 대기실	-	명	-	-	
	5. 청소관리용역사무실	1급	등급	18.00	• 1급서 : 18㎡	
	소계			193.00	-	
보조 시설	1. 식당	287	명	310.00	• 200~400명 미만: 310㎡	
전용면적 계			7,784.72	-		
시설 관리	1. 기계실	9,760.9	㎡	450.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450㎡	
	2. 전기실	9,760.9	㎡	175.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175㎡	
	3. 발전기	9,760.9	㎡	38.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38㎡	
시설관리 계			663.00	-		
지하주차장			86	대	2,949.80	-
공용면적			7,784.72	㎡	2,335.42	• 전용면적의 30% 추가
합계			13,732.94		-	

주: 변경 사업계획에 기재된 업무시설의 합산 면적은 오류이며, 실제로는 5,554.6㎡임
 자료: 경찰청, 「청사시설 기준면적 재산출(부산 사하경찰서)」, 2023.12.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표 6〉 총사업비 내역(변경)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사업비	42,005	-
1. 공사비	37,861	• 연면적 × 2,662천원/m ²
2. 보상비	-	-
3. 시설부대경비	4,144	-
3-1. 설계비	1,903	• 기본설계비: 992 • 실시설계비: 911
3-2. 감리비	2,154	• 공사비 × 5.00%
3-3. 시설부대비	87	• 공사비 × 0.23%
4. 예비비	-	-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총사업비 산출내역서(부산 사하경찰서)」, 2023. 1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7〉 연차별 투자 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기본설계비	992	346	646	-	-
실시설계비	911	-	-	911	-
건설보상비	-	-	-	-	-
공사비	37,861	-	-	-	37,861
감리비	2,154	-	-	-	2,154
시설부대비	87	9	-	8	70
합계	42,005	355	646	919	40,085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청사시설 기준면적 재산출(부산 사하경찰서)」, 2023.1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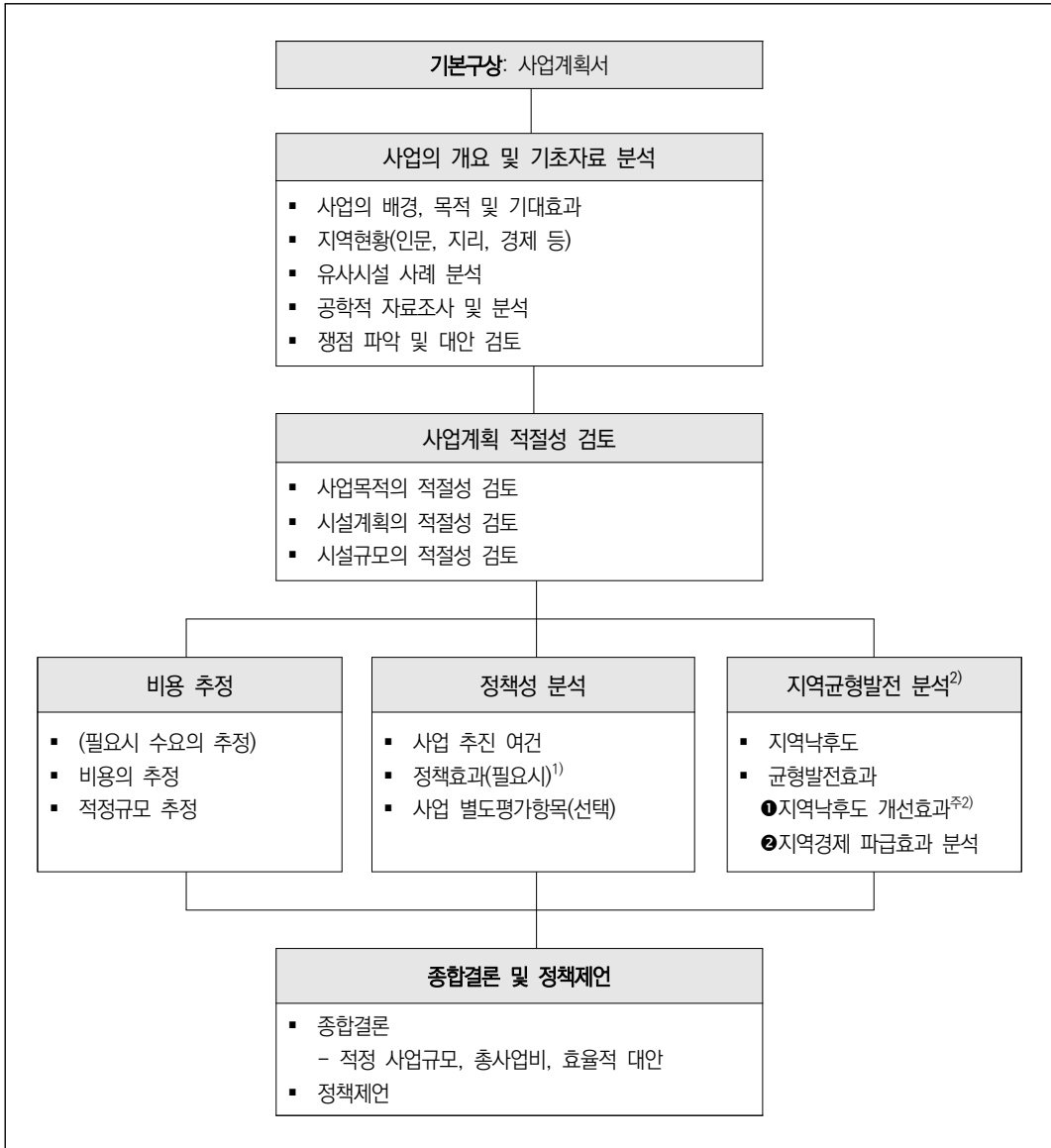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에 의하면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경우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조사의 철회 또는 반려가 가능
- 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추정 오류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총사업비가 420억원으로 제시되어 지침에 근거한 철회 또는 반려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요청이 없었으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계속 수행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그림 1]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주: 1) 수도권 유형의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함. 또한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및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생략 가능함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1)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 사업 관련 기초자료 검토
- 상위·관련계획의 관련성 고려(상위계획: 중앙정부 계획 / 관련 계획: 지자체 계획)
 - 상위·관련 계획의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보다는 각 계획에 평가대상사업의 위상, 우선순위,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등을 분석·기술
- 유사·관련 사업 분석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우선 조사 대상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추진 경위, 계획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

2)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및 비용 추정

- 사업계획(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 예측된 수요 및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재 제안된 사업계획(안)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사업비용 추정을 위한 설계기준, 공사비 산입기준,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및 기간, 비용 산정의 정밀도 등을 제시
- 비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토
 -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각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초기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토
 - 용지보상비 등 총사업비와 설립 후 유지관리비 등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함께 추정
 - 사업계획(안)에 누락된 비용 항목에 대한 검토
 - 총사업비의 적정성 및 효율성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이며 적절한 비용을 추정

3) 정책성 분석

□ 정책성 분석에서는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정책적인 쟁점을 평가

□ 사업 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적)으로 구성

○ 사업 추진 여건

-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상위계획 반영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 정도 등

• 상위계획의 포함 여부는 물론 현시점에서의 정책방향, 본 사업의 위상,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인력 및 재원의 투입 정도 등 사업 추진의 준비 정도를 검토

※ 다만, 상시적인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어 사업의 준비 정도가 평가의 큰 요인이 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준비 정도'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는 없음

-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 여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

• 현장 방문 시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검토

- 그 외 사업 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정책 효과(필요시)

- 일자리 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 생활여건 영향: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 환경성 평가: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 안전성 평가: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 그 밖에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사업 별도평가항목(선택 적용)

- 재원조달 위험성: 운영비 조달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부여, 원인자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이미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 문화재 가치: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 기타 개별사업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 그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부여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균형발전효과를 분석

○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지역낙후도를 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로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며, 해당 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활용

5)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조사의 한계점과 향후 본 조사 대상사업의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인 사항을 제언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대상 지역 주변 환경 분석

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한반도의 남동단에 위치하고 있고 총면적은 약 770.2km²이며, 행정구역은 15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구성
 - 제61회 부산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총인구는 약 340만명
 - 부산광역시의 주택 수는 약 146만호이며, 약 143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인구수 대비 주택의 양적지표 중 하나인 천인당 주택 수는 440.0호이며, 자가점유율은 약 59.7%임
 - 2021년 기준 약 146만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음

나. 사하구

- 사하구는 부산광역시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약 41.8km²(16개 자치구군 중 5번째)이며, 행정구역은 16개의 행정동과 8개의 법정동으로 구성
 - 사하구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총 등록인구는 약 32만명
 - 사하구의 주택 수는 약 14만호이며, 약 13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자가점유율은 약 63.7%로 부산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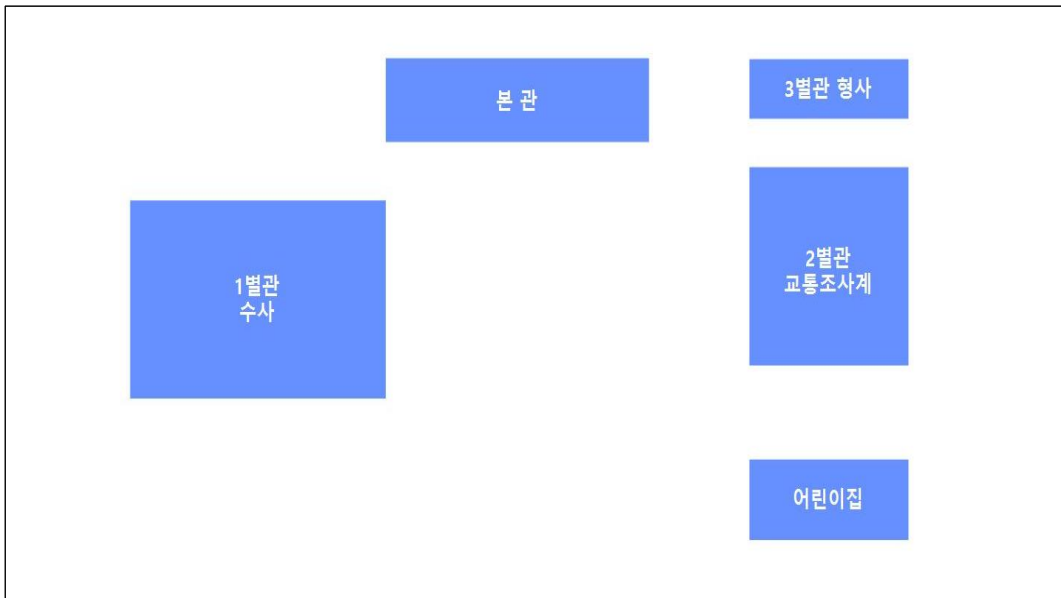
2. 사업대상 지역 치안 환경 분석

-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약 148만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약 53천건, 3.7% 증가한 수치임
 - 부산광역시에서는 약 11만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약 5천건, 4.6% 증가
 - 2022년도 기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의 5대 범죄는 약 3만건이며,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에서는 약 2천건이 발생
 - 2022년도에 검거된 범죄 가운데 1년 이내 검거 비율은 약 92.7%로 나타남

3. 시설 현황 분석

- 부산 사하경찰서는 2실·8과·28계실, 4지구대, 2파출소, 10치안센터 및 방법순찰대가 있으며, 관할구역은 사하구 16개동임.
- 부산 사하경찰서는 본관과 3개의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별관에는 수사부서, 2별관에는 교통조사계, 3별관에는 형사부서가 근무 중

[그림 2] 부산 사하경찰서 건물 배치 현황



자료: 부산 사하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bspolice.go.kr/saha/view.do?no=997>, 2023.07.03.

- 1별관의 경우 건물 기울어짐이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신축하여 완공('22. 10)
 - 1별관의 시설면적은 1,384㎡이며, 총사업비는 3,292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연약지반 보강에 투입된 비용은 238백만원임
 - 청사 신축 후에는 1별관을 민원 응대를 위한 통합민원실과 민원인 휴게실, 장애인 편의시설, 수유실 등 방문객 위주의 편의시설로 사용 예정

〈표 8〉 1별관 신축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공종	관급자재	비용	계
설계비		-	127	127
공사비	건축	576	1,417	1,993
	전기	335	179	514
	통신	45	113	158
	소방	-	99	99
	철거(폐기)	-	99	99
	제로에너지	21	-	21
	연약지반보강	-	238	238
	소 계	977	2,145	3,122
감리비		-	32	32
부대비		-	11	11
합계		977	2,315	3,292

주: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 추가 자료제출」, 2023. 7.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 관련 계획 검토

가. 사업대상 부지 관련 계획

□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 중심지 재편 전략에서 본 사업의 대상지가 포함된 하단 지역이 선정됨
 - 중심지별 특화전략에 따라 하단 지역은 신산업 혁신축으로 분류되었으며, 신교통 관련산업, 지식산업, R&D, 소재 및 부품산업 연계를 통한 발전 방향이 제시
- 지역균형발전의 실천방안 중 ‘수변특화 기본계획 추진’, ‘시가지 내 유희부지의 혁신 거점 공간화’에서 본 사업의 대상지와 관련한 계획이 제시
 -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에는 다대포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으며, 유희부지 중 하나인 구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계획이 추진 중임
-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핵심목표 중 ‘글로벌 허브도시 완성’, ‘탄소중립 건강도시 구현’에서 본 사업의 대상지와 관련한 계획이 제시

-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수직 이착륙용 정거장인 버티포트를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며,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

나. 사업대상 관련 계획

-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계획(2014~2018년)
 - 건물 안전도, 직제 신설, 면적 협소, 준공 후 30년 이상의 관서를 신축 대상으로 정함
 - 신·증축 시 적용할 기준면적(안) 제시
 - 본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은 미제시
-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
 - 변화하는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2020년에 수정 및 조정
 - 시설면적기준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인원을 순수 정원과 전체 정원으로 구분

5.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가. 사업계획 관련 쟁점

- 시설면적 산정 기준인원 관련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므로 세부 시설면적 검토에 앞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경찰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청사이므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시설면적을 산정해야 함
 -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부산경찰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사하경찰서의 정확한 정원 과 정원 외 인원에 대한 자료를 구득(가장 최근 자료)하여 시설규모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공간별 면적 산정 시 기준에 따라 면적을 산출하되, 현장답사 당시 조사실 등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기존 면적 대비 증감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된 문제 해소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관련

- 사업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주차대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86대로 제시하고 있음
- 본 검토는 유사경찰서의 사례와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검토 필요

□ 주무부처가 제시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의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방법에 따라 안전도, 협소도 등을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확인

□ 유치장 설치의 타당성 검토

-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치장을 신축사업을 통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상위계획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6개 경찰서에 통합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추가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이후 운영계획을 검토

〈표 9〉 부산경찰청 통합 유치장 운영 현황

구분	동래	부산진	서부	해운대	사상	연제	
유치실 수(개)	6	8	7	10	10	9	
면적(㎡)	유치장	280.0	272.2	279.3	175.2	472.6	499.6
	유치실	83.5	85.7	102.3	66.1	137.7	322.4

자료: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 제출(3차)」, 2023. 9. 18.

나. 비용 관련 쟁점

□ 기본공사비 단가 검토 관련

- 제시된 사업계획서에서 건축공사에 대한 기본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어려워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2조(면적·단가 기준)에 따라 시설비 산정 기준은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유형별 단위 면적(1㎡) 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해야 함

- 또한 대상지는 매립에 의한 연약지반으로 침하방지를 위한 공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추가 공사비 반영 여부 관련

- 제시된 자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비, 미술작품설치비 등의 반영 여부 확인이 어려움
- 따라서 해당 항목의 공사비가 기본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상 해당 비용의 적용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 공사비 반영 여부를 검토

□ 예비비 반영 관련

- 제시된 총사업비 내역에 예비비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총사업비 산정 시 지침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산정해야 함

다. 정책성 분석 관련 쟁점

□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 여건

- 본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여부를 검토
- 이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적 기대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검토

□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

-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각 주체별 사업과의 관계 분석
-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파악
- 이외에도 사업 추진에 따른 긍·부정적 외부효과의 유무와 정도에 대해 검토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사업 수행주체인 경찰청(부산경찰청)은 본 사업의 목적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대체할 신규 청사 건립을 제시
 - 현 청사는 1989년에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며, '22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으며, 사업계획안에서는 협소도를 45%로 제시하고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시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고, 기타 협소와 노후화 등의 사유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음
 - 안전도는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의 권고 내용을 감안
 - 협소는 당해 건물의 1인당 사무실면적이 기준면적의 60% 이하인 경우
 - 노후화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30년 이상된 청사

- 검토 결과 본 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으로 안전도와 노후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협소도는 161%로 나타나 지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현 청사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은 16.0㎡/명이고, 사업계획안에 따른 기준면적은 9.9㎡/명으로 나타남

- 다만 현재 사하경찰서가 위치한 부지는 매립지 및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부산 사하경찰서의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내·외부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건물 배관의 노후화로 수년간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움
 - 또한 일평균 약 3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의자 및 피해자 대기 공간 부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야기

〈표 10〉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개보수 비용 현황

구분	소계(원)	공사비(원)	시설장비유지비(원)
2018년	40,447,450	13,604,950	26,842,500
2019년	356,937,980	348,293,710	8,644,270
2020년	55,608,000	47,631,000	7,977,000
2021년	159,328,100	150,810,650	8,517,450
2022년	93,618,610	64,091,440	29,527,170

자료: 「부산경찰청 1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2023. 7.)

2. 사업부지의 적절성 검토

가. 부지 위치의 적절성 검토

-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의 대상지는 신평동 569-1번지에 위치
 - 민원인 접근과 긴급 관용차량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
 - 사업대상부지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부지계획 및 주변현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부지인 것으로 판단

[그림 3] 사업부지 세부사항



자료: 연구진 작성

나. 부지 면적의 적절성 검토

- 사업대상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 70%, 용적률 400% 이하의 준수가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연면적은 13,732.94㎡(지하 1층 ~ 지상 6층)이나, 건축면적과 시설배치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음

- 본 사업은 1별관동 준치 예정으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면적에 포함하여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필요
 - 1별관동 건축면적 323.38㎡, 연면적 1,384㎡로 확인됨
 -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은 2,612.20㎡, 연면적은 15,116.94㎡ 산정
 - 이를 바탕으로 건폐율은 27.22%, 용적률은 157.52%로 추정

〈표 11〉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유사사례 평균	10,928.12	2,593.03	13,058.73	26.30	89.70
사업계획	9,596.80	2,612.20	15,116.94	27.22	157.52

주: 사업계획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1별관동의 면적을 합산한 값임

3.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가. 사업계획안의 시설계획

〈표 12〉 사업계획안의 사업개요

구분	사업계획안
사업위치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신평동 569-1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사업기간	2024~2029년
건축규모	지하 1층~지상 6층
대지면적	9,596㎡
연면적	13,732.94㎡
총사업비	42,005백만원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건물용도	공공청사(경찰서)
주차계획	지하 86대

자료: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변경) 계획안 작성(부산 사하경찰서)」(2023. 11. 3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나. 세부 시설규모의 검토 기준

- 경찰청(경찰관서)은 ‘형 집행시설’로 분류되어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청사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
 - 경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기준 적용
- 본 검토에서는 부산 사하경찰서의 정원 현황자료를 토대로 다음의 기준들을 적용하여 검토
 -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
 -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 시설 및 면적 기준 개선」(2020)
 -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계획(2014~2018년)」(2013)

다. 경찰서 인원 기준(정원)

〈표 13〉 사하경찰서 직무별 인원 현황

구분	인원	비고
서장(총경)	1	서장 수
과장(경정)	11	과장 수
행정업무 인원	117	순수 행정업무 근무자 포함(서장, 과장 인원 제외)
수사업무 인원	159	순수 수사업무 근무자 포함(형사, 수사지원팀 등은 행정업무에 포함)
계	288	-

자료: 「부산경찰청 제출자료」(2023. 8.)

라. 대안 설정

- 본 검토에서는 사업수행주체가 요구한 사업계획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
 -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 등에 근거하여 적정 시설 규모를 산정
 - 사업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치장 면적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어 면적 미반영

〈표 14〉 대안의 설정

구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시설면적 산정기준	• 요구면적	-	• 경찰관서 설계기준 등(면적 산출 기준) • 유치장 미설치
사업비	• 요구사업비	• 요구면적에 대한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재산출	• 면적 재산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재산출

- 부산 사하경찰서는 1개의 본관과 3개의 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본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범위는 1별관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임
 - 사업계획에서도 1별관동에서 사용 중인 시설을 제외하고 면적을 요구
 - 1별관동에서 현재 이용 중인 시설을 고려하여 중복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대안 제시

마.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 업무시설의 대안은 사업계획안 대비 384㎡ 감소한 5,170.60㎡로 산정

○ 유치장 미설치로 인해 면적 감소

〈표 15〉 업무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업무 시설	순 사 무 실	서장실	80.00	1	총경(경찰서장실): 80㎡	80.00	-
		과장실	330.00	11	경정(과장실): 30㎡	330.00	-
		행정업무부서	819.00	117	근무자 수×7㎡	819.00	-
		수사·조사부서	1,590.00	159	근무자 수×10㎡	1,590.00	-
		과학수사실	35.00	15	근무자 수×7㎡ ※ 1별관동 과학수사실 : 70㎡ → 15㎡×7-70㎡=35㎡	35.00	-
		소계	2,854.00	303	본서 288명+과학수사팀 15명 추가	2,854.00	-
	순 사 무 실 외	대강당	450.00	596	400~600명 미만: 450㎡	450.00	-
		대회의실	123.00	288	100~200명 미만: 99㎡, 10명 증가마다 3㎡ 가산 → 99㎡+3×8=123㎡	123.00	-
		소회의실	237.60	288	20명 미만: 50㎡, 1명 증가마다 0.7㎡ 가산 → 50㎡+0.7×(288-20)=237.6㎡	237.60	-
		업무자료실	33.00	1	경찰서 최소 기준 33㎡(10평) 일괄 적용	33.00	-
		진술녹화실	153.00	159	1실: 11㎡, 수사관 10명당 1실 ※ 1별관동 진술녹화실: 12㎡ → 11㎡×15-12㎡=153㎡	153.00	-
		진술녹화 모니터실	140.00	159	1실: 10㎡, 수사관 10명당 1실 ※ 1별관동 진술녹화모니터실: 10㎡ → 10㎡×15-10㎡=140㎡	140.00	-
		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대기실	90.00	6	과별 5명 기준 피의자(피해자)×3㎡	90.00	-

〈표 15〉의 계속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
	민원실	220.00	288	200~300명 미만: 220㎡	220.00	-
	유치장	384.00	1	일반유치장: 384㎡	-	-384.00
	상황실(지령실)	125.00	288	200~400명 미만: 125㎡	125.00	-
	상무관	100.00	596	400~600명 미만: 400㎡ ※ 1별관동 상무관: 300㎡ → 400㎡-300㎡=100㎡	100.00	-
	사격장	570.00	596	400~600명 미만(10개 사료): 570㎡	570.00	-
	정보화 교육장	75.00	25	지방청(교육인원×3.0㎡) → 3.0㎡×25=75	75.00	-
	소계	2,700.60	-	-	2,316.60	-384.00
	계(업무시설)	5,554.60	-	-	5,170.60	-384.00

□ 편의시설은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산정

- 1별관에 설치된 직원휴게실의 면적이 규정을 초과하고 있으나, 이미 설치된 시설의 재구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초과하는 규모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표 16〉 편의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
	직원휴게실	-	288	9.9㎡+(정원-24인)×0.22㎡ ※ 1별관동 직원휴게실: 75㎡ → 9.9㎡+(288-24인)×0.22㎡-75㎡= -7.02㎡	-	-
편의 시설	여경, 여직원 휴게실	-	58	17~24인 기준: 54㎡ ※ 1별관동 여경, 여직원 휴게실: 54㎡ → 54㎡-54㎡=0㎡	-	-
	체육실	105.08	288	75㎡+(정원-100)×0.16㎡=105.08㎡ → 75㎡(288-100)×0.16㎡=105.08㎡	105.08	-

〈표 16〉의 계속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관복보관 및 탈의실	158.40	288	직원수×0.55㎡ → 288×0.55㎡=158.40㎡	158.40	-
	목욕실(남, 녀)	-	288	200~400명 미만: 150㎡ ※ 1별관동 목욕실: 150㎡ → 150㎡-150㎡=0㎡	-	-
	종교단체	120.00	3	1실: 40㎡ → 종교단체: 경목, 경승, 경신실(3개소) 40㎡×3개소=120㎡	120.00	-
	협의회	33.00	2	1실: 33㎡ → 협의회: 경우회, 청소년육성회(2개소) ※ 1별관동 협의회: 33㎡ → 33㎡×2개소-33㎡=33㎡	33.00	-
	계(편의시설)	416.48	-	-	416.48	-

□ 정보통신시설은 사업계획안과 동일하게 산정

〈표 17〉 정보통신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정보 통신 시설	정보통신실	40.00	8	장비 1조×5㎡	40.00	-
	전산장비실	50.00	10	전산기 수×5㎡	50.00	-
	보안실	33.00	1	1실: 33㎡	33.00	-
	계(정보통신시설)	123.00	-	-	123.00	-

□ 저장보관시설의 대안은 사업계획안 대비 34㎡ 감소한 1,153.64㎡로 산정

- 1별관동에 수사자료 송치실이 34㎡ 규모로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중복되는 시설면적을 제외

〈표 18〉 저장보관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저장 보관 시설	문서고	149.78	7%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동 문서고: 50㎡ → 2,854㎡×7%-50㎡=149.78㎡	149.78	-	
	비품창고	149.78	7%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동 비품창고: 50㎡ → 2,854㎡×7%-50㎡=149.78㎡	149.78	-	
	소모품창고	149.78	7%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동 소모품창고: 50㎡ → 2,854㎡×7%-50㎡=149.78㎡	149.78	-	
	피복창고	51.30	596	직원 수×0.17㎡ ※ 1별관동 피복창고: 50㎡ → 596인×0.17㎡-50㎡=51.30㎡	51.30	-	
	수사 + 과학 수사	통합증거물 보관실	37.00	1	1실: 103㎡ ※ 1별관동 증거분석실: 66㎡ → 103㎡-66㎡=37㎡ * 영치물 압수보관실, 증거분석 보관실을 통합하여 통합증거물 보관실로 변경	37.00	-
		수사자료 (송치)실	104.00	1	1급서: 104㎡ ※ 1별관동 수사자료 송치실: 34㎡ → 104㎡-34㎡=70㎡ ※ 수사자료 송치실 삭제 및 수사기록보관실 신설	70.00	-34.00
		소계	141.00	-	-	107.00	-34.00
	경무	문서보관실	28.00	1	1실: 28㎡	28.00	-
		지출서류 보관실	32.00	1	1실: 32㎡	32.00	-
		물품보관실	-	1	1실: 60㎡ ※ 1별관동 물품보관실: 60㎡ → 60㎡-60㎡=0㎡	-	-
		소계	60.00	-	-	60.00	-
	생활 안전	즉결유실물 보관실	15.00	1	1실: 15㎡	15.00	-
		압수물 보관실	52.00	1	1실: 52㎡	52.00	-
		자료, 장비보관실	60.00	1	1실: 60㎡	60.00	-
소계		127.00	-	-	127.00	-	

〈표 18〉의 계속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정보기록보관실	74.00	1	1실: 74㎡	74.00	-
	경비 장비, 물품보관실	145.00	1	1실: 145㎡	145.00	-
무기 · 탄약	무기고	60.00	596	400~600명 미만: 60㎡	60.00	-
	탄약고	20.00	1	1실: 20㎡	20.00	-
	민간소유 총포실	30.00	1	1실: 30㎡	30.00	-
	화학보관실	30.00	1	1실: 30㎡	30.00	-
	소계	140.00	-	-	140.00	-
	계(저장보관시설)	1,187.64	-	-	1,153.64	-34.00

□ 관리시설은 사업계획안과 동일하게 산정

〈표 19〉 관리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관리 시설	정문안내소	15.00	1	1실: 15㎡	15.00	-
	당직실	160.00	1	경찰서 1급서: 160㎡	160.00	-
	청소관리용역 사무실	18.00	1	경찰서 1급서: 18㎡	18.00	-
계(관리시설)	193.00	-	-	193.00	-	

□ 보조시설은 사업계획안과 동일하게 산정

〈표 20〉 보조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검토안,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보조 시설	식당	310.00	288	200~400명 미만: 310㎡	310.00	-
계(보조시설)		310.00	-	-	310.00	-

□ 시설관리 및 기타시설(공용시설)의 대안은 사업계획안 대비 125.40㎡ 감소한 5,822.82㎡로 산정

- 공용면적 산정을 위한 전용면적이 사업계획안 7,784.72㎡, 대안 7,366.72㎡로 감소함에 따라 시설관리 및 기타시설의 면적이 감소

〈표 21〉 대안의 시설관리 및 기타시설(공용시설) 규모 검토

(단위: ㎡)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대안			
			수량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시설 관리	기계실	450.00	8,707.20	전용면적 10,000㎡ 이하 : 450	450.00	-
	전기실	175.00	8,707.20	전용면적 10,000㎡ 이하 : 175	175.00	-
	발전기	38.00	8,707.20	전용면적 10,000㎡ 이하 : 38	38.00	-
	소계	663.00	-	-	663.00	-
기타 시설	계단실·EV홀·복도· 화장실·로비 등	2,335.42	30%	전용면적의 30%	2,210.02	-125.40
	소계	2,335.42	-	-	2,210.02	-125.40
지하주차장		2,949.80	86	차량수×34.3㎡	2,949.80	-
계(공용시설)		5,948.22	-	-	5,822.82	-125.40

- 법정 주차대수는 각각 사업계획안 108대, 대안 102대로 산정되었으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라 법정주차대수 2배를 적용할 때, 사업계획에서 제시하는 86대의 설치는 적정

〈표 22〉 법정주차대수 검토

구분	기준면적(㎡)	법정주차대수	계획 가능 주차대수(법정 2배)	비고
사업계획안	10,783.14	108대	216대	1대당 면적(㎡) : 167㎡/대
대안	10,239.74	102대	204대	

주: 지하주차장(2,949.8㎡)은 공용차량 등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주차대수 산정 시 제외함

- 시설면적 검토 결과 사업계획안 대비 543.40㎡ 감소한 13,189.54㎡로 산정

〈표 23〉 대안 규모 검토 결과

(단위: ㎡)

구분	사업계획안(A)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안(B)	증감(B-A)	비고	
전용면적	순 사무실	2,854.00	2,854.00	-	-
	순 사무실 외	2,700.60	2,316.60	-384.00	-
	편의시설	416.48	416.48	-	-
	정보통신시설	123.00	123.00	-	-
	저장보관시설	1,187.64	1,153.64	-34.00	-
	관리시설	193.00	193.00	-	-
	보조시설	310.00	31.00	-	-
	전용면적 소계	7,784.72	7,366.72	-418.00	-
공용면적	기계실	450.00	450.00	-	-
	전기실	175.00	175.00	-	-
	발전기	38.00	38.00	-	-
	계단·EV홀 복도·화장실·로비 등	2,335.42	2,210.02	-125.40	전용면적×30%
	공용면적 소계	2,998.42	2,873.02	-125.40	-
	지하주차장	2,949.80	2,949.80	-	-
합계	13,732.94	13,189.54	-543.40	-	

IV.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개요

가.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표 24〉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구분	연구 절차	연구 방법
I	유형별 공사비 산정	• 조달청에서 발간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기초로 공종별 공사비 산정
II	비용 추정의 방법 및 기준 검토	• 항목별 단가기준 검토 및 적용 기준 • 기본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그 외 시설부대경비의 산정방식 검토
III	총사업비 추정 (사업계획안, 검토안)	• 단가 적용 유형별 공사비 추정 • 공사비를 기초로 시설부대경비 등 산정
IV	총사업비 추정 종합	• 요구안과 본 검토에서 추정된 비용의 종합/비교

나. 사업계획안의 총사업비

〈표 25〉 총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사업비	42,005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비
1. 공사비	37,861	• 기본공사비+철거비+BF인증
1-1. 기본공사비	36,557	• 연면적 × 2,662천원/㎡
1-2. 철거비	1,300	-
1-3. BF인증	4	• BF본인증
2. 보상비	-	-
3. 시설부대경비	4,144	-
3-1. 설계비	1,903	• 기본설계비: 1,182, 실시설계비: 1,126
3-2. 감리비	2,154	• 공사비 × 5.00%
3-3. 시설부대비	87	• 공사비 × 0.23%
4. 예비비	-	-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2023. 1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다.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표 26〉 총사업비 추정 기준면적

(단위: ㎡)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B)	대안(C)	증감(B-A)	증감(C-A)
대지면적	9,596			-	-
연면적	10,783.14	10,783.14	10,239.74	-	-543.40
지하주차장면적	2,949.80			-	-
총 연면적	13,732.94	13,732.94	13,189.54	-	-543.40

2. 총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 유사사례를 통해 산출된 단위면적당 기준단가는 2,373,495원/㎡로 산출
 - 2022년 사례만을 참고하여 물가변동에 대한 항목은 미반영
 - 단위공사비를 적용한 기본공사비는 각각 검토안 32,595백만원, 대안은 31,305백만원으로 산정

〈표 27〉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구분	연면적(㎡)	단가(원/㎡)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13,732.94	2,420,000	33,234
검토안	13,732.94	2,373,495	32,595
대안	13,189.54		31,305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는 각각 검토안 98백만원, 대안은 93백만원으로 산정

〈표 28〉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산정

구분		에너지생산량 (kWh/·yr)	원별 공사 단가(천원)	공사비(천원)	적용공사비(백만원)
검토안	태양광	29	1,880	54,314	54
	지열	34	1,267	43,387	43
	소계	-	-	97,701	98
대안	태양광	27	1,880	51,577	52
	지열	33	1,267	41,201	41
	소계	-	-	92,777	93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조회결과, 본 검토에 활용한 유사사례는 모두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로에너지빌딩(ZEB) 공사비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음

□ BF인증(본인증) 비용은 사업계획안 대비 2백만원 증가한 6백만원으로 산정

〈표 29〉 BF본인증수수료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 대안(B)	증감(B-A)
BF본인증	4	6	2

□ 철거비는 사업계획안 대비 77백만원 감소한 647백만원으로 산정

〈표 30〉 철거비 산정

(단위: m²,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 대안(B)		증감 (B-A)
	철거건물면적	철거 공사비 합계	철거건물면적	철거 공사비 합계	
철거비	7,089	724	7,089	647	-77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폐기물처리비는 사업계획안 대비 428백만원 감소한 30백만원으로 산정

〈표 31〉 폐기물처리비 산정

(단위: m², 천원/m²,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 대안(B)		증감 (B-A)
	철거 건축면적	폐기물처리 공사비	철거 건물 동수	폐기물처리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7,089	458	3	30	-428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헬리컬파일 공사비는 각각 검토안 2,477백만원, 대안 2,379백만원으로 산정

- 사업 대상지는 매립에 의한 연약지반으로 현장조사 시 건물 침하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주무부처는 침하방지를 위한 공사단계에서 추가 공법의 적용을 요청
- 동일한 필지에 건축한 1별관동의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지반 지내력¹⁾의 부족이 의심되므로 지반보강을 위한 헬리컬파일 공사비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 1별관 공사 자료를 기초로 단가를 산정

〈표 32〉 헬리컬파일 공사비 산출

(단위: m², 백만원, m²/원)

구분	연면적	단가	공사비
검토안	13,732.94	180,370	2,477
대안	13,189.54		2,379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 공사비를 검토한 결과 각각 검토안 39,437백만원, 대안 37,905백만원으로 산정

1) 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는 정도

〈표 33〉 공사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연면적(㎡)	13,732.94	13,732.94	-	13,189.54	-543.40	
기본 공사비	33,234	32,595	-639	31,305	-1,928	
추가 공사비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	98	+98	93	+93
	BF본인증	4	6	+2	6	+2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1,182	676	-505	676	-505
	헬리콥터파일 공사비	-	2,477	+2,477	2,379	+2,379
부가가치세	3,442	3,585	+143	3,446	+4	
총 공사비	37,861	39,437	+1,576	37,905	+44	

나. 보상비

□ 기존 부지에 건축하는 사업으로 발생하지 않음

다. 시설부대경비

□ 기본설계비는 각각 검토안 576백만원, 대안 554백만원으로 산정

〈표 34〉 기본설계비 추정

구분	기준 공사비 ¹⁾ (백만원)	적용요율 ²⁾ (%)	기본설계 적용률 ³⁾ (%)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34,415	4.01	40	552
검토안	35,846	4.02		576
대안	34,453	4.02		554

주: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2) 동 요율은 '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2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3)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①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②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 실시설계비는 각각 검토안 864백만원, 대안 831백만원으로 산정

〈표 35〉 실시설계비 추정

구분	기준 공사비 ¹⁾ (백만원)	적용요율 ²⁾ (%)	실시설계 ³⁾ 적용률(%)	금액 (백만원)
사업계획안	34,415	4.01	60	828
검토안	35,846	4.02		864
대안	34,453	4.02		831

주: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2) 동 요율은 '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2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3)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①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②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 BF예비인증 수수료는 사업계획안 대비 1백만원은 증가한 3백만원으로 산정

〈표 36〉 BF예비인증 수수료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 대안(B)	증감(B-A)
BF예비인증	2	3	1

□ 녹색건축인증 비용은 각각 검토안 130백만원, 대안 125백만원으로 산정

〈표 37〉 녹색건축인증 비용 산정

구분	기준 공사비(백만원)	건축설계 대가요율(%)	녹색건축인증 요율(%)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34,415	4.01	9	126
검토안	35,846	4.02		130
대안	34,453	4.02		125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비용은 사업계획안 대비 1백만원 감소한 1백만원으로 산정

〈표 38〉 에너지절약계획서 비용 산정

구분	기준 단가(원)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1,691,000	2
검토안	1,480,000	1
대안		1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교통영향평가 비용은 각각 검토안 153백만원, 대안 144백만원으로 산정

〈표 39〉 교통영향평가 비용 산정

구분	적용연면적(㎡)	요율(%)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13,732.94	1.24	170
검토안	13,732.94	1.11	153
대안	13,189.54	1.10	144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검토안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은 검토안 228백만원으로 산정

○ 대안의 경우 기준면적인 10,000㎡보다 작아 미술장식품 설치 필요하지 않음

〈표 40〉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정

구분	기준면적(㎡)	적용요율(%)	표준건축비(원/㎡)	금액(백만원)
미술작품 설치비	10,120.14	1	2,257.000	228

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_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자료: 「2023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회의 자료」 참고

□ 감리비는 각각 검토안 2,307백만원, 대안 2,257백만원으로 산정

〈표 41〉 감리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공사비	34,415	35,846	34,453
적용요율(%)	5.69	6.43	6.55
감리비	1,958	2,307	2,257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시설부대비는 각각 검토안 82백만원, 대안 79백만원으로 산정

〈표 42〉 시설부대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공사비	34,415	35,846	34,453
적용요율(%)	0.23		
시설부대비	79	82	79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시설부대경비를 검토한 결과 각각 검토안 4,778백만원, 대안 4,394백만원으로 산정

〈표 43〉 시설부대경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설계비	1,730	1,955	1,658
기본설계비	552	576	554
추가설계비 (BF예비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350	515	274
실시설계비	828	864	831
감리비	1,958	2,307	2,257
시설부대비	79	82	79
부가가치세	377	434	399
합계	4,144	4,778	4,394

라. 예비비

□ 예비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의 10%를 적용하여 산정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 총사업비 추정 결과 각각 검토안 48,637백만원, 대안 46,529백만원으로 산정
- 시설규모 검토 과정에서 연면적이 조정되어 기본공사비가 감소했지만,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파일 공사비와 예비비가 추가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

〈표 44〉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m²,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대지면적(m ²)	9,596					
연면적(m ²)	13,732.94	13,732.94	-	13,189.54	-543.40	
1. 공사비	37,861	39,437	+1,576	37,905	+44	
1-1. 기본공사비	33,234	32,595	-639	31,305	-1,929	
1-2. 추가공사비	1,185	3,257	+2,072	3,154	+1,969	
1-2-1. 신재생에너지	-	98	+98	93	+93	
1-2-2. BF본인증	4	6	+2	6	+2	
1-2-3.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1,181	676	-505	676	-505	
1-2-4. 헬리콥터파일 공사비	-	2,477	+2,477	2,379	+2,379	
1-3. 부가가치세	3,442	3,585	+143	3,446	+4	
2. 시설부대경비	4,144	4,778	+634	4,394	+250	
2-1. 설계비	1,730	1,955	+225	1,658	-72	
2-1-1. 기본설계비	552	576	+24	554	+2	
2-1-2. 추가설계비	350	515	+165	274	-76	
2-1-3. 실시설계비	828	864	+36	831	+3	
2-2. 감리비	1,958	2,307	+349	2,257	+299	
2-3. 시설부대비	79	82	+3	79	-	
2-4. 부가가치세	377	434	+57	399	+22	
3. 예비비	-	4,422	+4,422	4,230	+4,230	
총사업비(1+2+3)	42,005	48,637	+6,632	46,529	+4,524	

V. 정책성 분석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 정책성 분석에서는 비용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분석
 - 모든 조사 대상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별 특수성 및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사업 별도 평가항목'으로 구분
 - 기본 평가항목에는 사업 추진 여건과 정책효과가 있으며, 특수 평가항목에는 재원조달 위험성과 문화재 가치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기본 평가항목인 사업 추진 여건을 중심으로 검토

2. 사업 추진 여건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
 -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사업의 준비 정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에 해당
 -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는 해당 사업이 추진 주체에 의하여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의미
 - 사업 시행 후의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구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준비 정도를 내부 여건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입지, 운영 및 관리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의 구체성 정도를 통해 판단 가능

- 본 사업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무부처의 사업 추진 의지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관련 이슈의 정리가 필요

-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축 계획 기준에 부합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
- 2024년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에 최초 사업비를 산정하는 등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자원조달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초 사업계획 작성 과정에 정원 오류로 인해 면적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다른 경찰서에서 통합유치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 유치장 면적이 요구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치 근거나 필요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마련 및 운영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

나.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외부 여건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영향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태도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태도 및 갈등 여부 등도 포함
- 주무부처는 본 사업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역시 본 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 부산경찰청과 사하경찰서 근무자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 해결과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 본 사업은 현 청사 자리에 재건축을 실시함에 따라 재산권 침해, 토지용도 변경 등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준공한 별관 신축 과정에서도 건축과 관련된 민원은 없던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주무부처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사업 준비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사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음·진동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저감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1. 지역낙후도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 지역낙후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와 객관적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
 -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지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며, 이들의 가중평균으로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
 - 지수 산정에는 2020년에 발표된 균형발전지표의 핵심·객관지표 중 시·군·구 단위로 발표된 자료가 존재하는 36개 지표를 준용 및 변형하여 사용

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 본 사업의 대상지가 위치하는 부산광역시의 지역낙후도는 17개 시·도별 기준으로는 8위에 해당하며, 167개 시·군별 기준으로는 22위에 해당

2. 균형발전효과

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사업별·지역별 특성에 관계없이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를 산정하여 정량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
 - 36개 균형발전지표 중 해당 사업·지역에 관련된 지표들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제시하면 조사수행기관이 검토
 -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검토에서는 이를 생략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통해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효과와 지역 내·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
 -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를 합산하여 검토
 - 총투자액은 모형의 지역 구분과 산업부문 분류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의 건설(비주거용 건물) 부문에 투입
- 검토안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99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33억원이고, 취업과 고용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각각 542명, 389명으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의 63.5%인 50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전체의 67.4%인 22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추정
 - 부산광역시의 취업유발효과는 전체의 73.0%인 396명, 고용유발효과는 전체의 73.8%인 287명으로 추정
- 대안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65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19억원이고, 취업과 고용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각각 519명, 372명으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의 63.5%인 486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전체의 67.4%인 21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추정
 - 부산광역시의 취업유발효과는 전체의 73.0%인 379명, 고용유발효과는 전체의 73.8%인 275명으로 추정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해당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검토안 기준 0.0216%, 대안 기준 0.0206%로 나타남
- 이는 2016~2021년 전체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 0.4918% 대비 낮은 수치이며, 이 중 1,000억원 미만 사업의 평균 0.0703%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 또한 같은 기간 비수도권 건축 외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평균인 0.1573%와 이 중 1,000억원 미만 사업의 평균 0.0691%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 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III.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IV. 비용 추정
- V. 정책성 분석
- VI. 지역균형발전 분석
-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추진 배경

본 사업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의 대상인 사하경찰서의 청사는 1989년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다. 이에 따라 내·외부 균열과 각종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물 배관의 노후화로 수년간 다수의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저수조 노후화는 경찰서 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하경찰서의 방문 민원인은 일평균 약 300명 수준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의자 및 피해자 대기 공간의 부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여경휴게실 및 편의시설 또한 청사가 협소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현 청사의 부지는 매립지 및 연약지반으로 현재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사의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부산경찰청은 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하경찰서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를 대체할 신규 청사 건립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방문 민원인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사업의 주요 내용

가. 사업의 추진 근거

부산경찰청은 본 사업의 지원 근거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유재산법」을 제시했다.

1)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제26조의5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1조는 취득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공용재산의 신·증축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12조는 취득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을, 제14조는 취득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4조제2항은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시행 2022. 12. 31.] [기획재정부지침 제371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11조(취득사업의 대상)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제10조의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산종류
 - 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함)으로서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취득 후 일반회계 소속이 되는 공용재산
 - 2. 취득방법
 - 가. 대상: 매입, 신·증축,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3. 비용내역
 - 가. 대상: 토지매입비(건물 등 포함), 기본조사설계비(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제외),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개 항목(건물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
- 제14조(취득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 ②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기금지원 범위,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 조정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는 운용지침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무용·사업용 공용재산의 경우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사유에 대해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시행 2022. 12. 31.] [기획재정부지침 제371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16조(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①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1. 사무용·사업용 공용재산
 - 가. 안전도(안전성 평가결과,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의 권고내용을 감안)
 - 나. 기타사유
 - (1) 철거대상: 도시계획, 도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철거(지자체가 주민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청사이전을 요청할 경우 신축 타당성 우선 고려)
 - (2) 택지개발지구 편입: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취득
 - (3) 협소: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단위건물내의 순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준용)보다 60% 이하인 경우
 - (4) 직제 제·개정: 직제 제·개정에 따른 신규 청사 소요 발생
 - (5) 노후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30년 이상된 청사
 - (6) 임차청사 매입전환: 연간 임차비 수준이 매입비의 10% 이상인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한편 본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을 노후도 32년, 협소율 45%로 제시하고 있으며, '22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산경찰청은 사업의 지원 근거 중 하나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를 제시하고 있다. 함께 제시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42조는 경찰서의 설치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제외한 시·도 경찰청의 하부조직에 대해 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일부개정]

- 제42조(경찰서) ①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259개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 ②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되,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과 같다.
- 제5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수사부·자치경찰부를 각각 둔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주무부처인 부산경찰청은 이상의 법령들에 따라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의 지원 근거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조항들 가운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본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추진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나. 사업의 추진경위

부산경찰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집행을 위해 '23년~'2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서를 '22년 11월에 제출했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은 '23년 2월에 작성하였다. 이후 2023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²⁾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사하경찰서는 본관과 3개의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주무부처는 현 부지에 있는 본관과 별관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1별관에서 기울어짐이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철거 후 '22년 10월에 신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본관과 2개의 별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1) 당초 사업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시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현 부지 9,596㎡에 연면적 17,187㎡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9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51,825백만원으로 제시되었다.

〈표 1-2〉 사업의 주요 내용(당초)

구분	내용
사업기간	'24 ~ '29
총사업비	51,825백만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9,596㎡, 연면적 17,187㎡, 지하1층 ~ 지상7층
지원조건	전액 국고 지원
사업시행주체	부산경찰청

자료: 경찰청, 「2023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2023. 2.

〈표 1-3〉 총사업비 내역(당초)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사업비	51,825	-
1. 공사비	47,056	• 연면적 × 2,662천원/㎡
2. 보상비	-	-
3. 시설부대경비	4,769	-
3-1. 설계비	2,308	• 기본설계비: 1,182 • 실시설계비: 1,126
3-2. 감리비	2,353	• 공사비 × 5.00%
3-3. 시설부대비	108	• 공사비 × 0.23%
4. 예비비	-	-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2023. 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1-4〉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당초)

(단위: m²)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업무 시설	1. 회의실			1,106.00	-
	대강당	596	명	450.00	• 400~600명 미만: 450m ² ※ 지역관서 포함
	대회의실	287	명	123.00	• 100~200명 미만: 99m ² •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m ² 가산
	소회의실	10	개	500.00	• 20명 미만: 50m ² ※ 112상황실 제외
	업무자료실	1	실	33.00	• 서고·열람실: 33m ²
	2. 순 사무실			3,524.00	-
	서장실	1	명	80.00	-
	과장실	11	명	330.00	-
	행정업무부서	197 ^{주)}	명	1,379.00	• 근무자 수×7m ²
	수사·조사부서	163 ^{주)}	명	1,630.00	• 근무자 수×10m ² ※ 근무자(7m ²)+피의자(3m ²)
	과학수사팀	15	명	105.00	• 근무자 수×7m ² ※ 광역과학수사팀 운영 경찰서만 적용
	3. 특수시설			2,200.00	-
	진술녹화실	163 ^{주)}	명	176.00	• 11m ² ※ 수사관 10명당 1실 ※ 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조사, 청문 근무자 해당
	진술녹화모니터실	163 ^{주)}	명	160.00	• 10m ² ※ 수사관 10명당 1실
	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대기실	6	개	90.00	• 과별 5명 기준 ※ 피의자(피해자)×3m ²
	민원실	287	명	220.00	• 200~300명 미만: 220m ²
	유치장	일반		384.00	-
	상황실(지령실)	287	명	125.00	• 200~400명 미만: 125m ²
	상무관	596	명	400.00	• 400~600명 미만: 400m ² ※ 지역관서 포함
	사격장	596	명	570.00	• 400~600명 미만(10개 사로): 570m ² ※ 지역관서 포함
	정보화교육장	1급	등급	75.00	• 경찰서 급지별 교육 인원×3m ² ※ 1급서 교육인원: 25명
	소 계			6,830.00	-

〈표 1-4〉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편의 시설	1. 직원휴게실	287	명	67.76	• 9.9㎡+(정원-24인)×0.22㎡
	2. 여경,여직원 휴게실	58	명	54.00	• 17~24인 기준: 54㎡
	3. 체육실	287	명	104.92	• 75㎡+(정원-100)×0.16㎡
	4. 관복보관 및 탈의실	287	명	157.85	• 직원 수×0.55㎡
	5. 목욕실(남·여)	287	명	150.00	• 200~400명 미만: 150㎡
	6. 종교단체	3	실	120.00	• 1실: 40㎡ ※ 경목, 경승, 경신실
	7. 협의회	2	실	66.00	• 1실: 33㎡ ※ 경우회, 청소년육성회
	소 계				720.53
정보 통신	1. 통신장비실	8	조	40.00	• 장비 1조×5㎡
	2. 전산장비실	10	수	50.00	• 전산기 수×5㎡
	3. 전산실 및 전산자료실	-	수	-	• 전산기 수×5㎡
	4. 교환실	-	실	-	-
	5. 보안실	1	실	33.00	• 1실: 33㎡
	소 계				123.00
저장 시설	1. 문서고	3,524	㎡	246.68	• 순사무실 면적×7%
	2. 비품창고	3,524	㎡	246.68	• 순사무실 면적×7%
	3. 소모품창고	3,524	㎡	246.68	• 순사무실 면적×7%
	4. 피복창고	596	명	101.32	• 직원 수×0.17㎡ ※ 지역관서 포함
	5. 수사+과학수사			137.00	-
	영치물 압수보관실	1	실	20.00	• 1실: 20㎡
	수사자료(송치)실	1	실	34.00	• 1실: 34㎡
	증거분석(보관)실	1	실	83.00	• 1실: 83㎡
	6. 경무			120.00	-
	문서보관실	1	실	28.00	• 1실: 28㎡
	지출서류 보관실	1	실	32.00	• 1실: 32㎡
	물품보관실	1	실	60.00	• 1실: 60㎡
	7. 생활안전			127.00	-
	즉결유실물보관실	1	실	15.00	• 1실: 15㎡
	압수물보관실	1	실	52.00	• 1실: 52㎡

〈표 1-4〉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자료, 정보보관실	1	실	60.00	• 1실: 60㎡
	8. 정보기록보관실	1	실	74.00	• 1실: 74㎡
	9. 경비 장비, 물품보관실	1	실	145.00	• 1실: 145㎡(피복보관실 포함)
	10. 무기 탄약			140.00	-
	무기고	596	명	60.00	• 400~600명 미만: 60㎡ ※ 지역관서 포함
	탄약고	1	실	20.00	• 1실: 20㎡
	민간소유 총포실	1	실	30.00	• 1실: 30㎡
	화학보관실	1	실	30.00	• 1실: 30㎡
	소 계			1,584.36	-
관리 시설	1. 정문안내소	1	실	15.00	• 15㎡
	2. 당직실	1급	등급	160.00	• 1급서: 160㎡
	3. 차고			-	-
	대형차	-	대	-	-
	중형차	-	대	-	-
	소형차	-	대	-	-
	4. 지하주차장	86	대	2,949.80	• 차량 수×34.3㎡
	5. 운전원 대기실	-	명	-	-
	6. 청소관리용역사무실	1급	등급	18.00	• 1급서: 18㎡
소 계			3,142.80	-	
보조 시설	1. 식당	287	명	310.00	• 200~400명 미만: 310㎡
전 용 면 적 계			12,710.69	-	
시설 관리	1. 기계실	9,760.9	㎡	450.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450㎡
	2. 전기실	9,760.9	㎡	175.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175㎡
	3. 발전기	9,760.9	㎡	38.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38㎡
시 설 관 리 계			663.00	-	
공 용 면 적		12,710.7	㎡	3,813.21	• 전용면적의 30% 추가
합 계			17,186.90	-	

주: 행정업무부서, 수사·조사부서 인원이 오기입된 상태로 사업계획이 작성
 자료: 부산경찰청,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부산사하경찰서), 2023. 7. 3.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표 1-5〉 연차별 투자 계획(당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기본설계비	1,182	242	940	-	-
실시설계비	1,126	-	200	926	-
건설보상비	-	-	-	-	-
공사비	47,056	-	-	-	47,056
감리비	2,353	-	-	-	2,353
시설부대비	108	9	-	-	99
합계	51,825	251	1,140	926	49,508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23~'2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서」, 202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변경 사업계획

조사 진행 중에 사업계획의 오류 등이 발견되었다. 사업계획의 오류란 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는 정원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 정원이 287명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정원을 합산한 결과가 36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제시되었다. 또한 1별관을 별도로 신축했으며, 본 사업 실시와 무관하게 존치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면적이 과다 산정되었다. 이에 이러한 부분을 정정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변경 사업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의 부지는 동일하나 건축연면적이 13,733㎡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42,005백만원으로 제시되었다.

〈표 1-6〉 사업의 주요 내용(변경)

구분	내용
사업기간	'24 ~ '29
총사업비	42,005백만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9,596㎡, 연면적 13,733㎡, 지하1층 ~ 지상6층
지원조건	전액 국고 지원
사업시행주체	부산경찰청

자료: 경찰청, 「적정성 검토 관련 사업 추진(변경) 요구서」, 2023. 12.

〈표 1-7〉 총사업비 내역(변경)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사업비	42,005	-
1. 공사비	37,861	• 연면적 × 2,662천원/㎡
2. 보상비	-	-
3. 시설부대경비	4,144	-
3-1. 설계비	1,903	• 기본설계비: 992 • 실시설계비: 911
3-2. 감리비	2,154	• 공사비 × 5.00%
3-3. 시설부대비	87	• 공사비 × 0.23%
4. 예비비	-	-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총사업비 산출내역서(부산사하경찰서)」, 2023. 1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1-8〉 사업계획의 세부 시설별 면적 현황(변경)

(단위: ㎡)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업무 시설	1. 회의실			843.60	-
	대강당	596	명	450.00	• 400~600명 미만: 450㎡ ※ 지역관서 포함
	대회의실	288	명	123.00	• 100~200명 미만: 99㎡ •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 가산
	소회의실	288	명	237.60	• 20명 미만: 50㎡, 1명 증가 시 0.7㎡
	업무자료실	1	실	33.00	• 서고·열람실: 33㎡
	2. 순 사무실			2,854.00	-
	서장실	1	명	80.00	-
	과장실	11	명	330.00	-
	행정업무부서	117	명	819.00	• 근무자 수 × 7㎡
	수사·조사부서	159	명	1,590.00	• 근무자 수 × 10㎡ ※ 근무자(7㎡)+피의자(3㎡)
	과학수사팀	15	명	35.00	• 근무자 수 × 7㎡ ※ 1별관: 70㎡
	3. 특수시설			1,857.00	-
	진술녹화실	159	명	153.00	• 11㎡ ※ 수사관 10명당 1실 ※ 1별관: 12㎡

〈표 1-8〉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진술녹화모니터실	159	명	140.00	• 10㎡ ※ 수사관 10명당 1실 ※ 1별관: 10㎡
	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대기실	6	개	90.00	• 과별 5명 기준 ※ 피의자(피해자)×3㎡
	민원실	288	명	220.00	• 200~300명 미만: 220㎡
	유치장	일반	-	384.00	-
	상황실(지령실)	288	명	125.00	• 200~400명 미만: 125㎡
	상무관	596	명	100.00	• 400~600명 미만: 400㎡ ※ 지역관서 포함 ※ 1별관: 300㎡
	사격장	596	명	570.00	• 400~600명 미만(10개 사로): 570㎡ ※ 지역관서 포함
	정보화교육장	1급	등급	75.00	• 경찰서 급지별 교육인원×3㎡ ※ 1급서 교육인원 : 25명
	소 계				5,577.60 ^{주)}
편의 시설	1. 직원휴게실	288	명	-	• 9.9㎡+(정원-24인)×0.22㎡ ※ 1별관: 75㎡
	2. 여경, 여직원 휴게실	58	명	-	• 17~24인 기준: 54㎡ ※ 1별관: 54㎡
	3. 체육실	288	명	105.08	• 75㎡+(정원-100)×0.16㎡
	4. 관복보관 및 탈의실	288	명	158.40	• 직원 수×0.55㎡
	5. 목욕실(남·여)	288	명	-	• 200~400명 미만: 150㎡ ※ 1별관: 150㎡
	6. 종교단체	3	실	120.00	• 1실: 40㎡ ※ 경목, 경승, 경신실
	7. 협의회	2	실	33.00	• 1실: 33㎡ ※ 경우회, 청소년육성회 ※ 1별관: 33㎡
	소 계				416.48
정보 통신	1. 통신장비실	8	조	40.00	• 장비 1조×5㎡
	2. 전산장비실	10	수	50.00	• 전산기 수×5㎡
	3. 전산실 및 전산자료실	-	수	-	• 전산기 수×5㎡
	4. 교환실	-	실	-	-
	5. 보안실	1	실	33.00	• 1실: 33㎡
	소 계				123.00

〈표 1-8〉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저장 시설	1. 문서고	2,854	㎡	149.78	•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 50㎡	
	2. 비품창고	2,854	㎡	149.78	•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 50㎡	
	3. 소모품창고	2,854	㎡	149.78	•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 50㎡	
	4. 피복창고	596	명	51.30	• 직원 수×0.17㎡ ※ 지역관서 포함 ※ 1별관: 50㎡	
	5. 수사+과학수사				141.00	-
	통합증거물보관실		1	실	37.00	• 1실: 103㎡ ※ 1별관: 66㎡
	수사기록보관실		1	실	104.00	• 경찰서 급지별 구분 ※ 1급서 : 104㎡
	6. 경무				60.00	-
	문서보관실		1	실	28.00	• 1실: 28㎡
	지출서류 보관실		1	실	32.00	• 1실: 32㎡
	물품보관실		1	실	-	• 1실: 60㎡ ※ 1별관: 60㎡
	7. 생활안전				127.00	-
	즉결유실물보관실		1	실	15.00	• 1실: 15㎡
	압수물보관실		1	실	52.00	• 1실: 52㎡
	자료, 장비보관실		1	실	60.00	• 1실: 60㎡
	8. 정보기록보관실		1	실	74.00	• 1실: 74㎡
	9. 경비 장비, 물품보관실		1	실	145.00	• 1실: 145㎡(피복보관실 포함)
	10. 무기 탄약				140.00	-
	무기고		596	명	60.00	• 400~600명 미만: 60㎡ ※ 지역관서 포함
	탄약고		1	실	20.00	• 1실: 20㎡
	민간소유 총포실		1	실	30.00	• 1실: 30㎡
	화학보관실		1	실	30.00	• 1실: 30㎡
	소 계				1,187.64	-

〈표 1-8〉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소요 면적	산출 근거
관리 시설	1. 정문안내소	1	실	15.00	• 15㎡
	2. 당직실	1급	등급	160.00	• 1급서: 160㎡
	3. 차고			-	-
	대형차	-	대	-	-
	중형차	-	대	-	-
	소형차	-	대	-	-
	4. 운전원 대기실	-	명	-	-
	5. 청소관리용역사무실	1급	등급	18.00	• 1급서 : 18㎡
	소 계				193.00
보조 시설	1. 식당	287	명	310.00	• 200~400명 미만: 310㎡
	전 용 면 적 계				7,784.72
시설관 리	1. 기계실	9,760.9	㎡	450.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450㎡
	2. 전기실	9,760.9	㎡	175.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175㎡
	3. 발전기	9,760.9	㎡	38.00	• 전용면적: 기준면적 10,000㎡ 이하: 38㎡
시 설 관 리 계				663.00	-
지하주차장		86	대	2,949.80	-
공 용 면 적		7,784.72	㎡	2,335.42	• 전용면적의 30% 추가
합 계				13,732.94	-

주: 변경 사업계획에 기재된 업무시설의 합산 면적은 오류이며, 실제로는 5,554.6㎡임
 자료: 경찰청, 「청사시설 기준면적 재산출(부산사하경찰서)」, 2023. 12.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표 1-9〉 연차별 투자 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기본설계비	992	346	646	-	-
실시설계비	911	-	-	911	-
건설보상비	-	-	-	-	-
공사비	37,861	-	-	-	37,861
감리비	2,154	-	-	-	2,154
시설부대비	87	9	-	8	70
합계	42,005	355	646	919	40,085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청사시설 기준면적 재산출(부산 사하경찰서)」, 2023. 12.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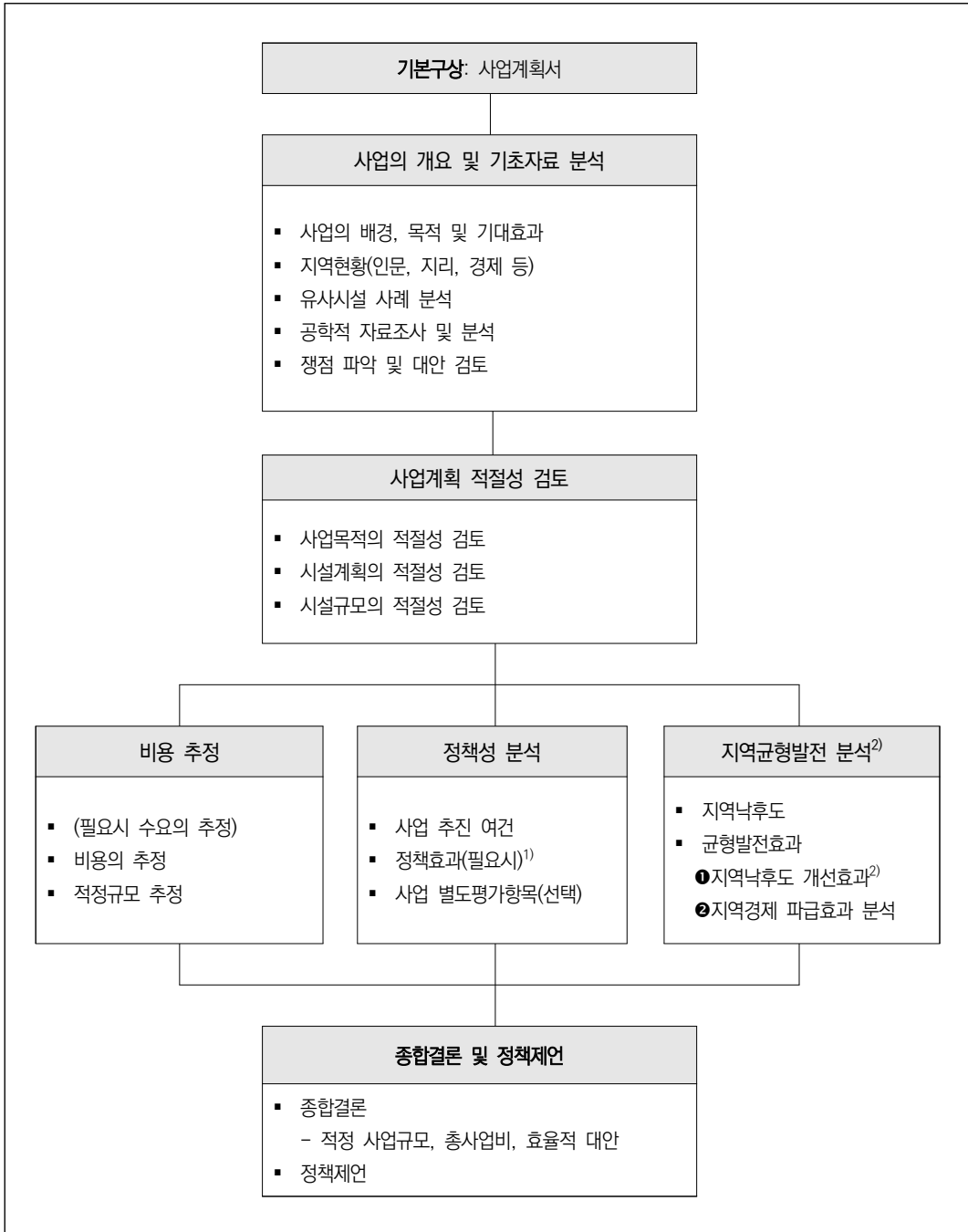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 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조사의 철회 또는 반려가 가능하다. 본 사업의 변경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총사업비 420억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철회 또는 반려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계속 수행한다.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그림 I-2]와 같은 절차로 수행된다.

[그림 1-2]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주: 1) 수도권 유형의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함. 또한 해당 사업이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및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생략 가능함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요청 (조세연)」(타당성심사과-413, 2023. 5. 11.)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본 사업의 검토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대상사업의 목적을 중심으로 추진배경과 계획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의 쟁점을 도출한다. 사업의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관련 계획들을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비교·검토하고 다양한 조사 쟁점을 도출한다. 제기된 조사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결론 및 정책제언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2)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목적의 적절성, 시설계획의 적절성, 시설규모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적절한 사업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시설계획과 시설규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대안을 발굴한다.

3) 비용 분석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 기술 및 비용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앞서 제시한 대안들과 비교·검토한다. 이에 따라 적정 규모와 비용 변동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한다.

4)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정책적인 쟁점을

평가한다. 본 검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수행지침」 제4장 정책성 분석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⁴⁾에 따라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과 지역 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 여건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5)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는 지역낙후도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와 균형발전효과에 대해 검토하며, 균형발전효과는 다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가 개선되는 효과로서 해당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평가한다.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종합결론에서는 본 사업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용 및 정책성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최종적인 검토 결과와 함께 본 검토의 한계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4)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2021. 5.

II.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대상 지역 주변 환경 분석

가. 부산광역시⁵⁾

본 사업의 대상지가 위치하는 부산은 한반도의 남동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서 간의 거리는 49.4km⁶⁾이고, 남북 간의 거리는 56.8km⁷⁾이며, 전체 면적은 약 770.2km²이다. 행정구

〈표 II-1〉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명	면적		등		읍	면
	(km ²)	구성비(%)	행정	법정		
중구	2.83	0.4	9	41	-	-
서구	13.95	1.8	13	24	-	-
동구	9.87	1.3	12	4	-	-
영도구	14.20	1.8	11	21	-	-
부산진구	2967	3.9	20	11	-	-
동래구	16.63	2.2	13	9	-	-
남구	26.82	3.5	17	6	-	-
북구	39.37	5.1	13	5	-	-
해운대구	51.54	6.7	18	8	-	-
사하구	41.77	5.4	16	8	-	-
금정구	65.28	8.5	16	13	-	-
강서구	181.50	23.6	8	22	-	-
연제구	12.10	1.6	12	2	-	-
수영구	10.22	1.3	10	5	-	-
사상구	36.10	4.7	12	8	-	-
기장군	218.32	28.3	-	-	3	2
계	770.17	100.00	200	187	3	2

출처: 부산광역시, 『제61회 부산통계연보』, 2023.

5)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한 『제61회 부산통계연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6) 부산광역시, 『제59회 부산통계연보』, 2021.

7) 부산광역시, 『제59회 부산통계연보』, 2021.

역은 15개의 구 및 200개의 행정동, 187개의 법정동과 1개의 군 및 3개의 읍,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1회 부산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1972년에 처음으로 200만을 넘어섰으며, 1979년에 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1995년에 약 389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약 340만명이다.

〈표 II-2〉 부산광역시 등록인구 현황

(단위: 천명)

행정구역명	합계		한국인		외국인				
	남	여	남	여	남	여			
중구	43	21	21	41	20	21	2	1	1
서구	107	52	55	105	51	54	2	1	1
동구	90	44	46	88	43	45	2	1	1
영도구	112	56	57	111	54	56	2	1	1
부산진구	356	171	185	353	170	183	3	1	2
동래구	268	130	138	267	130	137	1	0	1
남구	267	131	137	262	128	134	5	3	3
북구	285	141	145	283	140	143	2	1	1
해운대구	401	193	208	396	191	206	5	2	2
사하구	310	155	156	306	152	154	4	2	2
금정구	232	113	119	228	112	117	4	2	2
강서구	17	78	70	143	74	69	4	4	1
연제구	208	100	108	207	100	107	1	0	1
수영구	177	83	93	175	83	92	2	1	1
사상구	213	107	105	208	105	103	4	2	2
기장군	179	89	90	177	88	89	2	1	1
계	3,396	1,664	1,732	3,350	1,639	1,711	46	25	21

주: 1. 동래구 외국인 남자 수는 412명

2. 연제구 외국인 남자 수는 346명

출처: 부산광역시, 『제61회 부산통계연보』, 2023.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주택 수는 약 146만호이며, 아파트가 약 87만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에는 약 143만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인구수 대비 주택의 양적지표 중 하나인 천인당 주택 수는 440.0호⁸⁾이며,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자가점유율은 약 59.7%⁹⁾이다.

〈표 II-3〉 부산광역시 점유형태별 가구수

행정구역명	일반가구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중구	20,508	10,047	2,643	6,139	509	184	986
서구	47,261	27,918	5,699	10,594	954	78	2,018
동구	39,776	22,248	5,616	9,175	977	64	1,696
영도구	50,842	29,919	4,542	12,730	1,184	84	2,383
부산진구	157,105	86,320	21,698	41,142	3,272	241	4,432
동래구	106,013	66,831	15,220	19,279	1,393	225	3,065
남구	110,605	69,970	12,166	23,659	1,307	133	3,370
북구	113,121	74,631	11,994	21,810	1,687	193	2,806
해운대구	158,613	97,409	21,277	32,199	2,118	215	5,395
사하구	128,354	81,749	14,050	27,142	1,477	117	3,819
금정구	101,802	60,041	11,760	25,194	1,429	188	3,190
강서구	51,376	28,242	11,180	9,242	666	129	1,917
연제구	85,699	52,165	11,111	18,549	1,077	176	2,621
수영구	76,700	41,202	12,575	19,380	1,150	95	2,298
사상구	90,678	53,773	8,502	23,661	2,186	252	2,304
기장군	66,584	36,371	7,974	19,007	770	135	2,327
계	1,405,037	838,836	178,007	318,902	22,156	2,509	44,627

주: 무상은 관사, 사택 등을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2023. 9. 19. 거처의 종류별/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8)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2021, 2023. 9. 19., 인구천인당 주택수

9)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2023. 9. 19., 거처의 종류별/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사업체 수는 약 40만개이며, 종사자수는 약 154만명이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수가 약 8만개로 가장 많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약 5만개로 두 번째로 많다. 종사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약 23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조업이 약 22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표 II-4〉 부산광역시 사업체 및 종사자수

행정구역명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남	여	
중구	18,306	69,033	41,057	27,976
서구	11,376	45,728	21,556	24,172
동구	18,208	76,827	41,021	35,806
영도구	11,616	46,978	27,998	18,980
부산진구	44,355	174,317	84,906	89,411
동래구	27,667	97,700	48,719	48,981
남구	24,190	93,744	53,833	39,911
북구	21,049	66,682	29,597	37,085
해운대구	40,946	154,115	78,314	75,801
사하구	29,196	113,587	63,015	50,572
금정구	26,714	102,359	59,982	42,377
강서구	30,038	143,600	101,572	42,028
연제구	23,946	96,109	49,230	46,879
수영구	19,613	62,351	33,358	28,993
사상구	36,104	124,257	75,324	48,933
기장군	17,930	77,117	44,241	32,876
계	401,254	1,544,504	853,723	690,781

출처: 부산광역시, 『제61회 부산통계연보』, 2023.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약 146만대이며, 그중 승용차가 약 123만 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등록 차량 중 약 132만대가 자가용이며, 영업용 약 15만대, 관용 차량은 약 5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표 II-5〉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 현황

(단위: 대)

행정구역명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중구	37,606	28,084	613	7,146	1,763	3,003
서구	30,668	24,954	1,067	4,517	130	5,975
동구	58,194	49,532	1,177	6,312	1,173	4,477
영도구	33,497	27,380	1,437	4,576	104	6,341
부산진구	143,461	123,540	3,680	15,571	670	15,324
동래구	96,722	82,093	2,627	11,618	384	8,606
남구	100,833	82,271	2,890	13,898	1,774	10,617
북구	106,261	88,858	2,870	14,134	399	8,407
해운대구	182,830	162,596	3,928	15,547	759	12,605
사하구	113,905	94,858	3,407	15,194	446	12,350
금정구	88,146	70,775	3,187	13,359	825	8,147
강서구	86,150	65,696	2,090	17,596	768	5,888
연제구	106,262	91,828	2,890	10,664	880	6,856
수영구	106,936	96,898	2,442	7,111	485	6,603
사상구	89,184	68,761	2,766	17,132	525	10,644
기장군	83,953	68,859	2,883	11,827	384	5,568
계	1,464,608	1,226,983	39,954	186,202	11,469	131,411

주: 1. 합계에 이륜차는 미포함
 2.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통계표에 기재된 이륜차의 합계는 131,423대이나, 이는 오류로 추정됨
 출처: 부산광역시, 『제61회 부산통계연보』, 2023.

나. 사하구¹⁰⁾

본 사업의 대상지가 위치하는 사하구는 부산의 서남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서구와, 낙동강을 경계로 한 서쪽에는 강서구와 접하고, 구덕산 서쪽 능성과 승학산 줄기를 경계로 북쪽에는 사상구, 남쪽으로는 남해와 접하고 있다. 동서 간의 거리는 7.6km이고, 남북 간의 거리는 11.6km이며, 전체 면적은 약 41.8km²로 부산광역시의 16개 자치구군 중 다섯 번째로 크다. 행정구역은 16개의 행정동 및 8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6〉 사하구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명	면적		동		통	반
	(km ²)	구성비(%)	행정	법정		
과정1동	1.09	2.61	1	1	28	161
과정2동	1.03	2.47	1	-	22	141
과정3동	1.90	4.55	1	-	22	121
과정4동	0.87	2.08	1	-	21	109
당리동	3.87	9.27	1	1	36	219
하단1동	6.50	15.56	1	1	26	129
하단2동	3.08	7.37	1	-	30	146
신평1동	1.65	3.95	1	1	34	184
신평2동	2.65	6.34	1	-	23	120
장림1동	2.53	6.06	1	1	19	98
장림2동	2.30	5.51	1	-	37	243
다대1동	5.08	12.16	1	1	52	332
다대2동	2.69	6.44	1	-	36	271
구평동	3.52	8.43	1	1	14	104
감천1동	2.39	5.72	1	1	31	200
감천2동	0.62	1.48	1	-	18	106
계	41.77	100.00	16	8	449	2,684

주: 사하구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법정동이 잘못 작성되어 있어 연구진이 수정하여 작성함

출처: 사하구, 『제42회 통계연보(2021)』, 2022.

10) 사하구청 홈페이지 및 사하구에서 발간한 『제42회 통계연보(202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사하구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하구의 인구는 약 32만명이고, 평균 연령은 45.0세이며, 인구밀도는 7,571명/km²이다.

〈표 11-7〉 사하구 등록인구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명	합계			한국인			외국인		
		남	여		남	여		남	여
괴정1동	20,246	9,753	10,493	20,127	9,705	10,422	119	48	71
괴정2동	14,413	7,068	7,345	14,343	7,037	7,306	70	31	39
괴정3동	13,054	6,280	6,774	12,984	6,262	6,722	70	18	52
괴정4동	11,426	5,524	5,902	11,346	5,491	5,855	80	33	47
당리동	27,390	13,421	13,969	27,246	13,373	13,873	144	48	96
하단1동	22,030	10,956	11,074	21,792	10,869	10,923	238	87	151
하단2동	25,889	12,860	13,029	25,446	12,646	12,800	443	214	229
신평1동	18,127	9,371	8,756	17,685	9,059	8,626	442	312	130
신평2동	16,363	8,268	8,095	16,012	8,010	8,002	351	258	93
장림1동	11,894	6,371	5,523	11,175	5,788	5,387	719	583	136
장림2동	28,507	14,494	14,013	28,080	14,265	13,815	427	229	198
다대1동	40,688	20,602	20,086	39,923	20,055	19,868	765	547	218
다대2동	28,272	13,875	14,397	28,094	13,810	14,284	178	65	113
구평동	11,840	6,072	5,768	11,680	5,966	5,714	160	106	54
감천1동	19,658	9,725	9,933	19,425	9,611	9,814	233	114	119
감천2동	6,429	3,284	3,145	6,399	3,281	3,118	30	3	27
계	316,226	157,924	158,302	311,757	155,228	156,529	4,469	2,696	1,773

출처: 사하구, 『제42회 통계연보(2021)』, 2022.

2020년 기준 사하구의 주택 수는 약 14만호이며, 아파트가 약 8만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사하구에는 약 13만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자가점유율은 약 63.7%로 북구에 이어 부산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¹¹⁾

11) 북구: 66.0%, 사하구: 63.7%, 남구: 63.3%, 동래구: 63.0%, 해운대구: 61.4%
참고로 자가점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중구(49.0%)임

〈표 II-8〉 사하구 거처의 종류별 점유형태별 가구수

거처의 종류	일반가구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주택	122,754	80,421	12,382	24,813	1,430	107	3,601
- 단독주택	29,091	12,136	3,521	10,822	986	78	1,548
- 아파트	77,215	58,478	6,967	9,899	230	15	1,626
- 연립주택	4,469	3,363	472	456	55	-	123
- 다세대주택	10,137	5,957	1,129	2,733	90	10	218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842	487	293	903	69	4	86
주택 이외의 거처	5,600	1,328	1,668	2,329	47	10	218
계	128,354	81,749	14,050	27,142	1,477	117	3,819

주: 무상은 관사, 사택 등을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2023. 9. 19., 거처의 종류별/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2020년 기준 사하구의 사업체 수는 약 3만개이며, 종사자 수는 약 11만명이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수가 약 7천개로 가장 많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약 5천개로 두 번째로 많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약 30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약 16천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표 II-9〉 사하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행정구역명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남	여
과정1동	1,567	4,316	1,855	2,461
과정2동	871	2,045	881	1,164
과정3동	1,476	3,608	1,18	2,190
과정4동	1,006	2,391	1,258	1,133
당리동	2,517	7,583	3,414	4,169
하단1동	2,131	7,123	3,554	3,569
하단2동	3,173	11,031	5,371	5,660
신평1동	1,615	11,489	7,199	4,290
신평2동	1,752	9,824	6,514	3,310
장림1동	2,040	10,591	6,537	4,054
장림2동	2,499	10,312	5,511	4,801
다대1동	3,073	12,813	7,969	4,844

〈표 II-9〉의 계속

행정구역명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남	여
다대2동	1,589	4,670	2,278	2,392
구평동	1,812	8,100	5,743	2,357
감천1동	1,653	6,617	4,032	2,585
감천2동	502	920	402	518
계	29,276	113,433	63,936	49,497

출처: 사하구, 『제42회 통계연보(2021)』, 2022.

2. 사업대상 지역 치안 환경 분석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약 148만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53천건, 3.7% 증가한 수치이며, 지능범죄가 약 44천건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반면에 교통범죄는 약 68천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전국 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죄종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강력범죄	26,787	26,476	24,332	22,476	24,954
절도범죄	176,809	186,957	179,517	166,409	182,270
폭력범죄	287,611	287,913	265,768	232,661	245,286
지능범죄	344,698	381,533	424,642	361,107	405,105
풍속범죄	20,162	21,153	22,632	23,360	27,113
특별경제범죄	53,994	51,400	47,826	40,708	48,615
마약범죄	6,513	8,038	9,186	8,088	10,331
보건범죄	11,033	12,570	14,595	16,936	17,749
환경범죄	4,791	3,877	3,568	3,656	3,477
교통범죄	408,371	377,354	348,725	308,634	241,029
노동범죄	1,883	975	356	406	714
안보범죄	69	169	216	206	219
선거범죄	1,897	611	829	274	2,969
병역범죄	14,271	12,712	3,845	1,823	4,638
기타범죄	221,862	240,168	241,829	243,082	267,964
계	1,580,751	1,611,906	1,587,866	1,429,826	1,482,433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22, 2023. 9. 19.,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범죄 발생건수의 추세는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부산광역시에서는 약 11만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전년대비 약 5천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범죄가 약 3천건 증가했으며, 교통범죄는 약 4천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부산광역시 범죄 발생현황

죄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강력범죄	1,709	1,714	1,592	1,489	1,695
절도범죄	14,358	14,489	14,168	12,670	13,688
폭력범죄	19,903	20,689	19,085	16,124	17,256
지능범죄	27,714	31,926	37,795	30,861	33,562
풍속범죄	2,263	1,784	1,460	1,632	2,039
특별경제범죄	4,063	3,938	3,677	3,077	4,192
마약범죄	771	743	931	578	766
보건범죄	1,431	1,660	1,708	2,215	2,157
환경범죄	109	126	127	196	180
교통범죄	22,905	20,437	18,200	16,180	12,196
노동범죄	56	28	18	11	35
안보범죄	-	5	5	5	14
선거범죄	79	14	65	32	142
병역범죄	632	582	208	93	172
기타범죄	14,635	15,003	14,613	15,276	16,963
계	110,628	113,138	113,652	100,439	105,057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22, 2023. 9. 19.,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부산청)

2022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의 5대 범죄는 약 3만건이 발생했다. 사업대상지인 사하구에서는 약 2천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부산광역시 전체 발생건수의 약 6.6%를 차지한다.

〈표 II-12〉 부산광역시 5대 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경찰서	소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중부	1,160	0	4	38	540	578
동래	1,790	1	1	99	725	964
영도	828	3	1	19	295	510
동부	1,109	1	3	41	469	595
부산진	4,538	6	3	222	1,989	2,318
서부	922	2	1	25	454	440
남부	2,403	3	3	105	887	1,405
해운대	3,026	3	6	153	1,333	1,531
사상	1,932	6	1	81	841	1,003
금정	1,466	3	5	76	675	707
사하	1,775	6	3	65	628	1,073
연제	2,255	2	2	92	822	1,337
강서	796	3	1	32	318	442
북부	1,834	1	1	45	939	848
기장	1,096	2	1	43	463	587
계	26,930	42	36	1,136	11,378	14,338

주: 2022년도 기준

출처: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서별 5대 범죄 발생현황』, 2023. 2023. 9. 19., 5대 범죄 발생현황

2022년도에 검거된 범죄 가운데 범죄 발생 후 1일 이내에 검거된 비율은 약 22.0%이며, 약 54.8%의 범죄가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경우는 약 7.3%로 나타나 대부분 범죄 발생 후 1년 이내에 검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죄종별	계	1일 이내	10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초과
강력범죄	23,521	4,918	1,958	4,993	7,067	3,136	1,449
절도범죄	113,705	12,881	22,684	35,994	30,015	10,146	1,985
폭력범죄	209,789	49,631	42,662	58,582	42,414	13,706	2,794
지능범죄	229,265	9,131	8,956	29,824	72,029	71,775	37,550
풍속범죄	22,384	3,304	1,693	2,441	7,476	5,667	1,803
특별경제범죄	39,078	8,352	2,238	6,103	9,451	9,322	3,612
마약범죄	9,881	1,850	694	1,082	1,758	3,071	1,426
보건범죄	16,807	1,612	2,190	4,501	4,832	3,070	602
환경범죄	3,086	125	411	892	928	537	193
교통범죄	233,413	126,526	43,603	37,315	19,443	5,295	1,231
노동범죄	686	6	25	71	151	320	113
안보범죄	169	6	8	5	50	26	74
선거범죄	2,179	193	290	432	692	527	45
병역범죄	3,850	77	799	1,050	1,122	434	368
기타범죄	225,975	31,021	20,104	40,628	53,418	51,640	29,164
계	1,133,788	249,633	148,315	223,913	250,846	178,672	82,409

주: 1. 10일 이내: 2일 이내, 3일 이내, 10일 이내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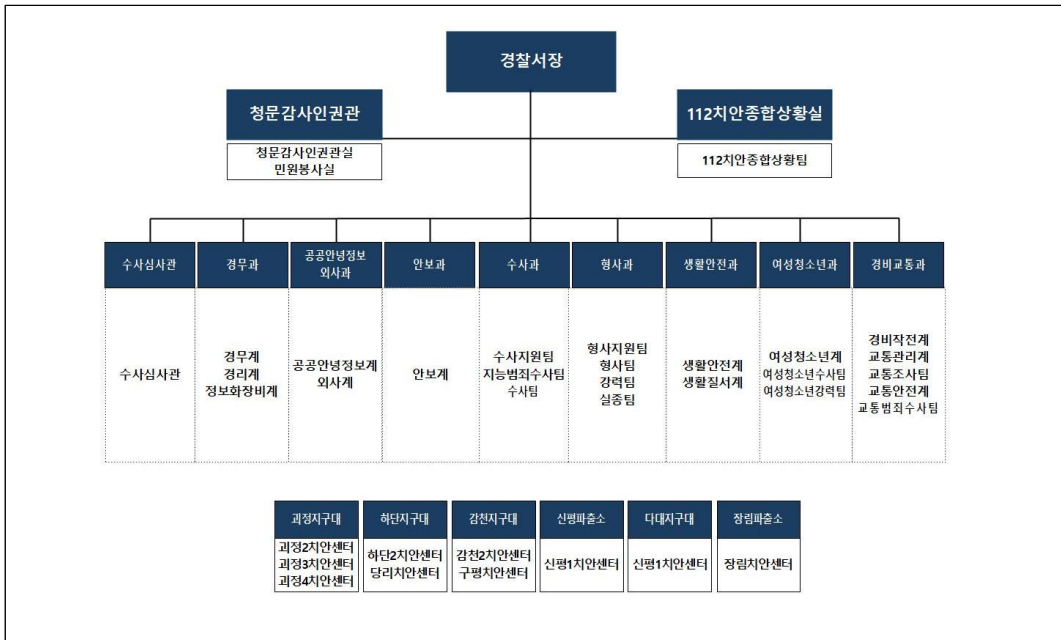
2. 1년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합산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22, 2023. 9. 19.,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내용을 재구성

3. 시설 현황 분석¹²⁾

부산 사하경찰서에는 2실, 8과, 28계실, 4지구대, 2파출소, 10치안센터 및 방법순찰대가 있고, 관할구역은 사하구 16개동이다. 동쪽으로는 부산 서부경찰서, 서쪽으로는 부산 강서경찰서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그림 11-1] 부산 사하경찰서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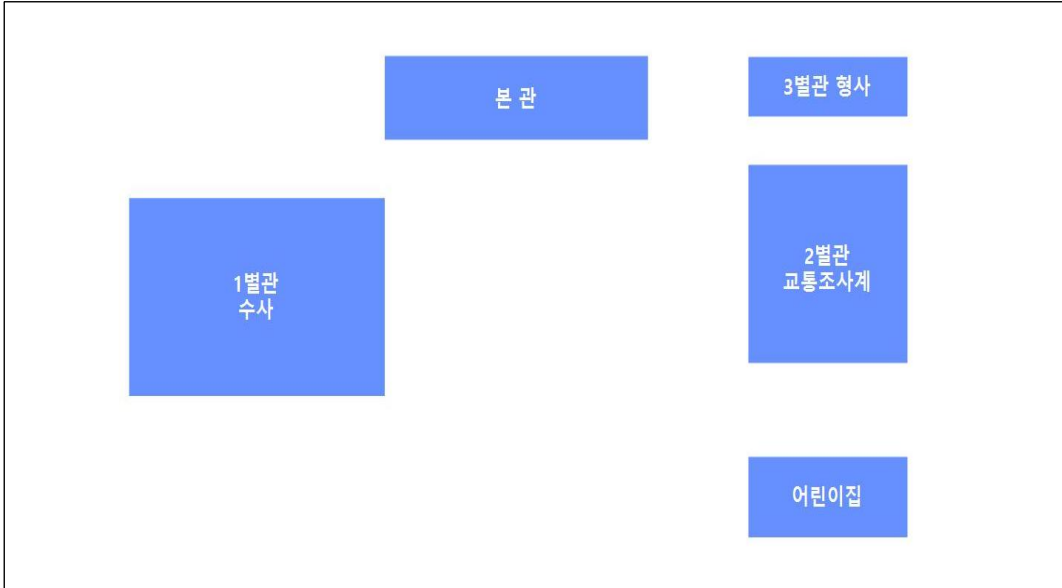


자료: 부산 사하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bspolice.go.kr/saha/view.do?no=995>, 2023. 7. 3.

부산 사하경찰서는 본관과 3개의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지 내에는 직장어린이집도 설치되어 있다. 1별관에는 수사부서, 2별관에는 교통조사계, 3별관에는 형사부서가 근무 중에 있으며, 그 외 부서는 본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부산 사하경찰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 11-2] 부산 사하경찰서 건물 배치 현황



자료: 부산 사하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bspolice.go.kr/saha/view.do?no=997>, 2023. 7. 3.

[그림 11-3] 부산 사하경찰서 1별관 시설 현황



자료: 부산 사하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bspolice.go.kr/saha/view.do?no=997>, 2023. 7. 3.

1별관의 경우 건물 기울어짐이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신축 공사를 실시하여 2022년 11월에 완공되었다. 신축된 1별관의 시설면적은 1,384㎡이며, 총사업비는 3,292백만원이 집행되었다.

〈표 II-14〉 1별관 신축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공종	관급자재	비용	계
설계비		-	127	127
공사비	건축	576	1,417	1,993
	전기	335	179	514
	통신	45	113	158
	소방	-	99	99
	철거(폐기)	-	99	99
	제로에너지	21	-	21
	연약지반보강	-	238	238
	소 계	977	2,145	3,122
감리비		-	32	32
부대비		-	11	11
합계		977	2,315	3,292

주: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 추가 자료제출」, 2023. 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본 사업은 부산 사하경찰서의 본관 및 2개의 별관을 철거 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부산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1별관을 민원 응대를 위한 통합민원실과 민원인 휴게실, 장애인 편의시설, 수유실 등 방문객 위주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4. 관련 계획 검토

가. 사업대상 부지 관련 계획

1)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¹³⁾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18조¹⁴⁾에 의해 부산 광역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의 기준 연도는 2019년으로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분석을 통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모색과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40년을 목표로 수립했다.

부산도시계획은 핵심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재편(10-Core)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네 가지의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심지 재편은 실질적으로 다핵화된 부산의 도시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동일 위상의 10개 중심지를 설정하고 중심지별 입지적 특성에 따른 기능별 특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개별 중심지의 기능에 따라 연계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재편된 10개의 중심지는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이며,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는 하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0개 중심지별 특화전략에 따라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가 포함된 하단 지역은 덕천, 사상과 함께 신산업 혁신축으로 분류되었으며, 신교통 관련산업, 지식산업, R&D, 소재 및 부품산업 연계를 통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다. 중심지와 혁신성장축으로 집적된 지역의 특화기능과 성장동력을 주변 도시와 연계하고 발전시키는 연계거점으로는 장안, 노포, 대저, 다대, 동삼연계 거점이 제시되었으며,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에는 다대연계거점이 위치해 있다. 다대연계거점은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하여 신성장산업의 기능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지역균형발전의 실천방안으로는 ‘혁신성장축 기능특화 및 육성’, ‘수변특화 기본계획 추진’, ‘기능복합화를 통한 역세권 활성화’, ‘노후 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복합산업공간 육성’, ‘시가지 내 유희부지의 혁신거점 공간화’가 제시되었다.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에는 다대포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어 수변특화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

13)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며, 유희부지 중 하나인 구 다대 한진중공업부지가 사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11-4]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



출처: 부산광역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2023. 3., p. 75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핵심목표로는 ‘스마트 15분 도시 실현’, ‘글로벌 허브도시 완성’, ‘청년활력 미래도시 조성’, ‘탄소중립 건강도시 구현’이 제시되었다. 이 중 글로벌 허브도시 완성의 세부 계획에는 광역교통망과 신교통수단을 통한 초광역 연결사회 실현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교통체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에서는 도심항공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하단 지역에 UAM, 헬기 등의 수직 이착륙용 정거장인 버티포트를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핵심목표 중 하나인 탄소중립 건강도시 구현의 세부 계획에는 탄소중립 전환기

반 구축의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탄소 친환경연료인 암모니아 연료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강서구, 영도구, 사상구와 함께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상구가 특구에 포함되었다. 동 핵심목표의 세부 계획에는 생태친화형 녹색 치유공간 확보 계획도 제시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대상지인 사하구에 위치한 을숙도 일원이 포함된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사업대상 관련 계획

1)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계획(2014~2018년)

경찰관서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근무인원 증가 및 여성청소년과 신설 등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부족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시설환경 개선계획의 수립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 요구의 측면에서는 일선 관서의 요구를 취합하여 단년도 요구사업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목표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계획에 따르면 신축은 건물 안전도, 직제 신설, 면적 협소, 준공 후 30년 이상 등의 관서를 대상으로 하며, 신축대상 중 면적이 충분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준공 후 15년 이상 관서 중 청사 노후도,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증축 대상을 선정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준공 후 30년 이상 23개서와 준공 후 25~30년이 경과한 29개서를 대상으로 '13~'18년의 기간에 매년 10개 경찰서의 신축 계획이 수립되었다.

〈표 II-15〉 신축과 리모델링(증축 포함) 기준

- | |
|---|
| <p>-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 우선 개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은 건물 안전도, 직제 신설, 면적 협소, 30년 이상 등의 관서 ▶ 리모델링(증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대상 중 면적이 충분한 곳은 리모델링 추진 · 15년 이상 관서 중 청사 노후도, 치안 수요 등 고려하여 선정 |
|---|

출처: 경찰청,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계획(2014~2018년)』, 2013. 1., p. 3.

계획에서는 신·증축 시 적용할 기준면적의 조정(안)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참고인) 대기실과 전산자료실이 신설되었고, 수사(조사)공간도 10㎡로 조정되었다. 이외에도 사용 빈도가 많은 강당, 소회의실, 상황실, 상무관(체력단련장), 전의경 숙영시설 등을 경찰업무 특성에 맞게 기준 개선이 이루어졌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경찰시설 환경개선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고,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5개년 계획이 추가로 수립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신축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계획을 참고하여 안전도(철거 등), 노후도, 협소도 순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

의경 폐지 등 변화하는 현장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경찰관서 시설면적 기준이 2020년에 수정 및 조정되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시설면적기준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인원은 순수 지방청·경찰서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대강당, 상무관 등 전체 근무자가 사용하는 시설은 전체 정원(경찰서의 경우 지역관서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조정되었다.

〈표 II-16〉 시설 및 면적 기준 주요 변경 사항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명 미만: 350㎡ • 200~400명 미만: 400㎡ • 400~600명 미만: 45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7㎡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포함)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미만: 66㎡ • 100~200명 미만: 99㎡ •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미만: 50㎡ (20명 이상 기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관, 과별 설치 • 112상황실은 미설치
	업무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최소 기준 33㎡ 일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은 개별 검토 • 명칭 변경(도서실→업무자료실)
	진술녹화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관 10명당 1실 • 면적 축소(12㎡→11㎡)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피해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과 기준 신설(수사, 형사, 여청과, 교통과) • 과별 5명 기준

〈표 II-16〉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민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미만: 120㎡ • 100~200명 미만: 160㎡ • 200~300명 미만: 220㎡ • 300~400명 미만: 280㎡ • 4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 면적 기준 조정
	상황실 (지령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미만: 79㎡ • 100~200명 미만: 100㎡ • 200~400명 미만: 125㎡ • 400~600명 미만: 175㎡ • 600명 이상은 1명 증가마다 2.5㎡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상무관 (체력단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미만: 75㎡ • 100~200명 미만: 200㎡ • 200~400명 미만: 300㎡ • 400~600명 미만: 40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5㎡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포함)
	사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명 미만(6개 사로): 366㎡ • 200~400명 미만(8개 사로) : 464㎡ • 400~600명 미만(10개 사로) : 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포함)
	정보화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지별 기준 추가 (1급서-25명, 2급서-17명, 3급서-10명)
	편의시설	직원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정원-24인)×0.22㎡
여경, 여직원 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인 기준: 15㎡ • 5~8인 기준: 21㎡ • 9~16인 기준: 36㎡ • 17~24인 기준: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체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정원-100)×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관복보관 및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1.5㎡ • 200명 미만: 100㎡ • 200~400명 미만: 150㎡ • 400~600명 미만: 20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5㎡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제외)
종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목, 경승, 경신실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우회, 청소년육성회

〈표 II-16〉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정보통신	통신장비실	• 40㎡	• 면적 기준 조정 (장비 1조×5㎡→40㎡)
	전산장비실	• 50㎡	• 면적 기준 조정 (전산기 수×5㎡→50㎡)
저장, 보관실	피복창고	• 인원×0.17㎡	• 인원 기준 추가 (지역관서 포함)
관리시설	정문안내소	• 15㎡	• 면적 기준 조정 (근무자 수×3㎡→15㎡)
	당직실	• 1급서: 160㎡ • 2급서: 120㎡ • 3급서: 80㎡	• 면적 기준 조정 (당직자 수×3㎡→급지별 구분 지정)
	지하주차장	• 차량 수×34.3㎡	• 면적 기준 조정 (차량 수×28㎡→차량 수×34.3㎡)
	청사관리용역 사무실	• 1급서: 18㎡ • 2급서: 12㎡ • 3급서: 10㎡	• 면적 기준 조정 (용역원 수×3㎡→급지별 구분 지정)

출처: 경찰청,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 2020. 2.의 내용을 재구성

3) 경찰관서 설계기준

경찰서 청사의 시설사업 소요 제기를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업무와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시설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1년 12월에 「경찰관서 설계기준」을 발행했다. 2020년 작성된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시설이 통합·신설되었다.

〈표 II-17〉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주요 변경 사항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저장, 보관실	수사 통합증거물보관실	• 1실: 103㎡	• 시도청 개별 검토 • 영치물 압수보관실, 증거분석 보관실을 통합하여 통합증거물 보관실로 변경
	수사기록보관실	• 1만권당 99㎡ * A4 용지 400박스 분량	• 수사기록 보관실 경찰서(급지별 구분) - 1급서 104㎡ - 2급서 35㎡ - 3급서 12㎡ * 수사자료 송치실 삭제 ※ 전산조회실, 저장·보관실 항목에서 삭제 업무시설인 민원실 면적에 포함

출처: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12.의 내용을 재구성

5.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가. 사업계획 관련 쟁점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므로 세부 시설면적 검토에 앞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청사이므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시설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구득한 사하경찰서의 정원은 지역관서를 제외한 본서 288명(경찰직 273명, 일반직 15명), 지역관서를 포함한 전체 정원은 596명이다. 해당 정원을 기준으로 적정 시설규모를 검토한다. 또한, 공간별 면적 산정 시 기준에 따라 면적을 산출하되, 현장답사 당시 조사실 등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기존 면적 대비 증감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된 문제 해소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르면 도심지역에 건축하는 청사의 부설주차장 면적은 당해 청사에의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업무용 차량 보유대수, 비상근무자를 위한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2층 이내로 하고, 부설주차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 여부는 기 확보된 부지면적, 지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주차 수요 등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부설주차장 및 주차계획에 대한 검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검토는 유사경찰서의 사례와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부산경찰청은 본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의 근거를 노후도 32년과 협소율 45%로 제시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시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지 종합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하경찰서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에 해당하여 안전도 기준¹⁵⁾은 미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후화 사유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30년 이상된

15)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1. 사무용·사업용 공용재산

가. 안전도(안전성 평가결과,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의 권고내용을 감안)

청사이며, 사하경찰서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협소도의 경우 당해 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이 기준면적 대비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산경찰청은 협소도를 45%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산출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사하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문서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방문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에 질의한 결과 2006년에 경찰서별 유치장을 통합하여 현재는 6개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하경찰서의 경우 서부, 영도, 중부경찰서와 서부지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서부경찰서의 유치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II-18〉 부산경찰청 통합 유치장 운영 현황

구분		동래	부산진	서부	해운대	사상	연제
유치실 수(개)		6	8	7	10	10	9
면적(㎡)	유치장	280.0	272.2	279.3	175.2	472.6	499.6
	유치실	83.5	85.7	102.3	66.1	137.7	322.4

출처: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 제출(3차)』, 2023. 9. 18.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는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에 유치장의 신규 설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당초 유치장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상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규 설치 이후 통합 유치장 운영 계획 등의 확인을 통해 유치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비용 관련 쟁점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2조(면적·단가 기준)에 따라 시설비 산정 기준은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유형별 단위 면적(1㎡)당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제시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사비 단가는 조달청 건축유형별 단위 면적당 공사비(2023년)의 대형청사 단가 2,662백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산정내역의 구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상기 관련 지침 규정에 따라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의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2022년)」 중 본 사업과 유

사한 연면적의 경찰서 6개의 평균단가를 바탕으로 기본공사비 단가를 책정하고자 한다. 이때 기본공사비 단가 내 세부항목(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제로에너지빌딩 공사비, 철거비 등)을 검토하여 중복 산정을 방지한다. 또한, 대상지는 매립에 의한 연약지반으로 침하 방지를 위한 공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1-5] 연약지반에 따른 건물 침하(부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22)년 제12조2항 및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2011년)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0년부터 1천㎡ 이상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빌딩 공사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증축하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비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는 이와 같은 비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본 검토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 정책성 분석 관련 쟁점

정책성 분석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를 검토하고,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성 분석을 크게 내부 여건과 외부 여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내

부 여건은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을 사업 계획 과정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의 정책과는 일치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외부 여건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각 주체별 사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사업 추진에 따라 긍·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그 유무와 정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Ⅲ.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의 검토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행된다.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적절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본 절에서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의 사업 신축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업 수행주체인 경찰청(부산경찰청)은 본 사업의 목적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대체할 신규 청사 건립으로 근무환경개선 및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현 청사는 1989년 준공되어 34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며, '22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안에서는 협소도를 45%로 제시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시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고, 기타 협소와 노후화 등의 사유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시행 2022. 12. 31.] [기획재정부지침 제371호, 2022. 12. 31., 전부개정]
제16조(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①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1. 사무용 사업용 공용재산
가. 안전도(안전성 평가결과,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의 권고내용을 감안)
나. 기타사유
(1) 철거대상: 도시계획, 도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철거(지자체가 주민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청사이전을 요청할 경우 신축 타당성 우선 고려)
(2) 택지개발지구 편입: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취득
(3) 협소: 당해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단위건물내의 순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준용) 보다 60% 이하인 경우
(4) 직제 제·개정: 직제 제·개정에 따른 신규 청사 소요 발생
(5) 노후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30년 이상된 청사
(6) 임차청사 매입전환: 연간 임차비 수준이 매입비의 10% 이상인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의하면 협소 사유는 당해 건물의 1인당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의 순 사무실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보다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침에 따른 협소도 재산정을 위한 당해 건물과 기준면적의 1인당 사무실 면적 산정 결과, 당해 건물은 16.0㎡/명, 기준면적은 9.9㎡/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협소도는 161%로 나타났다.

〈표 Ⅲ-1〉 1인당 사무실 면적 산정

구분	순 사무실 면적(㎡)	정원(명)	1인당 사무실 면적(㎡/명)
당해 건물(現 사하경찰서)	4,620	288	16.0
기준면적(사업계획안)	2,854	288	9.9

자료: 『부산경찰청 1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2023. 7.)

〈표 Ⅲ-2〉 협소도 산정

구분	당해건물(㎡/명)	기준면적(㎡/명)	협소도(%)
협소도	16.0	9.9	161

자료: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2022. 12. 31.)

검토 결과 안전진단 C등급 및 협소도 161%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서 제시한 기금운영계획안 반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사하경찰서가 위치한 부지는 매립지 및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경찰서 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수 및 벽체 균열 등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시설 노후도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Ⅲ-3〉 누수 및 벽체 균열 등 개보수 비용 현황

구분	소계(원)	공사비(원)	시설장비유지비(원)
2018년	40,447,450	13,604,950	26,842,500
2019년	356,937,980	348,293,710	8,644,270
2020년	55,608,000	47,631,000	7,977,000
2021년	159,328,100	150,810,650	8,517,450
2022년	93,618,610	64,091,440	29,527,170

자료: 『부산경찰청 1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2023. 7.)

또한, 경찰서 방문 민원인은 일평균 약 300명 수준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며, 피의자 및 피해자 대기 공간 부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34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과 매립지 및 연약지반에 의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부지의 적절성 검토

본 사업부지는 기존 부산 사하경찰서 부지에 사하경찰서를 신축(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부지는 국유지에 해당하므로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취지를 고려하여 부지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부지 위치의 적절성 검토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의 대상지는 신평동 56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하우체국과 지하철(장림역) 간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국유지 1필지로 현재 부산 사하경찰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과 서측에 도로가 면하고 있고 500m 내에 장림역이 위치하며, 2023년 2월 장평지하차도 개통으로 내·외부 순환 및 교통정체 해소로 인한 교통을 이용한 민원인 접근과 긴급 관용차량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부산 사하경찰서 위치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1] 사업부지 위치



출처: 연구진 작성

사업대상부지(신평동 569-1번지)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부지계획 및 주변현황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부지는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에 적정한 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2] 사업부지 세부사항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III-3] 사업위치 현장사진



자료: 연구진 작성

나. 부지 면적의 적절성 검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1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의 부지규모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 제91조(건축규모 등)** ① 청사 등 업무용 공공건축물의 건축규모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유사시설의 건축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② 건축사업의 부지규모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용적률·건폐율, 건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한다.
- ③ 건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국유지의 활용, 저활용되고 있는 기존 청사(법적용적률의 50%미만 건축물)와의 공동·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해당 지역의 국유지 및 기존 청사 현황을 첨부하여 예산안 또는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 신축에 있어서 사업규모(부지 포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69-1번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참고하여 건폐율 70%, 용적률 400% 이하로 제시되어 있다.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17.][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p> <p>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p> <p>1. 도시지역</p> <p>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p> <p>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p> <p>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p> <p>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p> <p>제77조(용도지역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4.14., 2013.7.16., 2021.1.12.></p> <p>1. 도시지역</p> <p>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p> <p>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p> <p>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p> <p>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p>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연면적은 13,732.94㎡(지하 1층~지상 6층)으로 계획되었지만, 건축면적과 시설배치계획 등의 배치 및 평면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하경찰서 신축사업과 조건이 유사한 경찰서 6개 사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과 조건이 유사한 경찰서 6개 사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면, 평균 건축면적 2,593.03㎡와 평균 연면적 13,058.73㎡이며, 평균 건폐율 26.30%, 평균 용적률 89.70%로 산정되었다.

〈표 III-4〉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의 산출 사례

구분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대구달성경찰서	5,480.79	1,969.04	13,333.70	35.93	144.46
강릉경찰서	15,253.00	2,914.89	14,430.89	19.11	68.46
인천남동경찰서	11,387.00	2,669.00	16,047.00	23.44	84.68
서울방배경찰서	5,368.00	1,958.18	13,663.77	36.48	125.48
수원팔달경찰서	15,052.00	3,409.13	10,521.02	22.59	50.45
여주경찰서	13,027.90	2,637.92	10,356.01	20.25	64.69
평균	10,928.12	2,593.03	13,058.73	26.30	89.70

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_2022년 경찰서 신축공사』, (<https://www.pcae.g2b.go.kr>)

다만, 본 사업은 2022년 완공된 1별관동의 존치를 통해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건물과 함께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면적에 1별관동 면적을 포함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I-5〉 1별관동(존치 예정) 규모

구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1별관동	323.38	1,384.00

자료: 『부산경찰청 2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2023. 8.)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연면적은 13,732.94m²로, 1별관동 연면적을 합산하면 15,116.94m²가 산정된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층수(6층)를 기준으로 13,732.94m²에 대한 건축면적을 산정한 결과, 2,288.82m²가 산정되며 1별관동의 건축면적을 합산하면 2,612.20m²가 산정된다.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대지면적은 9,596.80m²로, 유사 경찰서 신축공사 사례(2022년)의 평균 대지면적 10,928.12m²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1별관동 연면적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연면적 15,116.94m²를 토대로 추정된 용적률은 157.52%로 예상되어 유사사례 평균 용적률 대비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준공업지역 법정용적률 기준 내에 해당되는 범위이다. 또한 앞서 산정된 건축면적 2,612.20m²를 토대로 추정된 건폐율은 27.22%로 예상되어, 유사사례 평균 건폐율과 비교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시설규모는 사업부지 대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6〉 부지면적의 적절성 검토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평균	10,928.12	2,593.03	13,058.73	26.30	89.70
사업계획	9,596.80	2,612.20	15,116.94	27.22	157.52

주: 사업계획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1별관동의 면적을 합산한 값임

3.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가. 사업계획안의 시설계획

1) 사업계획안의 사업개요

본 사업의 사업계획안은 대지면적 9,596㎡, 연면적 13,732.94㎡, 지하1층~지상6층으로 계획되어있으며, 사업규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폐율 70%, 용적률 400% 이하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III-7〉 사업계획안의 사업개요

구분	사업계획안
사업위치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신평동 569-1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사업기간	2024~2029년
건축규모	지하 1층~지상 6층
대지면적	9,596㎡
연 면 적	13,732.94㎡
총사업비	42,005백만원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건물용도	공공청사(경찰서)
주차계획	지하 86대

자료: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변경) 계획안 작성(부산 사하경찰서),(2023. 11. 3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세부 시설구성

사업계획안의 시설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13,732.94㎡이며, 세부 시설구성은 다음 <표 III-8>과 같다.

<표 III-8>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안의 세부 시설구성

용도별	시설명	실명	소요 면적(㎡)
업무 시설	1. 회의실	대강당	450.00
		대회의실	123.00
		소회의실	237.60
		업무자료실	33.00
		소계(회의실)	843.60
	2. 순 사무실	서장실	80.0
		과장실	330.0
		행정업무부서	819.00
		수사·조사부서	1,590.00
		과학수사팀	35.00
		소계(순 사무실)	2,854.00
	3. 특수시설	진술녹화실	153.00
		진술녹화모니터실	140.00
		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대기실	90.00
		민원실	220.00
		유치장	384.00
		상황실(지령실)	125.00
		상무관	100.00
		사격장	570.00
		정보화교육장	75.00
소계(특수시설)		1,857.00	
소계		5,554.60	
편의 시설	1. 직원휴게실	-	
	2. 여경, 여직원 휴게실	-	
	3. 체육실	105.08	
	4. 관복보관 및 탈의실	158.40	

〈표 Ⅲ-8〉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실명	소요 면적(㎡)	
	5. 목욕실(남, 여)		-	
	6. 종교단체		120.00	
	7. 협의회		33.00	
	소계		416.48	
정보 통신	1. 정보통신실		40.00	
	2. 전산장비실		50.00	
	3. 보안실		33.00	
	소계		123.00	
저장 시설	1. 문서고		149.78	
	2. 비품창고		149.78	
	3. 소모품창고		149.78	
	4. 피복창고		51.30	
	5. 수사+ 과학수사	통합증거물 보관실		37.00
		수사자료(송치)실		104.00
		소계(수사+과학수사)		141.00
	6. 경무	문서보관실		28.00
		지출서류 보관실		32.00
		물품보관실		-
		소계(경무)		60.00
	7. 생활안전	즉결유실물보관실		15.00
		압수물보관실		52.00
		자료, 장비보관실		60.00
		소계(생활안전)		127.00
	8. 정보기록보관실		74.00	
	9. 경비 장비, 물품보관실		145.00	
	10. 무기·탄약	무기고		60.00
		탄약고		20.00
		민간소유 총포실		30.00
화학보관실			30.00	
소계(무기·탄약)		140.00		
소계		1,187.64		

〈표 Ⅲ-8〉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실명	소요 면적(㎡)
관리 시설	1. 정문안내소		15.00
	2. 당직실		160.00
	3. 청소관리용역사무실		18.00
	소계		193.00
보조 시설	1. 식당		310.00
	소계		310.00
① 전용면적 계			7,784.72
공용 시설	기계실·전기실·발전기 등		663.00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2,335.42
	지하주차장		2,949.80
② 공용면적 계			5,948.22
합계(①+②)			13,732.94

자료: 경찰청, 「청사시설 기준면적 재산출(부산 사하경찰서)」, 2023. 1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나. 세부 시설규모의 검토 기준

경찰청(경찰관서)은 ‘형 집행시설’로 분류,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1항 [별표]에 따라 청사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경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별도의 면적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검토는 부산 사하경찰서의 적정 시설규모 산정을 위하여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신한 직급별·부서별 정원 현황자료를 토대로 주무부처가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년)」(2013) 및 「경찰관서(지방청, 경찰서) 시설 면적 기준 개선」(2020)을 바탕으로 경찰청 재정담당관실이 배포한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 근거하여 세부 시설규모를 검토하였다.

1)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

본 검토에서는 경찰청에서 수립한 경찰관서 청사시설 면적기준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인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을 우선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계획(2014~2018년)」(2013) 및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 시설 및 면적 기준」(2020)도 참고하여 적정 면적을 산출하고자 한다.

경찰청에서 정한 경찰관서의 직급별 면적 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II-9〉 경찰관서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계급별	구분	면적(㎡)	비고
치안총감	• 청장실	165	집무실·부속실
치안정감(치안감)	• 청의 차장실	105	집무실·부속실
	• 시도청장실	120	집무실·부속실
	• 기관장실	105	집무실·부속실
치안감	• 국장실	85	집무실·부속실
	• 시도청의 차장실	85	집무실·부속실
경무관	• 기관장실	82	집무실·부속실
	• 국장실, 관리관실	82	집무실·부속실
	• 시도청의 차장·부장실	82	집무실·부속실
총경	• 경찰서장실	80	집무실·부속실
	• 특수기관장실	66	집무실·부속실
	• 과장실	44	집무실
경정	• 특수기관장실	30	집무실
	• 과장실	30	집무실
경감	• 지구대장·파출소장실	20	집무실
	• 특수기관장실	20	집무실
	• 일반직원	7	집무면적
경위급 이하	• 파출소장실	20	집무면적
	• 일반직원	7	집무면적

자료: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12.에서 재인용

경찰청에서 정한 세부시설별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관리 용도 내 기계실의 경우 본 기준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경찰관 기동대 및 경찰특공대 면적 산정 시 경찰시설기준(설비공학 편람)¹⁶⁾을 적용하므로, 본 검토에서도 기계실 면적 산정 시 경찰시설기준(설비공학 편람)을 적용하여 규모를 검토하였다.

16) 경찰시설 기준(설비공학 편람)

· 전용연면적: 기준면적

- 1,000㎡ 이하: 70㎡, 2,000㎡ 이하: 200㎡, 3,000㎡ 이하: 290㎡, 5,000㎡ 이하: 290㎡, 10,000㎡ 이하: 450㎡, 15,000㎡ 이하: 600㎡, 20,000㎡ 이하: 770㎡

〈표 III-10〉 경찰관서 설계기준 실면적 세부 산출내역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회의실)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명 미만: 350㎡ • 200~400명 미만: 400㎡ • 400~600명 미만: 45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7㎡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시설 표준화기준 • 시도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00명 미만: 66㎡ • 100~200명 미만: 99㎡ • 2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3㎡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시설기준(법무부)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명 미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시설 표준화기준 • 국, 관, 과별 설치 ※ 112상황실은 미설치
	업무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고: 장서 수/200 • 열람실: 서고×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최소 기준 33㎡(10평) 일괄 적용
업무시설 (수사, 형사, 생활안전, 여청, 외사, 교통, 경무, 청문감사, 정보, 보안, 경비)	행정, 관리업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자 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근무자 적용
	수사, 조사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자 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조사 부서 근무자 적용 ※ 순수 수사업무 담당자만 해당, 수사지원팀 등 행정업무 수행 근무자는 7㎡ 적용
	과학수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자 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수사팀 근무자 적용 ※ 광역과학수사팀 운영, 경찰서만 적용
	진술녹화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기준 ※ 경찰청 내부 지침(2015년) • 수사관 10명당 1실 ※ 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수사, 청문 근무자 해당
	진술녹화 모니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기준 ※ 경찰청 내부 지침(2015년) • 수사관 10명당 1실
	거짓말 탐지 검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만 해당
	거짓말 탐지 관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만 해당
	사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부서 근무 인원에 편입
	디지털 증거분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관 수×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만 해당 ※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 표준설계(2018년)
	피의자(피해자) 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피해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 수사인력에 따라 검토 • 경찰서 수사(경제·지능), 형사(강력·당직), 여청과, 교통과 등 6개 부서 ※ 수사, 형사과는 업무특성상 별도 구분 필요

〈표 III-10〉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업무시설 (청문감사)	민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미만: 120㎡ • 100~200명 미만: 160㎡ • 200~300명 미만: 220㎡ • 300~400명 미만: 280㎡ • 4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종합전산조회실, 수사상담센터, 인권상담센터, 다목적상담 부수 면적 민원실에 추가
업무시설 (유치장)	일반유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평균 수용인원 8명 이하 • 최다수용인원 12명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 고려 개별 검토 적용 ※ 경찰청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시범운영 확대 및 인력재배치 계획'에 의거 현재 일시 사용하지 않는 유치장은 일반유치장 적용
	광역유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평균 수용인원 16명 이하 • 최다수용인원 27명 이하 	
	초광역유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평균 수용인원 28명 이하 • 최다수용인원 43명 이하 	
업무시설 (경비)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미만: 79㎡ • 100~200명 미만: 100㎡ • 200~400명 미만: 125㎡ • 400~600명 미만: 175㎡ • 600명 이상은 1명 증가마다 2.5㎡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업무시설 (생활안전)	112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 :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만 해당
업무시설 (경무)	상무관 (체력단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명 미만: 75㎡ • 100~200명 미만: 200㎡ • 200~400명 미만: 300㎡ • 400~600명 미만: 40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5㎡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사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명 미만(6개 사로): 366㎡ • 200~400명 미만(8개 사로): 464㎡ • 400~600명 미만(10개 사로): 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정보화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원×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서 교육인원 25명 - 2급서 교육인원 17명 - 3급서 교육인원 10명
편의시설	직원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정원-24인)×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여경, 여직원 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인 기준 15㎡ • 5~8인 기준 21㎡ • 9~16인 기준 36㎡ • 17~24인 기준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여)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체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정원-100)×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표 III-10〉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관복보관 및 탈의실	• 직원 수×0.55㎡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목욕실(남, 여)	• 인원×1.5㎡ • 200명 미만: 100㎡ • 200~400명 미만: 150㎡ • 400~600명 미만: 20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2.5㎡ 가산	• 시도청·경찰서 순수 근무자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제외
	종교단체	• 종교단체: 1실 40㎡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공통 적용(급지 구분 없음) ※ 종교단체 : 경목, 경승, 경신실(3개소)
	협의회	• 협의회: 1실 33㎡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공통 적용(급지 구분 없음) ※ 협의회 : 경우회, 청소년육성회(2개소)
정보통신	통신장비실	• 장비 1조×5㎡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공통 적용 (급지 구분 없이 40㎡ 적용)
	전산장비실	• 전산기 수×5㎡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공통 적용 (급지 구분 없이 50㎡ 적용)
	전산실 및 전산자료실	• 전산기 수×5㎡	• 시도청 적용
	교환실	• 미적용	• 미운영 시설로 제외
	보안실	• 1실: 33㎡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공통 적용(1실 33㎡)
저장, 보관실	문서고	• 순 사무실 면적×7%	• 청사시설 기준(행안부)
	비품창고	• 순 사무실 면적×7%	-
	소모품창고	• 순 사무실 면적×7%	-
	피복창고	• 직원 수×0.17㎡	• 시도청·경찰서 전체 정원 적용 ※ 경찰서는 지역관서 포함
	통합증거물 보관실	• 1실: 103㎡	• 지방청 개별검토 • 영치물 압수보관실, 증거분석 보관실을 통합하여 통합증거물 보관실로 변경
수사	수사기록 보관실	• 1만권당 99㎡	• 수사기록 보관실 경찰서(급지별 구분) - 1급서 104㎡ - 2급서 35㎡ - 3급서 12㎡ • 수사자료 송치실 삭제 ※ 전산조회실, 저장·보관실 항목에서 삭제 업무시설인 민원실 면적에 포함

〈표 III-10〉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경무	문서 보관실	• 1실: 28㎡	-
		지출서류 보관실	• 1실: 32㎡	-
		물품 보관실	• 1실: 60㎡	-
	생활 안전	즉결유실물 보관실	• 1실: 15㎡	• 시도청, 경찰서 평균
		압수물 보관실	• 1실: 52㎡	
		자료 및 장비보관실	• 1실: 60㎡	
	정보	정보기록 보관실	• 1실: 74㎡	• 시도청, 경찰서 평균
	경비	장비 및 물품보관실	• 1실: 145㎡	• 피복보관실 포함
	무기 탄약	무기고	• 200명 미만: 40㎡ • 200~400명 미만: 50㎡ • 400~600명 미만: 60㎡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0.5㎡ 가산	• 시도청, 경찰서 평균
		탄약고	• 1실: 20㎡	
민간소유총 포보관실		• 1실: 30㎡		
화학 보관실		• 1실: 30㎡		
관리시설	정문안내소	• 15㎡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공통 적용(급지 구분 없음)	
	당직실	• 지방청(당직자 수×10㎡) • 경찰서(급지별 구분) - 1급서: 160㎡ - 2급서: 120㎡ - 3급서: 80㎡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급지별 구분	
	차고	• 미적용	•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	
	지하주차장	• 차량 수×34.3㎡	• 램프 및 통로면적 포함하여 34.3㎡로 조정	
	운전원대기실	• 미적용	• 미운영 시설로 제외	
	청사관리응역 사무실	• 지방청(응역원 수×3㎡) • 경찰서(급지별 구분) - 1급서: 18㎡ - 2급서: 12㎡ - 3급서: 10㎡	• 시도청 개별 검토 • 경찰서 급지별 구분	

〈표 III-10〉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기준	비고
부대시설 (식당)	식당	• 직원 수×1/2×1.5㎡	• 청사시설 기준(행안부)
	주방면적	• 식당면적×1/3	• 법무시설기준(법무부)
	주식창고	• 식당면적×35%	-
	부식창고	• 식당면적×25%	-
	조리원사워킹	• 인원×1.7㎡(탈의실 포함)	-
	조리원휴게실	• 인원×3.3㎡	-
		• 200명 미만: 250㎡ • 200~400명 미만: 310㎡ • 400~600명 미만: 575㎡ • 60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13㎡ 가산	• 시도청, 경찰서 평균 • 주방, 창고, 매점 포함
시설관리	전기실	• 전용연면적: 기준면적 - 1,000㎡ 이하: 40㎡ - 2,000㎡ 이하: 65㎡ - 3,000㎡ 이하: 87㎡ - 4,000㎡ 이하: 106㎡ - 5,000㎡ 이하: 124㎡ - 10,000㎡ 이하: 175㎡ - 20,000㎡ 이하: 280㎡ - 30,000㎡ 이하: 380㎡	• 경찰시설 기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법무시설 기준)
	발전기	• 전용연면적: 기준면적 - 2,500㎡ 이하: 19㎡ - 5,000㎡ 이하: 24㎡ - 10,000㎡ 이하: 38㎡ - 15,000㎡ 이하: 54㎡ - 30,000㎡ 이하: 70㎡	• 경찰시설 기준 (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법무시설 기준)
기타시설	공유면적	• 산출면적의 30% 추가 (복도, 계단, 화장실, 공조실 등)	• 「건축계획 각론」

자료: 경찰청,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12.

다. 경찰서 인원 기준(정원)

본 사업은 기존 사하경찰서를 신축(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출된 사하경찰서 부서별 정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1〉 사하경찰서 부서별 정원(일반·수사부서)

청문감사 인권관실	112 치안 상황실	경무과	공공 안녕 정보과	안보과	수사 심사과	수사과	형사과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경비 교통과	합계
8	17	21	17	9	3	53	52	14	38	56	288

자료: 『부산경찰청 제출자료』(2023. 8.)

부산경찰청에서 제출한 부산 사하경찰서의 정원은 일반직 15명, 경찰직 273명으로, 총 288명으로 검토되었다.

〈표 Ⅲ-12〉 사하경찰서 직무별 인원 현황

경찰직	일반직	합계
273	15	288

자료: 『부산경찰청 제출자료』(2023. 8.)

부산 사하경찰서의 정원은 본서 288명, 지역관서(4지구대, 2파출소, 10치안센터 및 방범순찰대) 308명으로, 총 596명으로 제시하였다.

〈표 Ⅲ-13〉 부산 사하경찰서 직급별 인원 구성

구분	기본 정원									유동 정원					계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일반	소계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본서	271	1	11	38	28	55	94	29	15	17	2	5	8	2	288
지역관서	298	-	1	5	27	46	83	136	-	10	5	1	2	2	308
계	569	1	12	43	55	101	177	165	15	27	7	6	10	4	596

자료: 『부산경찰청 제출자료』(2023. 8.)

부산경찰청에서 제출한 본서의 정원 288명은 서장 1명, 과장 11명, 행정업무 인원 117명, 수사업무 인원 15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Ⅲ-14〉 사하경찰서 직무별 인원 현황

구분	인원	비고
서장(총경)	1	서장 수
과장(경정)	11	과장 수
행정업무 인원	117	순수 행정업무 근무자 포함(서장, 과장 인원 제외)
수사업무 인원	159	순수 수사업무 근무자 포함(형사, 수사지원팀 등은 행정업무에 포함)
계	288	-

자료: 부산경찰청 제출자료(2023. 8.)

라. 대안 설정

본 검토에서는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으로 구분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사업계획안’은 사업수행주체가 요구한 안이며, ‘대안’은 주무부처가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한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년)」(2013) 및 「경찰관서(지방청, 경찰서) 시설면적 기준 개선」(2020)을 바탕으로 경찰청 재정담당관실이 배포한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 근거하여 적정 시설 규모로 재조정하고 적정 단위 단가 및 사업비를 적용하여 규모와 비용을 재추정한 안이다.

사업계획에서는 유치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사하경찰서는 서부, 영도, 중부경찰서와 서부지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서부경찰서의 통합 유치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에 사하경찰서 신축 후 통합 유치장 이용계획 등을 요구했으나, 충분한 답변이 제출되지 않아 유치장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안’에서는 유치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안’은 주무부처가 요구한 시설면적에 대하여 적정 단위 단가 및 사업비를 적용하여 비용을 재추정한 안이다.

〈표 III-15〉 대안의 설정

구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시설면적 산정기준	• 요구면적	-	• 경찰관서 설계기준 등(면적 산출 기준) • 유치장 미설치
사업비	• 요구사업비	• 요구면적에 대한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재산출	• 면적 재산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재산출

부산 사하경찰서는 1개의 본관과 3개의 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1별관동은 '22년 10월에 신축을 완료하여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 중에 있다. 사업계획서는 1별관동에서 사용 중인 시설을 제외한 시설 면적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존치 예정인 1별관동의 현재 이용 중인 시설을 고려한 중복성 검토를 하고자 한다. 1별관동에서 현재 이용 중인 시설은 다음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1별관동 이용시설 현황

용도별	시설명	1별관동 현재시설		신축 후 이용 예정 시설	
		소요 면적 (㎡)	산출 근거	소요 면적 (㎡)	산출 근거
업무시설 (순 사무실)	• 형사과(순 사무실)	252	-	252	-
	• 과학수사팀	70	-	70	-
	• 물품보관실	60	• 1실 × 60㎡	60	• 1실 × 60㎡
	• 증거분석실	66	• 1실 × 66㎡	66	• 1실 × 66㎡
	• 진술녹화실	22	• 1실 × 12㎡ • 모니터실 1실 × 10㎡	22	• 1실 × 12㎡ • 모니터실 1실 × 10㎡
	• 수사자료 송치실	34	• 1실 × 34㎡	34	• 1실 × 34㎡
	• 상무관	300	• 200~400명: 300㎡	300	• 200~400명: 300㎡
	• 협의회(모범운전자실)	33	• 1실 × 33㎡	33	• 1실 × 33㎡
	소 계	585	-	585	-
편의시설	• 목욕실	150	• 200~400명: 150㎡	150	• 200~400명: 150㎡
	• 여직원 휴게실	54	• 17~24명: 54㎡	54	• 17~24명: 54㎡
	• 직원휴게실	75	• 1실 × 75㎡	75	• 1실 × 75㎡
	소 계	279	-	279	-

〈표 III-16〉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1별관동 현재시설		신축 후 이용 예정 시설	
		소요 면적 (㎡)	산출 근거	소요 면적 (㎡)	산출 근거
저장시설	· 비품창고	50	· 순 사무실 7%, 2,650㎡/3	200	통합민원실로 활용
	· 소모품창고	50	· 순 사무실 7%, 2,650㎡/3		
	· 피복창고	50	· 순 사무실 7%, 2,650㎡/3		
	· 문서고	50	· 순 사무실 7%, 2,650㎡/3		
	소 계	200	-		
전용면적 계		1,064	-	1,064	-
공용면적 계		320	· 전용면적 × 30%	320	· 전용면적 × 30%
합 계		1,384	-	1,384	-

자료: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 제출(2차)」, 2023. 8. 1.

마. 세부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연면적은 13,732.94㎡이며, 제시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사업계획서의 시설 규모는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을 활용하여 검토하며, 재산출한 면적은 대안으로 설정하여 사업계획서와 비교하고자 한다.

세부시설별 면적 검토는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 따라 편의상 업무시설, 편의시설, 정보통신, 저장보관실, 관리시설,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전용면적을 산정하고 시설관리(기계실, 전기실, 발전기), 기타시설(복도, 계단, 화장실, 공조실 등) 등 공용면적과 합산하여 전체 시설의 연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1) 시설면적 검토

가) 업무시설

업무시설의 경우 제시된 경찰서 정원을 기준으로 순 사무실과 순 사무실 외 업무시설로 분류하였다. ‘대안’의 순 사무실 재산출 근거 기준은 경찰청 재정담당관실에서 배포한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의 ‘경찰관서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외 시설(진술녹화실, 진술녹화모니터실 등) 또한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의 실면적

세부 산출내역을 준용하였다. 행정 및 수사·조사 인원을 토대로 시설면적 기준에 근거하여 도출한 대안의 순 사무실 면적은 사업계획안과 동일한 2,854㎡로 산정되었다.

순 사무실 외 업무시설은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 계획안과 동일한 규모로 산정되었다. 하지만 유치장의 경우 현재 사하경찰서는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문서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부, 영도, 중부경찰서와 서부지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서부경찰서의 통합유치장¹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수행주체인 부산경찰청은 전시상황 또는 집회시위 등 다중의 체포 피의자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구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지만, 현재의 유치장의 낮은 활용도와 서부경찰서의 통합 유치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치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에서는 유치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표 III-17〉 2022년 통합 유치장 수용 현황

(단위: 명)

구분	동래	부산진	서부	해운대	사상	연제	평균
유치인 수	1,368	2,436	1,258	2,163	1,681	2,798	1,951

자료: 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 보완자료 제출(3차)」, 2023. 9.

검토 결과 업무시설의 대안은 사업계획안 대비 384㎡가 감소한 5,170.60㎡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의 업무시설이 감소한 이유는 유치장 설치 제외로 인한 면적 감소로 판단된다.

〈표 III-18〉 업무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업무 시설	순 사 무 실	서장실	80.00	1	총경(경찰서장실): 80㎡	80.00	-
		과장실	330.00	11	경정(과장실): 30㎡	330.00	-
		행정업무부서	819.00	117	근무자 수×7㎡	819.00	-

17) 2005년 이전에는 법률에 따라 각 관할 경찰관서마다 유치장을 설치 및 운영하였으나 치안 환경 변화 대응 및 인력·예산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서별 유치장 수요, 관할지점 및 관서 간 거리, 유치장 수용가능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05년 이후 광역유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III-18〉의 계속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수사·조사부서	1,590.00	159	근무자 수×10㎡	1,590.00	-	
	과학수사실	35.00	15	근무자 수×7㎡ ※ 1별관동 과학수사실: 70㎡ → 15㎡×7-70㎡=35㎡	35.00	-	
	소계	2,854.00	303	본서 288명+과학수사팀 15명 추가	2,854.00	-	
	순사 무실 외	대강당	450.00	596	400~600명 미만: 450㎡	450.00	-
		대회의실	123.00	288	100~200명 미만: 99㎡, 10명 증가마다 3㎡ 가산 → 99㎡+3×8=123㎡	123.00	-
		소회의실	237.60	288	20명미만: 50㎡, 1명 증가마다 0.7㎡ 가산 → 50㎡+0.7×(288-20)=237.6㎡	237.60	-
		업무자료실	33.00	1	경찰서 최소 기준 33㎡(10평) 일괄 적용	33.00	-
		진술녹화실	153.00	159	1실: 11㎡, 수사관 10명당 1실 ※ 1별관동 진술녹화실: 12㎡ → 11㎡×15-12㎡=153㎡	153.00	-
		진술녹화 모니터실	140.00	159	1실: 10㎡, 수사관 10명당 1실 ※ 1별관동 진술녹화모니터실: 10㎡ → 10㎡×15-10㎡=140㎡	140.00	-
		피의자(피해자), 참고인 대기실	90.00	6	과별 5명 기준 피의자(피해자)×3㎡	90.00	-
		민원실	220.00	288	200~300명 미만: 220㎡	220.00	-
		유치장	384.00	1	일반유치장 : 384㎡	-	-384.00
		상황실(지령실)	125.00	288	200~400명 미만: 125㎡	125.00	-
		상무관	100.00	596	400~600명 미만: 400㎡ ※ 1별관동 상무관: 300㎡ → 400㎡-300㎡=100㎡	100.00	-
		사격장	570.00	596	400~600명 미만(10개 사로): 570㎡	570.00	-
		정보화 교육장	75.00	25	지방청(교육인원×3.0㎡) → 3.0㎡×25=75	75.00	-
	소계	2,700.60	-	-	2,316.60	-384.00	
	계(업무시설)	5,554.60	-	-	5,170.60	-384.00	

나) 편의시설

편의시설 면적은 주무부처가 제출한 경찰서 정원을 토대로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의 시설면적 기준에 근거하여, 존치 예정인 1별관동에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통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다.

1별관동에서 현재 사용 중인 시설(직원휴게실, 여경 및 여직원 휴게실, 목욕실, 협의회)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 결과, 편의시설의 규모는 416.48㎡로 사업계획안과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다만, 현재 1별관동 직원휴게실의 규모는 75㎡이며, 기준에 따른 면적 산정 시 기준 면적은 67.98㎡로 기준면적을 7.02㎡ 초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별관동의 직원휴게실을 감축하거나 재구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는 제외하였다.

〈표 Ⅲ-19〉 편의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편의 시설	직원휴게실	-	288	9.9㎡+(정원-24인)×0.22㎡ ※ 1별관동 직원휴게실: 75㎡ → 9.9㎡+(288-24인)×0.22㎡-75㎡= -7.02㎡	-	-
	여경, 여직원 휴게실	-	58	17~24인 기준: 54㎡ ※ 1별관동 여경, 여직원 휴게실: 54㎡ → 54㎡-54㎡=0㎡	-	-
	체육실	105.08	288	75㎡+(정원-100)×0.16㎡=105.08㎡ → 75㎡(288-100)×0.16㎡=105.08㎡	105.08	-
	관복보관 및 탈의실	158.40	288	직원 수×0.55㎡ → 288×0.55㎡=158.40㎡	158.40	-
	목욕실(남, 녀)	-	288	200~400명 미만: 150㎡ ※ 1별관동 목욕실: 150㎡ → 150㎡-150㎡=0㎡	-	-
	종교단체	120.00	3	1실: 40㎡ → 종교단체: 경목, 경승, 경신실(3개소) 40㎡×3개소=120㎡	120.00	-
	협의회	33.00	2	1실: 33㎡ → 협의회: 경우회, 청소년육성회(2개소) ※ 1별관동 협의회: 33㎡ → 33㎡×2개소-33㎡=33㎡	33.00	-
계(편의시설)		416.48	-	-	416.48	-

다) 정보통신시설

정보통신시설 면적은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의 시설면적 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123㎡로 사업계획안과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표 III-20〉 정보통신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정보 통신 시설	정보통신실	40.00	8	장비 1조×5㎡	40.00	-
	전산장비실	50.00	10	전산기 수×5㎡	50.00	-
	보안실	33.00	1	1실: 33㎡	33.00	-
계(정보통신시설)		123.00	-	-	123.00	-

라) 저장보관시설

저장보관시설은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 따라 적정 시설면적을 산정하였다. 검토 결과, 사업계획안 대비 34㎡ 감소한 1,153.64㎡로 산출되었다.

대안의 저장보관시설 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 따르면 수사자료 송치실은 수사기록보관실로 신설되어 1급지는 104㎡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1별관동에 수사자료 송치실이 34㎡ 규모로 조성된 점을 감안하여 중복시설에 대한 면적 규모를 제외한 결과 34㎡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21〉 저장보관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	증감 (B-A) (㎡)	
저장 보관 시설	문서고	149.78	7%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동 문서고: 50㎡ → 2,854㎡×7%-50㎡=149.78㎡	149.78	-	
	비품창고	149.78	7%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동 비품창고: 50㎡ → 2,854㎡×7%-50㎡=149.78㎡	149.78	-	
	소모품창고	149.78	7%	순 사무실 면적×7% ※ 1별관동 소모품창고: 50㎡ → 2,854㎡×7%-50㎡=149.78㎡	149.78	-	
	피복창고	51.30	596	직원 수×0.17㎡ ※ 1별관동 피복창고: 50㎡ → 596인×0.17㎡-50㎡=51.30㎡	51.30	-	
	수사 + 과학 수사	통합증거물 보관실	37.00	1	1실: 103㎡ ※ 1별관동 증거분석실: 66㎡ → 103㎡-66㎡=37㎡ * 영치물 압수보관실, 증거분석 보관실을 통합하여 통합증거물 보관실로 변경	37.00	-
		수사자료 (송치)실	104.00	1	1급서: 104㎡ ※ 1별관동 수사자료 송치실: 34㎡ → 104㎡-34㎡=70㎡ ※ 수사자료 송치실 삭제 및 수사기록보관실 신설	70.00	-34.00
		소계	141.00	-	-	107.00	-34.00
	경우	문서보관실	28.00	1	1실: 28㎡	28.00	-
		지출서류 보관실	32.00	1	1실: 32㎡	32.00	-
		물품보관실	-	1	1실: 60㎡ ※ 1별관동 물품보관실 : 60㎡ → 60㎡-60㎡=0㎡	-	-
		소계	60.00	-	-	60.00	-
	생활 안전	즉결유실물 보관실	15.00	1	1실: 15㎡	15.00	-
		압수물 보관실	52.00	1	1실: 52㎡	52.00	-
		자료, 장비보관실	60.00	1	1실: 60㎡	60.00	-
소계		127.00	-	-	127.00	-	

〈표 III-21〉의 계속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
	정보기록보관실	74.00	1	1실: 74㎡	74.00	-
	경비 장비, 물품보관실	145.00	1	1실: 145㎡	145.00	-
무기 · 탄약	무기고	60.00	596	400~600명 미만: 60㎡	60.00	-
	탄약고	20.00	1	1실: 20㎡	20.00	-
	민간소유 총포실	30.00	1	1실: 30㎡	30.00	-
	화학보관실	30.00	1	1실: 30㎡	30.00	-
	소계	140.00	-	-	140.00	-
계(저장보관시설)		1,187.64	-	-	1,153.64	-34.00

마) 관리시설

관리시설은 부산경찰청에서 제시한 사용 인원 및 1급서 기준에 따라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서 정한 시설면적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적정 시설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산정한 결과 대안의 규모는 사업계획안과 동일하게 193㎡로 산출되었다.

〈표 III-22〉 관리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
관리 시설	정문안내소	15.00	1	1실: 15㎡	15.00	-
	당직실	160.00	1	경찰서 1급서: 160㎡	160.00	-
	청소관리용역 사무실	18.00	1	경찰서 1급서: 18㎡	18.00	-
계(관리시설)		193.00	-	-	193.00	-

바) 보조시설

대안의 보조시설 식당 면적은 사업계획안과 동일한 310㎡로 산출되었으며, 산출 기준은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 따르되, 일반직을 포함한 본서계 직원 288명으로 한정하여 면적을 산정하였다.

〈표 Ⅲ-23〉 보조시설 규모 검토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	대안			
			수량 (인)/ (부)/ (실)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
보조 시설	식당	310.00	288	200~400명 미만: 310㎡	310.00	-
계(보조시설)		310.00	-	-	310.00	-

사) 시설관리 및 기타시설(공용시설)

시설관리 면적은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 근거하여 전용면적 10,000㎡ 이하 기준을 적용하였고,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의 공유면적은 산출면적의 30%를 반영하였다.

사업계획안의 전용면적은 업무시설, 편의시설, 정보통신시설, 저장보관시설, 관리시설, 보조시설을 합산한 면적인 7,784.72㎡이며, 대안의 전용면적은 7,366.72㎡로 산정되었다.

〈표 Ⅲ-24〉 전용면적 산출내역

구분	전용면적(㎡)
사업계획안	7,784.72
대안	7,366.72

전용면적 기준에 의한 시설관리(기계실, 전기실, 발전기) 면적은 총 663㎡로 사업계획안과 동일하게 산정되었으며, 공용면적은 5,822.82㎡로, 사업계획안보다 125.40㎡ 감소하였다.

〈표 Ⅲ-25〉 대안의 시설관리 및 기타시설(공용시설) 규모 검토

(단위: m²)

용도	시설명	사업 계획안 (A)	대안			
			수량	재산출 기준	대안 (B)	증감 (B-A)
시설 관리	기계실	450.00	7,366.72	전용연면적 10,000m ² 이하: 450	450.00	-
	전기실	175.00	7,366.72	전용연면적 10,000m ² 이하: 175	175.00	-
	발전기	38.00	7,366.72	전용연면적 10,000m ² 이하: 38	38.00	-
	소계	663.00	-	-	663.00	-
기타 시설	계단실·EV홀·복도· 화장실·로비 등	2,335.42	30%	전용면적의 30%	2,210.02	-125.40
	소계	2,335.42	-	-	2,210.02	-125.40
	지하주차장	2,949.80	86	차량 수×34.3m ²	2,949.80	-
	계(공용시설)	5,948.22	-	-	5,822.82	-125.40

2) 주차규모 검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연면적 7,000m²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향후 부산 사하경찰서도 평가에 따른 적정주차대수에 따라 적정한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계획서는 총 86대의 별도주차 건물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상주차장에 대한 계획과 부지의 배치계획 및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어려워 유사사례와 조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감안하여 주차규모를 검토하였다.

<p>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p> <p>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p> <p>2. 건축물</p> <p>가. 단일용도의 건축물</p> <p>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건축 연면적 7,000m² 이상)</p>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라 본 사업의 주차규모는 법정주차 대수의 2배 이내로서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였다. 주차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본 사업과 조건이 유사한 경찰서 6개 사례를 추정하였으며, 주차규모 및 주차대수 산정에 적용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III-26〉 주차규모 검토의 산출 사례(유사사례)

구분	대지면적 (㎡)	조경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조경비율 (%)	건폐율 (%)	용적률 (%)
대구달성경찰서	5,480.79	849.85	1,969.04	13,333.70	15.51	35.93	144.46
강릉경찰서	15,253.00	2,706.26	2,914.89	14,430.89	17.74	19.11	68.46
인천남동경찰서	11,387.00	2,505.14	2,669.00	16,047.00	22.00	23.44	84.68
서울방배경찰서	5,368.00	1,310.84	1,958.18.00	13,663.77	24.42	36.48	125.48
수원팔달경찰서	15,052.00	3,862.3	3,409.13	10,521.02	25.66	22.59	50.45
여주경찰서	13,027.90	2,811.79	2,637.92	10,356.01	21.58	20.25	64.69
평균	10,928.12	2,341.03	2,720.00	13,058.73	21.15	26.30	89.70

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_2022년 경찰서 신축공사』, (<https://www.pcae.g2b.go.kr>)

지상에 가능한 주차면적은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대안은 사업계획안의 대지면적 9,596㎡를 준용하였으며, 사업계획서상에는 조경비율 및 건폐율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6개 유사사례의 평균 조경비율(21.15%) 및 건폐율(26.30%)을 적용하여 지상의 가용 주차면적을 산출한 결과, 사업계획안과 대안 모두 5,042.70㎡로 산정되었다.

〈표 III-27〉 지상가용면적 산출

구분	연면적 (㎡)(A)	대지면적 (㎡)(B)	조경비율 (%) (C)	조경면적 (㎡)(D) (D=B×C)	건폐율 (%) (E)	건축면적 (㎡)(F) (F=B×E)	지상가용 면적(㎡)(G) (G=B-D-F)
사업계획안	13,732.94	9,596.00	21.15	2,029.55	26.30	2,523.75	5,042.70
대안	13,189.54						

주: 1. 조경비율은 유사사례의 조경비율 평균값인 21.15%를 적용함

2. 건폐율은 유사사례의 건폐율 평균값인 26.30%를 적용함

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_2022년 경찰서 신축공사』, (<https://www.pcae.g2b.go.kr>)

지상 가능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상주차장 사례를 추정하였으며, 주차규모 및 주차대수 산정에 적용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III-28〉 지상주차장의 산출 사례

구분	연면적(㎡)	대수	1대당 면적(㎡)
광주북부경찰서 옥외 주차장 시설공사	1,813.68	90	20.15
남면 양덕원리 공용노외주차장 조성공사	526.00	20	26.30
홍천 갈마곡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424.30	16	26.52
신길동(신길중앙로5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919.00	65	14.14
일광신도시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80.00	23	29.57
과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046.00	60	17.43
사이동 125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1,469.00	53	27.72
생연동 큰시장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2,369.00	66	35.89
노은면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2,670.00	87	30.69
하남3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2,896.50	90	32.18
평균	1,481.35	57.00	26.06

자료: 23년도_시흥남부경찰서 신축사업 지상주차장 산출 사례 참고

지상 가능 주차대수는 앞서 산정한 지상 가용 면적에 유사사례를 통해 산정된 1대당 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사업계획안과 대안 모두 동일한 부지면적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안과 대안 모두 지상 가능 주차대수는 194대로 산정되었다.

〈표 III-29〉 지상 가능 주차대수 산정

구분	지상 가용 면적(㎡)	적용면적(㎡)	지상 가능 주차대수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5,042.70	26.06	194

주: 적용면적 26.06㎡는 유사사례의 지상주차장 1대당 면적 평균을 적용함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 제외)인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11. 12.][부산광역시조례 제7056호, 2023. 10. 11., 일부개정]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	최고한도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개정 2013. 7. 10)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2,949.8㎡)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하여 법정 주차규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30〉 법정주차대수 검토

구분	기준면적(㎡)	법정주차대수	계획 가능 주차대수(법정 2배)	비고
사업계획안	10,783.14	108대	216대	1대당 면적(㎡) : 100㎡/대
대안	10,239.74	102대	204대	

주: 지하주차장(2,949.8㎡)은 공용차량 등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주차대수 산정 시 제외함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안과 대안의 법정주차대수는 각각 108대, 102대이며, 계획 가능 주차대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라 법정주차대수 2배를 적용하여 사업계획안은 216대, 대안은 204대까지 최대로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86대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규모 검토 결과

시설면적 검토 결과, 대안의 면적은 사업계획안 대비 543.40㎡ 감소한 13,189.54㎡로 산정되었다.

대안에서는 통합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유치장 면적을 제외했으며, 수사자료 송치실이 현재 1별관동에 34㎡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복시설로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고 시설면적을 산정했다.

〈표 Ⅲ-31〉 대안 규모 검토 결과

구분	사업계획안(A)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안(B)	증감(B-A)	비고	
전용 면적	순 사무실	2,854.00	2,854.00	-	-
	순 사무실 외	2,700.60	2,316.60	-384.00	-
	편의시설	416.48	416.48	-	-
	정보통신시설	123.00	123.00	-	-
	저장보관시설	1,187.64	1,153.64	-34.00	-
	관리시설	193.00	193.00	-	-
	보조시설	310.00	31.00	-	-
	전용면적 소계	7,784.72	7,366.72	-418.00	-
공용 면적	기계실	450.00	450.00	-	-
	전기실	175.00	175.00	-	-
	발전기	38.00	38.00	-	-
	계단·EV홀·복도·화장실· 로비 등	2,335.42	2,210.02	-125.40	전용면적×30%
	공용면적 소계	2,998.42	2,873.02	-125.40	-
	지하주차장	2,949.80	2,949.80	-	-
합계	13,732.94	13,189.54	-543.40	-	

IV.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개요

가.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본 검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부문별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 및 「2023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등의 지침 자료에 따라 총사업비를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로 구분하였으며 비용 추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

〈표 IV-1〉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구분	연구 절차	연구 방법
I	유형별 공사비 산정	• 조달청에서 발간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기초로 공종별 공사비 산정
II	비용 추정의 방법 및 기준 검토	• 항목별 단가기준 검토 및 적용 기준 • 기본공사비(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그 외 시설부대경비의 산정방식 검토
III	총사업비 추정 (사업계획안, 검토안)	• 단가 적용 유형별 공사비 추정 • 공사비를 기초로 시설부대경비 등 산정
IV	총사업비 추정 종합	• 요구안과 본 검토에서 추정된 비용의 종합/비교

본 검토의 기준연도는 2022년 말(착수시점의 전년도 말)로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 추정을 위한 기준단가의 조사시점이 본 사업의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단가를 보정하였다.

〈표 IV-2〉 비용 보정지수(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연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2008	100.0														
2009	101.7	100.0													
2010	105.8	104.0	100.0												
2011	112.2	110.4	106.1	100.0											
2012	114.6	112.7	108.3	102.1	100.0										
2013	114.8	112.9	108.5	102.3	100.1	100.0									
2014	116.4	114.4	110.0	103.7	101.5	101.4	100.0								
2015	116.6	114.6	110.2	103.8	101.7	101.6	100.2	100.0							
2016	116.9	115.0	110.5	104.2	102.0	101.9	100.5	100.3	100.0						
2017	120.9	118.9	114.3	107.7	105.5	105.3	103.9	103.7	103.4	100.0					
2018	124.6	122.6	117.8	111.0	108.7	108.6	107.1	106.9	106.6	103.1	100.0				
2019	128.0	125.9	121.0	114.1	111.7	111.6	110.0	109.8	109.5	105.9	102.7	100.0			
2020	129.5	127.4	122.4	115.4	113.0	112.8	111.3	111.1	110.7	107.2	103.9	101.2	100.0		
2021	140.4	138.1	132.8	125.1	122.5	122.4	120.7	120.5	120.1	116.2	112.7	109.7	108.4	100.0	
2022	151.2	148.7	142.9	134.7	131.9	131.7	129.9	129.7	129.3	125.1	121.3	118.1	116.7	107.6	100.0

주: 1.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항목이며, 기준연도 2015년 자료 이용함
 2. 음영으로 표시된 2022년 자료는 연간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한국은행 자료갱신일 2023. 3. 7.

나. 사업계획안의 총사업비

사업계획안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총 42,005백만원을 제시하였다.

〈표 IV-3〉 총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사업비	42,005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비
1. 공사비	37,861	• 기본공사비+철거비+BF인증
1-1. 기본공사비	36,557	• 연면적 × 2,662천원/㎡
1-2. 철거비	1,300	-
1-3. BF인증	4	• BF본인증

〈표 IV-3〉의 계속

구분	금액	비고
2. 보상비	-	-
3. 시설부대경비	4,144	-
3-1. 설계비	1,903	• 기본설계비: 1,182, 실시설계비: 1,126
3-2. 감리비	2,154	• 공사비 × 5.00%
3-3. 시설부대비	87	• 공사비 × 0.23%
4. 예비비	-	-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경찰청,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2023. 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다. 총사업비 추정의 기준 면적

본 검토의 총사업비 추정에서는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으로 구분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사업계획안’은 사업수행주체가 요구한 안이며, ‘검토안’은 사업수행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의 시설 규모에 대하여, 단위 사업비별 적정 단가 및 요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재추정한 안이다.

대안은 주무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경찰관서 설계기준」(2021)에 근거하여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한 적정 시설 규모 재산정과 적정 단가의 적용을 통한 비용을 재추정한 안이다.

〈표 IV-4〉 총사업비 추정 기준면적

(단위: m²)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B)	대안(C)	증감(B-A)	증감(C-A)
대지면적	9,596			-	-
연면적	10,783.14	10,783.14	10,239.74	-	-543.40
지하주차장면적	2,949.80			-	-
총 연면적	13,732.94	13,732.94	13,189.54	-	-543.40

2. 총사업비 추정

가. 공사비

1) 기본공사비

가) 기본공사비 단가 설정

건축공사비 기준단가는 원칙적으로 세부 공종별 기준단가를 각각 산정하여 취합하여야 하나, 사업초기 단계상 공종별 내역 및 필요 물량을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유사사례의 총 공사비를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눈 총괄 기준 단가 산정방식을 주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공사비 등의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준단가를 산정한다.

한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2조(취득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에서 시설비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유형별 단위 면적(1㎡)당 기준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사비 단가는 조달청 건축유형별 단위 면적당 공사비(2023년)의 대형청사 단가 2,662백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자료 구득이 어려워 적용된 단가가 본 사업과 유사한 사례들의 평균단가로 산정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업과 유사한 사례 검토를 통한 평균단가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검토에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공사비 정보광장의 ‘유형별 공사비’ 사례 중 경찰관서 사례를 기준으로 단가를 검토하였으며, 시설규모 및 면적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로 선정된 6곳은 대구달성경찰서, 강릉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 여주경찰서이다.

다만, 공사비 정보광장의 세부공종별 공사비를 확인한 결과, 6개 사례 모두 공사비 단가에 해체 및 철거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중복 산정을 방지하고자 해체 및 철거공사비를 제외한 기본공사비 단가를 산출하였다.

〈표 IV-5〉 조달청 자료의 경찰서 유사사례(2022)

구분	대구달성경찰서	강릉경찰서
조감도		
시설규모	지하2층 / 지상6층	지하1층 / 지상6층
대지면적	5,480.79㎡	15,253㎡
건축면적/연면적	1,969.04㎡ / 13,333.70㎡	2,914.89㎡ / 14,430.89㎡
공사비단가	2,344,254원/㎡	2,719,315원/㎡
철거비단가	21,364원/㎡	55,233원/㎡
구분	인천남동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조감도		
시설규모	지하 1층 / 지상 5층	지하2층 / 지상6층
대지면적	11,387㎡	5,368㎡
건축면적/연면적	2,669㎡ / 16,047㎡	1,958.18㎡ / 13,663.77㎡
공사비단가	2,456,393원/㎡	2,703,968원/㎡
철거비단가	39,897원/㎡	55,415원/㎡
구분	수원팔달경찰서	여주경찰서
조감도		

〈표 IV-5〉의 계속

구분	수원팔달경찰서	여주경찰서
시설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지하1층 / 지상5층
대지면적	15,052㎡	13,027.9㎡
건축면적/연면적	3,409.13㎡ / 10,521.02㎡	2,637.92㎡ / 10,356.01㎡
공사비단가	3,006,849원/㎡	2,652,786원/㎡
철거비단가	21,979원/㎡	24,610원/㎡

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https://www.g2b.go.kr:8044/pbs/psa/psa0000/index.do>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산출된 단위면적당 기준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373,495원/㎡로 산출되었다.

〈표 IV-6〉 유사사례 평균단가 산출내역

구분	공사비 단가(원/㎡) (A)	철거비 단가(원/㎡) (B)	보정 공사비 단가(원/㎡) (A-B)
대구달성경찰서	2,131,140	19,421	2,111,719
강릉경찰서	2,472,105	50,212	2,421,893
인천남동경찰서	2,233,085	36,270	2,196,815
서울방배경찰서	2,458,153	50,377	2,407,776
수원팔달경찰서	2,733,499	19,981	2,713,518
여주경찰서	2,411,624	22,373	2,389,251
평균 공사비 단가	2,406,601	33,106	2,373,495

주: 1. 해당 공사비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비 단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평균 공사비 단가 산출
2. 2022년 사례를 참고로 하여 물가변동에 대한 항목은 반영하지 않음

나) 기본공사비 추정

상기 검토를 통해 산출된 단위면적당 기준단가를 면적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다. 시설규모에 단위공사비를 적용한 결과, 기본공사비는 검토안 32,595백만원, 대안 31,305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표 IV-7〉 기본공사비 추정 결과

구분	연면적(㎡)	단가(원/㎡)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13,732.94	2,420,000	33,234
검토안	13,732.94	2,373,495	32,595
대안	13,189.54		31,305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2) 추가공사비

가)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사업계획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에 관련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22) 제12조2항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2011)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연도별 공급비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를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본 검토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추정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21. 4.)의 지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2](2022. 10. 21.)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추가 검토하였다.

〈표 IV-8〉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 이후
공급의무비율(%)	30	32	34	36	38	40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2023. 5. 16.

본 검토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사업계획안의 사업 추진일정(2024년 기본설계)을 고려하여 2024년도 공급비율 34%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본공사비 단가 산정 시 2022년 말 시점의 사례를 검토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의 공급의무비율 32%와의 차이에 대해서만 추가 산정했다. 따라서, 단위공사비 단가 사례의 시점인 2022년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32%과 사업추진일정(2024년 기본설계)인 2024년의 34%와의 차이인 2%p를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표 IV-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산정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 에너지사용량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건축 연면적 ¹⁾ × 단위 에너지사용량 ²⁾ × 지역계수 ³⁾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원별 설치규모 ⁴⁾ × 단위 에너지생산량 ⁵⁾⁷⁾ × 원별 보정계수 ⁶⁾⁷⁾

- 주: 1) 건축 연면적 중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함
 3) 지역계수는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임
 4) 원별 설치규모는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의미함
 5) 단위 에너지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함
 6) 원별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임
 7)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정함.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2. 10. 21.

검토된 면적에 상기 산식을 적용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설치 규모를 산정하였다. 단위 에너지사용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 표2를 기준으로, 공공용 업무시설의 371.66kWh/m²·yr 값을 적용하였으며, 지역계수는 부산시의 0.93 값을 적용하였다.

〈표 IV-10〉 단위 에너지사용량 및 지역계수

구분		단위 에너지사용량 (kWh/m ² ·yr)	구분	지역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서울	1.00
	방송통신시설	490.18	인천	0.97
	업무시설	371.66	경기	0.99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강원 영서	1.00
	종교시설	257.49	강원 영동	0.97
	의료시설	643.52	대전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충북	1.00
	노유자시설	175.58	전북	1.04
	수련시설	231.33	충남·세종	0.99
	운동시설	235.42	광주	1.01
	묘지관련시설	234.99	대구	1.04
	관광휴게시설	437.08	부산	0.93
	장례식장	234.99	경남	1.00

〈표 IV-10〉의 계속

구분		단위 에너지사용량 (kWh/㎡·yr)	구분	지역계수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울산	0.93
	운수시설	374.47	경북	0.98
	업무시설	374.47	전남	0.99
	숙박시설	526.55	제주	0.97
	위락시설	400.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검토된 연면적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근거하여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검토안 3,727,125Wh/㎡·yr, 대안 3,539,301Wh/㎡·yr가 산정되었다.

〈표 IV-11〉 에너지사용량 산정

구분	연면적(㎡)	단위 에너지사용량 (kWh/㎡·yr)	지역계수	예상 에너지사용량 (kWh/㎡·yr)	비고
검토안	10,783.14	371.66	0.93	3,727,125	공공업무시설
대안	10,239.74			3,539,301	

주: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으로 말함.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앞서 추정된 사업 추진일정(2024년 기본설계) 2024~2025년의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의무공급 비율인 34%에서 기본공사비 단가 산정 시 유사사례 검토 시점인 2022년의 비율 32%의 차이인 2%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량은 다음과 같다.

〈표 IV-12〉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산정

구분	예상 에너지사용량(kWh/·yr)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량(kWh/·yr)
검토안	3,727,125	2	74,543
대안	3,539,301		70,786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2023. 5. 16.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현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열(수직밀폐형)과 태양광(고정식)을 각각 50%, 50%씩 임의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태양광(고정식)의 단위 에너지생산량은 1,358(kWh/m²·yr), 보정계수는 0.95이며, 지열에너지(수직밀폐형)의 단위 에너지생산량은 864(kWh/m²·yr), 보정계수는 1.26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IV-13〉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월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월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0.95
	추적식	1,765		1.47
	BIPV	923		6.12
태양열	평판형	596	kWh/m ² ·yr	1.78
	단일진공관형	745		1.42
	이중진공관형	745		1.42
	공기식 무창형	487		1.53
	공기식 유창형	557		2.87
지열 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26
	개방형	864		1.00
집광태양광	프리즘	132	kWh/m ² ·yr	7.76
	광덕트	73		7.77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고분자 전해질)	7,415	kWh/kW·yr	2.20
	SOFC(고체 산화물)	9,198	kWh/kW·yr	8.71
수열에너지	해수	864	kWh/kW·yr	1.30
	하천수	864	kWh/kW·yr	1.30
	목재펠릿	322	kWh/kg·yr	0.32
	소형풍력	2,375	kWh/kW·yr	4.5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3-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0], 2023. 4. 11.

앞서 제시된 태양광(고정식) 및 지열에너지(수직밀폐형)의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월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생산량을 산정한 결과, 검토안은 태양광 29kWh/·yr, 지열 34kWh/·yr, 대안은 태양광 27kWh/·yr, 지열 33kWh/·yr가 산정되었다.

〈표 IV-14〉 태양광 및 지열 설치 규모 산정

구분		신재생에너지량 (kWh/·yr)	단위 에너지생산량 (kWh/·yr)	원별 보정계수	에너지생산량 (kWh/·yr)
검토안	태양광	37,271	1,358	0.95	29
	지열	37,271	864	1.26	34
	소계	74,543	-	-	-
대안	태양광	35,393	1,358	0.95	27
	지열	35,393	864	1.26	33
	소계	70,786	-	-	-

주: 지열과 태양광의 설치 비율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현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 50%, 50%로 산정
(신재생에너지량 85,388kWh/·yr의 50%인 42,694kWh/·yr 적용)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2023. 5. 16.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2024)에 근거하여 태양광은 일반건물(100kW 이하) 설비가격(육지), 지열은 일반건물(1,000kW 이하) 설비가격(육지)을 적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표 IV-15〉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기준단가 (부가세 포함)	2024년 기준단가 (부가세 제외)
태양광	일반건물 (100kW 이하)	설비가격 (육지)	2,068	1,880
지열	일반건물 (1,000kW 이하)	설비가격 (육지)	1,394	1,267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게시일자: 2023. 4. 10.

따라서,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용은 앞서 산정된 에너지생산량과 기준단가(부가세 제외)를 적용한 결과, 검토안은 98백만원, 대안은 93백만원이 산정되었다.

〈표 IV-16〉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산정

구분		에너지생산량 (kWh/·yr)	원별 공사 단가(천원)	공사비(천원)	적용 공사비(백만원)
검토안	태양광	29	1,880	54,314	54
	지열	34	1,267	43,387	43
	소계	-	-	97,701	98
대안	태양광	27	1,880	51,577	52
	지열	33	1,267	41,201	41
	소계	-	-	92,777	93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나) 제로에너지빌딩(ZEB) 공사비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¹⁸⁾ 조회결과, 본 검토에 활용한 유사사례(대구달성, 강릉, 인천남동, 서울방배, 수원팔달, 여주)는 모두 제로에너지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중복 산정이 될 수 있으므로 본 검토에서 제로에너지빌딩(ZEB) 공사비는 제외하였다.

다) BF인증(본인증)

사업계획안은 공사비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본인증 비용을 추가한 것에 대한 검토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 근거하여 본 사업 시설물은 업무시설(공공청사)이므로 BF인증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BF인증은 설계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BF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에 근거하여 예비인증은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본인증은 관련 법령별 공사완료 및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를 신청 시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안을 준용하여 검토안에서도 공사비 비용 항목으로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18)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energy.or.kr)

〈표 IV-17〉 개별시설 인증 수수료

(단위: 연면적, 원)

구분		300㎡ 미만 (제1구간)	300㎡ 이상~ 1,000㎡ 미만 (제2구간)	1,000㎡ 이상~ 3,000㎡ 미만 (제3구간)	3,000㎡ 이상~ 10,000㎡ 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자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8]

BF본인증 비용 검토결과, 사업계획안은 기준 수수료 4백만원을 적용한 반면 검토안, 대안 모두 연면적 10,000㎡ 이상 수수료를 적용한 6백만원을 적용하였다.

〈표 IV-18〉 BF본인증 수수료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 대안(B)	증감(B-A)
BF본인증	4	6	2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라) 철거비

사업계획안은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공사비를 제시하였지만, 단가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본 검토안에서는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과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거하여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를 산정하였다.

〈표 IV-19〉 철거비 및 설계비 책정기준

(단위: 천원/㎡)

구분	철거비	철거설계비
6층 이상	95.2	4.5
3~5층	91.2	4.3
2층 이하	86.0	4.0
평균	91.3	4.3

자료: 「2022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표 IV-20〉 폐기물 처리비 단가 기준

(단위: 천원/동, 원/톤)

구분	단위 공사비		비고
	천원/동	원/톤	
건설폐기물처리비	9,970	29,7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비용 및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포함 • 수목 관련 비용은 미포함

자료: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산정 시 적용한 면적은 주무부처가 제출한 철거면적을 준용하여 전체 7개소 건축물(7,223.96㎡) 중에서 2022년 12월 철거가 완료된 창고동을 제외한 6개소 건축물(7,089㎡) 면적을 적용하였다.

〈표 IV-21〉 철거 건축물 면적

(단위: ㎡)

건물명	건축연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지하	지상		
본관동	1989	철근콘크리트	1	4	5,167.8	-
창고동	1989	철근콘크리트	-	1	134.96	'22. 12월 철거
2별관(교통)	2007	철근콘크리트	-	3	573.9	-
3별관(형사)	1989	철근콘크리트	1	2	1,155.24	-
무기고	1989	철근콘크리트	-	1	66.24	-
탄약고	1989	철근콘크리트	-	1	19.68	-
초소 및 여청	-	-	-	-	106.14	-

자료: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관련 적정성 검토 보완 자료(4차)」(2023. 12.)

철거비 산정결과 검토안 및 대안은 사업계획안의 철거비 724백만원 대비 77백만원이 감소한 647백만원이 산정되었다. 비용의 차이는 단가 적용 기준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표 IV-22〉 철거비 산정

(단위: m²,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 대안(B)		증감 (B-A)
	철거건물면적	철거 공사비 합계	철거건물면적	철거 공사비 합계	
철거비	7,089	724	7,089	647	-77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폐기물 처리비 산정결과 사업계획안의 458백만원 대비 428백만원이 감소한 30백만원이 산정되었다. 비용의 차이는 사업계획안의 경우 철거건물면적 7,089m²에 단가를 적용하였고, 검토안 및 대안 경우 철거건물 동수에 단가를 적용한 차이로 판단된다.

〈표 IV-23〉 폐기물처리비 산정

(단위: m², 천원/m²,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 대안(B)		증감 (B-A)
	철거건축면적	폐기물처리 공사비	철거건물 동수	폐기물처리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7,089	458	3	30	-428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마) 헬리컬파일 공사비

본 대상지는 현장조사 시 매립에 의한 연약지반으로 기존 건축물의 침하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부처로부터 침하 방지를 위한 공사단계에서 추가 공법의 적용을 요청받았다.

주무부처는 2022년도에 현 청사와 동일한 필지에 건축한 1별관동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현 청사에는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1별관동 건축 이전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서 지반 지내력¹⁹⁾의 부족이 의심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은 A등급으로 문제가 없으나, 기울기 및 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위험 정도는 E등급 진단을 받았다. 이에 1별관동의 경우 지반보강을 위해 헬리컬파일 공사를 적용했다.

19) 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는 정도

따라서 동일한 필지에 건축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에서도 기반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무부처의 요청대로 헬리컬파일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표 IV-24〉 1별관동 자체 안전진단 결과(2015)

층	안전성 / 상태									기울기 및 침하
	구분	기둥	내력벽	큰보	작은보	슬래브	테두리보	접합부	종합	
1층	안전성	1.00	-	1.00	1.00	-	-	-	1.00(A)	9.00(E)
	상태	3.00	-	5.00	3.00	5.00	-	-	4.59(B)	
	종합	2.40	-	5.00	2.40	5.00	-	-	3.51(B)	
2층	구분	기둥	내력벽	큰보	작은보	슬래브	테두리보	접합부	종합	
	안전성	1.00	-	1.00	1.00	-	-	-	1.00(A)	
	상태	3.00	-	5.00	3.00	5.00	-	-	4.59(C)	
	종합	2.40	-	5.00	2.40	5.00	-	-	3.51(B)	

자료: 「부산사하경찰서 신축 관련 적정성 검토 보완 자료(2차)」(2023. 8.)

따라서, 제공받은 사하경찰서 1별관 헬리컬파일공사(반석기초) 자료를 준용하여 헬리컬파일 공사의 적정 단가 산출 및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표 IV-25〉 헬리컬파일 공사비 단가 산출

(단위: m², 백만원, m³/원)

구분	연면적	공사비	적용단가	보정단가
1별관	1,384	232	167,630	180,370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자료: 「사하경찰서 헬리컬파일공사(반석기초)」(2021)

본 사업의 연면적에 앞서 산출된 헬리컬파일 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결과, 검토안 2,477백만원, 대안 2,379백만원이 산정되었다.

〈표 IV-26〉 헬리컬파일 공사비 산출

(단위: m², 백만원, m³/원)

구분	연면적	단가	공사비
검토안	13,732.94	180,370	2,477
대안	13,189.54		2,379

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바) 공사비 종합

검토안과 대안의 공사비 산정 결과, 검토안은 39,437백만원, 대안은 37,905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사업계획안과 비교하면, 검토안은 1,576백만원, 대안은 44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공사비 증가 이유는 사업계획안에서 누락된 현장 여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추가 공사비(신·재생에너지, 헬리컬파일 공사비)를 반영함에 따라 일부 공사비 항목이 사업계획안 대비 증가했다. 따라서, 검토안 및 대안의 기본공사비는 사업계획안 대비 감소하였지만, 추가 공사비 반영에 따른 공사비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7〉 공사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연면적(㎡)	13,732.94	13,732.94	-	13,189.54	-543.40	
기본 공사비	33,234	32,595	-639	31,305	-1,928	
추가 공사비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	98	+98	93	+93
	BF본인증	4	6	+2	6	+2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1,182	676	-505	676	-505
	헬리컬파일 공사비	-	2,477	+2,477	2,379	+2,379
부가가치세	3,442	3,585	+143	3,446	+4	
총 공사비	37,861	39,437	+1,576	37,905	+44	

나. 보상비

본 사업은 기존의 부산 사하경찰서 부지에 부산 사하경찰서를 재건축(신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지보상비는 산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계획안을 준용하여 용지보상비에 대한 비용 추정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다.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경비는 조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비 및 보상비 이외의 비용을 의미한다. 사업계획안의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

어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조정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설계비, 조사비 및 측량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 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경비를 산정하였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등의 기타 시설부대경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시설부대비 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설부대경비를 산출하기 위한 총 공사비는 앞서 추정한 공사비(기타 법정경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요율은 다음의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 \times (y_1 - y_2)}{(x_1 - x_2)}$$

X : 당해 금액	x_1 : 큰 금액	x_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 요율	y_1 : 작은 금액 요율	y_2 : 큰 금액 요율

1) 설계비

설계비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 5.)에 따라 산정하며 건축부문 요율을 적용한다. 먼저, 설계비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다음 표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 기준표에 따라 구분하며, 본 시설물이 업무시설(공공청사)이므로 2종(보통)을 적용한다. 제2종(보통) 요율 중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한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중급의 요율을 적용한다.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이며, 설계비 요율 직선보간 산정식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각 안별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비를 추정하였다.

〈표 IV-28〉 건축공사의 종별 구분 기준

구분	제1종(단순)	제2종(보통)	제3종(복잡)
건축물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축용 창고, 관리자,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p>※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p>※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p. 2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2020. 9.

〈표 IV-29〉 건축부문 요율

(단위: %)

공사비	종 별	제1종(단순)			제2종(보통)			제3종(복잡)		
	도서의 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100억원까지		4.56	3.80	3.04	5.07	4.22	3.38	5.58	4.65	3.72
200억원까지		4.43	3.69	2.96	4.92	4.10	3.28	5.42	4.51	3.61
300억원까지		4.36	3.63	2.91	4.84	4.03	3.23	5.32	4.44	3.55
500억원까지		4.30	3.58	2.87	4.77	3.98	3.18	5.25	4.38	3.50

〈표 IV-29〉의 계속

공사비	종 별	제1종(단순)			제2종(보통)			제3종(복잡)		
	도서의 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1,000억원까지		4.21	3.50	2.80	4.68	3.90	3.12	5.14	4.29	3.43
2,000억원까지		4.14	3.45	2.76	4.60	3.84	3.07	5.06	4.22	3.38
3,000억원까지		4.10	3.42	2.73	4.55	3.79	3.03	5.01	4.17	3.34
5,000억원까지		4.03	3.36	2.69	4.48	3.73	2.99	4.93	4.11	3.28

주: 1. 동 요율은 '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2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2.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①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②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3.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및 [별표 2] 참고
 ① 기본: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
 ② 중급: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③ 상급: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5. 50억원 이하 공사비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p. 29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2020. 9.

건축설계 대가요율의 적정 요율 산정을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활용한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0〉 건축설계 적정요율 산정

구분	당해 금액(억원)	큰 금액(억원)	작은 금액(억원)	작은 금액요율(%)	큰 금액 요율(%)	적정요율(%)
검토안	363	500	300	4.03	3.98	4.01
대안	349	500	300	4.03	3.98	4.02

가) 기본설계비

앞서 도출된 요율을 적용하여 추가 설계비를 제외한 기본설계비를 산정한 결과 검토안은 576백만원, 대안은 554백만원이 산정되었다. 사업계획안 대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이유는 기준공사비의 차이로 인한 적용요율의 차이로 판단된다.

〈표 IV-31〉 기본설계비 추정

구분	기준공사비(백만원)	적용요율(%)	기본설계 적용률(%)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34,415	4.01	40%	552
검토안	35,846	4.02		576
대안	34,453	4.02		554

- 주: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2. 동 요율은 '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2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3.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①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②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나) 실시설계비

앞서 도출된 요율을 적용하여 실시설계비를 산정한 결과 검토안은 864백만원, 대안은 831백만원이 산정되었다.

〈표 IV-32〉 실시설계비 추정

구분	기준공사비(백만원)	적용요율(%)	실시설계 적용률(%)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34,415	4.01	60%	828
검토안	35,846	4.02		864
대안	34,453	4.02		831

- 주: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2. 동 요율은 '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2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3.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①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②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2) 조사 및 측량비

조사 및 측량비는 각종 측량, 시험 및 검사,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2023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2023. 8.)에 따라 세부항목이 제시된 경우, 항목별 검토를 진행한다.

가) BF예비인증

사업계획안은 공사비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비용을 추가한 것에 대한 검토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 근거 하여 본 사업 시설물은 업무시설(공공청사)이므로 BF인증 대상에 해당한다.

〈표 IV-33〉 개별시설 인증 수수료

(단위: 연면적, 원)

구분		300㎡ 미만 (제1구간)	300㎡ 이상~ 1,000㎡ 미만 (제2구간)	1,000㎡ 이상~ 3,000㎡ 미만 (제3구간)	3,000㎡ 이상~ 10,000㎡ 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별표 8]

BF예비인증 비용 검토결과, 사업계획안은 기준 수수료 2백만원을 적용한 반면 검토안, 대안 모두 연면적 10,000㎡ 이상 수수료를 적용한 3백만원을 적용하였다.

〈표 IV-34〉 BF예비인증 수수료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 대안(B)	증감(B-A)
BF예비인증	2	3	1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나) 녹색건축인증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녹색건축인증 대상이며, 사업계획안에서 제시한 녹색건축인증 비용을 검토하였다.

녹색건축인증 비용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를 참고하여 최우수등급 9%의 요율을 적용하여 녹색건축인증 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IV-35〉 녹색건축인증 요율

(단위: %)

구분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9	6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6	3

자료: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녹색건축인증 비용 산정 결과, 검토안은 130백만원, 대안 125백만원이 산정되었다.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125백만원 대비 검토안은 증가하였고 대안은 감소하였는데, 증감 이유는 기준공사비의 차이로 인한 적용요율의 차이로 판단된다.

〈표 IV-36〉 녹색건축인증 비용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기준공사비(백만원)	건축설계 대가요율(%)	녹색건축인증 요율(%)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34,415	4.01	9	125
검토안	35,846	4.02		130
대안	34,453	4.02		125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를 참고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비용을 산정하였다.

〈표 IV-37〉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기준면적(㎡)	금액(원)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15,000 미만	1,480,000
15,000 이상 ~ 20,000 미만	1,691,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902,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2,114,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2,325,000
60,000 이상	2,537,000

주: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2022. 12. 27.)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비용 산정 결과, 검토안 및 대안은 1백만원이 산정되었다. 사업 계획안에 제시된 2백만원 대비 모두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이유는 적용 단가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8〉 에너지절약계획서 비용 산정

구분	기준단가(원)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1,691,000	2
검토안	1,480,000	1
대안		1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라)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건축 연면적 7,000㎡ 및 10,500㎡ 이상의 신규 공공업무 시설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사업계획안에서 제시한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검토하여 재산정하였다.

〈표 IV-39〉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면적

구분		도시교통정비지역	교통권역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7,000㎡ 이상	10,500㎡ 이상
	일반업무시설	25,000㎡ 이상	37,500㎡ 이상

자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202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 2021)를 참고하여, 교통영향평가 직접인건비 요율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0〉 교통영향평가 요율 산정

구분	적용 연면적(㎡)	기준면적(㎡)	요율(%)
사업계획안	13,732.94	10,500.00	1.36
검토안	13,732.94		1.11
대안	13,189.54		1.10

교통영향평가 비용 산정 결과, 검토안은 153백만원, 대안은 144백만원이 산정되었으며,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170백만원 대비 검토안 및 대안 모두 교통영향평가 비용은 감소하였다. 감소 이유는 검토안은 적용 요율 차이로 인한 감소로 판단되며, 대안은 적용 연면적 및 요율에 의한 차이로 판단된다.

〈표 IV-41〉 교통영향평가 비용 산정

구분	적용 연면적(㎡)	요율(%)	금액(백만원)
사업계획안	13,732.94	1.24	170
검토안	13,732.94	1.11	153
대안	13,189.54	1.10	144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마) 미술작품 설치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증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비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계획안은 미술작품 설치비가 반영되지 않아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주차장·기계실·전기실·발전실 등을 제외한 연면적이 검토안은 10,120.14㎡, 대안은 9,576.74㎡이기 때문에 검토안만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산정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의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안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정 결과, 228백만원이 산정되었다.

〈표 IV-42〉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정

구분	기준면적(㎡)	적용율(%)	표준건축비(원/㎡)	금액(백만원)
미술작품 설치비	10,120.14	1	2,257.000	228

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_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자료: 「2023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회의 자료」 참고

바) 조사 및 측량비 종합

총 조사 및 측량비는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업무범위 이외의 각종 측량, 조사, 시험 및 검사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각종 인증비 포함)으로, 「2023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2023. 8.)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세부항목(BF예비인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교통영향평가, 미술작품 설치비)에 대해서 비용을 검토한 결과, 검토안은 515백만원, 대안은 274백만원이 산정되었다.

〈표 IV-43〉 조사 및 측량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BF예비 인증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절약 계획서	교통 영향평가	미술작품 설치비	합계
사업계획안	2	125	2	170	-	299
검토안	3	130	1	153	228	515
대안	3	125	1	144	-	274

3) 감리비

책임감리비는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 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법률에 의거하여 책임감리 대상(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전면 책임감리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감리비 산정 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 5.)에 제시되어 있는 건축공사 복잡도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본 사업은 업무시설(공공청사)이므로 보통의 공종 요율을 적용한다. 감리비 요율을 직선보간 산정식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각 안별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비를 산정하였다.

〈표 IV-44〉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단위: %)

공사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억원	9.66	10.73	11.80
200억원	7.34	8.14	8.97
300억원	6.24	6.92	7.62
400억원	5.48	6.09	6.70
500억원	4.96	5.52	6.07
700억원	4.38	4.87	5.35

〈표 IV-44〉의 계속

공사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0억원	3.93	4.36	4.79
1,500억원	3.44	3.82	4.21
2,000억원	3.11	3.45	3.79
3,000억원	2.73	3.03	3.32
5,000억원	2.32	2.57	2.82

주: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
 2. 동 요율은 '22. 5. 1. 이후 신규 발주하는 사업부터 적용
 3. 5,000억원 초과 공사비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p. 29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 5.)에서 제시하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직선보간법을 활용하여 적정 요율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5〉 감리비 적정요율 산정

구분	당해 금액 (억원)	큰 금액 (억원)	작은 금액 (억원)	작은 금액요율 (%)	큰 금액 요율 (%)	적정요율 (%)
검토안	35,846	400	300	6.92	6.09	6.43
대안	34,453	400	300	6.92	6.09	6.55

적정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추정한 결과, 검토안은 2,307백만원, 대안은 2,257백만원이 산정되었다. 검토안과 대안 모두 사업계획안 대비 높게 산정되었으며, 비용 차이의 원인은 기본공사비 및 적용 요율의 차이로 판단된다.

〈표 IV-46〉 감리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공사비	34,415	35,846	34,453
적용요율(%)	5.69	6.43	6.55
감리비	1,958	2,307	2,257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4)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및 연락 등에 따르는 여비, 각종 수수료 등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이다.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 5.)에 제시되어 있는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였다. 요율은 직선보간 산정식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각 안별 요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부대비를 산정하였다.

〈표 IV-47〉 건설부문 요율

(단위: %)

공사비	구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100억원까지		1.71	1.65	1.74	1.68	3.24	3.09	3.41	3.49	3.10	0.25
200억원까지		1.61	1.57	1.64	1.58	3.06	2.98	3.21	3.28	2.94	0.23
300억원까지		1.57	1.54	1.60	1.55	3.01	2.95	3.14	3.20	2.88	0.23
500억원까지		1.50	1.48	1.52	1.48	2.90	2.88	3.02	3.08	2.78	0.23
1,000억원까지		1.45	1.45	1.47	1.44	2.79	2.81	2.89	2.94	2.68	0.23
2,000억원까지		1.39	1.40	1.41	1.39	2.70	2.75	2.79	2.83	2.60	0.21
3,000억원까지		1.37	1.38	1.38	1.36	2.64	2.70	2.71	2.75	2.54	0.19
5,000억원까지		1.32	1.34	1.33	1.31	2.58	2.67	2.65	2.69	2.49	0.17

- 주: 1. 동 요율은 '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23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 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름)
 2.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분야의 설계비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준용함
 3.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은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의 50% 가산함('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4. 50억원 이하 또는 5,000억원 초과 공사비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5. p. 290.

시설부대비는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제비 등으로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 5.)」에 따라 산정한 결과, 검토안은 82백만원, 대안은 79백만원이 산정되었다.

〈표 IV-48〉 시설부대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공사비	34,415	35,846	34,453
적용요율(%)		0.23	
시설부대비	79	82	79

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5) 시설부대경비 종합

본 검토에서 추정된 시설부대경비 종합 결과. 검토안은 4,778백만원, 대안은 4,394백만원이 산정되었다. 사업계획안 대비 검토안 및 대안의 비용 증가 이유는 전체적인 적용 요율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검토안의 사업계획안 대비 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적용 요율 및 미술작품 설치비 추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9〉 시설부대경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설계비	1,730	1,955	1,658
기본설계비	552	576	554
추가설계비 (BF예비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350	515	274
실시설계비	828	864	831
감리비	1,958	2,307	2,257
시설부대비	79	82	79
부가가치세	377	434	399
합계	4,144	4,778	4,394

라. 예비비

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물량이 당초 계획처럼 추진되지 못할 경우 또는 인플레이션 등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비하여, 본 검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의 10%)를 적용하여 예비비로 산정하였다.

〈표 IV-50〉 예비비 반영비율

구분	예비비 반영비율
1. 사업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 × 10%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활용이 가능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 × 5%
3.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도서 활용이 가능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 × 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표 IV-51〉 예비비 산정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예비비	-	4,422	4,230

마. 총사업비 추정 결과 종합

총사업비 추정 결과, 검토안의 총사업비는 486.37억원으로 사업계획안 420.05억원 대비 66.32억원 증가하였다. 검토안 총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사업계획안과 규모는 동일하지만, 헬리콥터파일 공사비, 예비비, 미술작품설치비의 추가와 감리비 적용 요율의 차이로 인한 증가로 판단된다.

대안의 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465.29억원으로 사업계획안 대비 45.24억원이 증가하였다. 대안의 총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시설규모 재검토 결과 연면적이 조정되어 기본공사비가 감소하였지만, 헬리콥터파일 공사비 및 예비비의 추가와 감리비 적용 요율의 차이로 인한 증가로 판단된다.

〈표 IV-52〉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총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m²,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대지면적	9,596				
연면적	13,732.94	13,732.94	-	13,189.54	-543.40
1. 공사비	37,861	39,437	1,576	37,905	44
1-1. 기본공사비	33,234	32,595	-639	31,305	-1,929
1-2. 추가공사비	1,185	3,257	2,072	3,154	1,969
1-2-1. 신재생에너지	-	98	98	93	93
1-2-2. BF본인증	4	6	2	6	2
1-2-3.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1,181	676	-505	676	-505
1-2-4. 헬리콥터파일 공사비	-	2,477	2,477	2,379	2,379
1-3. 부가가치세	3,442	3,585	143	3,446	4

〈표 IV-52〉의 계속

구분	사업계획안	검토안		대안	
	금액(A)	금액(B)	증감(B-A)	금액(C)	증감(C-A)
2. 시설부대경비	4,144	4,778	634	4,394	250
2-1. 설계비	1,730	1,955	225	1,658	-72
2-1-1. 기본설계비	552	576	24	554	2
2-1-2. 추가설계비	350	515	165	274	-76
2-1-3. 실시설계비	828	864	36	831	3
2-2. 감리비	1,958	2,307	349	2,257	299
2-3. 시설부대비	79	82	3	79	0
2-4. 부가가치세	377	434	57	399	22
3. 예비비	-	4,422	4,422	4,230	4,230
총사업비(1+2+3)	42,005	48,637	6,632	46,529	4,524

V. 정책성 분석

1. 정책성 분석의 체계

정책성 분석은 비용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서 비용 분석은 사업 시행 주무부처의 요구안을 기준으로 면적의 적정성과 규모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량화하여 그 결과를 도출한다. 반면 정책성 분석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 중에서 계량화할 수 없으나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경제성 분석 및 종합평가가 수행되지 않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경우 정책성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활용되지는 않지만, 사업 시행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21호, 2022. 12. 20.)에 의하면, 정책성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평가항목’과 사업별 특수성 및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사업 별도 평가항목’으로 구분된다.

기본 평가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의 성격과 관계없이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으로서, 크게 사업 추진 여건과 정책효과로 구분된다. 사업 추진 여건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 내부 여건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 외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책효과는 사업 수행으로 인한 직접적·간접적 고용효과(일자리 효과),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개선효과(생활여건 영향), 사업 수행이 지역환경·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환경성 평가), 재해·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피해규모,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안전성 평가: 선택), 사업특화항목으로 구분하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정책효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검토해야 한다.

특수 평가항목은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는데, 재원조달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재원조달 위험성은 운영비 조달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부여하거나 원인자 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기 확보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기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문화재 가치는 국가·시도 지정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개별 사업 특성에 따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소관부처 및 조사기관에서 발굴하여 기재부 협의 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경우에는 검토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 평가항목 위주로 정책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기본 평가항목인 '사업 추진 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사업과 기타 추가 평가항목에서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할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은 <표 V-1>과 같다.

〈표 V-1〉 본 사업의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 개요

중분류	세부평가항목	비고
사업 추진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 	분석
정책효과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효과 • 생활여건 영향 • 환경성 평가 • 안전성 평가(선택) • 사업특화항목 	생략 ¹⁾
별도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조달 위험성 • 문화재 가치 	미포함

주: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분석 생략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별표 3] 참고하여 수정

2. 사업 추진 여건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

1) 개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혹은 국민들의 요구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의 추진 주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곧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사업의 준비 정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에 해당한다.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는 해당 사업이 추진 주체에 의하여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해당 사업이 정책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존에 수립된 장기계획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선회함으로써 유효성이 낮아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와 더불어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정책 목표(방향)가 개별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반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시점에는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 변화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존재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의 준비 정도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성은 없다. 상시적인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의 준비 정도가 내부 여건 평가의 큰 요인이 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준비 정도를 별도로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라는 상시적인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업의 준비 정도가 내부 여건 진단의 큰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 건축 등 사업의 내용이 특수할 경우, 건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준비 정도를 내부 여건에 포함할 수 있다. 사업의 준비 정도는 대상사업의 입지, 운영 및 관리계획, 자원조달 계획 등의 구체성 정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은 건축부문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의뢰된 사업으로서 크게 내부 여건 평가와 외부 여건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내부 여건 평가는 해당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 반영 여부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정책 일치성 평가”와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부지 활용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의 준비 정도 및 부처의 추진의지”로 구성된다.

2) 검토 결과

정책방향 일치성 평가는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먼저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에서 본 사업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당 계획은 전국 경찰관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축 계획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계획에 따르면 최초 건설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사하경찰서는 1989년에 준공하여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시설물의 안전(균열 및 하자)과 협소도(협소율 45%)상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 이용자와 근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협소율의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산출하였을 때 161%로 산정되며, 이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해당 건축물이 연약지반에 건설되었으며, 현재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규 청사 건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신축 계획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자원조달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23~'2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서(2022. 12.)」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용재산취득계획의 경우 2023년 제출하였다. 2024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최종예산에서 신규사업으로 3.55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자원조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요소들을 검토하였을 때 본 사업은 상위계획의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의 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사업의 목적이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회신자료에 기반을 두어 검토하였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 사하경찰서는 2022년 12월 최초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였다. 이는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하며, 부산경찰청의 사업 추진의지가 매우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사업의 세부 내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건축사업의 사업 적정성 검토는 업무시설을 산정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조직의 정원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초 검토한 사업계획에서는 정원 기준이 잘못 산정되어 면적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 일부 해소하였다. 정원 기준은 본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기준시점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규모 산정의 오류는 자칫 사업 지연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과정에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등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광역유치장 설치에 따른 신규 시설의 유치장 설치 관련 이슈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요구안에는 사하경찰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유치장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진은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래 유치장 시설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다만 본 시설이 각급 경찰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부산경찰청은 2006년부터 유치장 근무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2~3개 지역의 유치장을 통합하는 광역유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6개의 광역유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하경찰서의 경우 서부, 영도, 중부경찰서 및 서부지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서부경찰서의 유치장을 이용하고 있다. 광역유치장을 통해 통합 운영한 지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다는 것은 현 방식이 경찰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치장을 설치·운영하려면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하경찰서에는 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청사에서는 유치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본 검토 과정에서 향후 유치장 운영을 위한 인력 총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경찰서 신축 과정에서 유치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담 인력 미확보로 인해 실제 운영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면적은 현재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현재 사하경찰서 신축 사업에서 개별 유치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에서 해당 면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관련 근거 마련 및 운영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본 사업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무부처의 사업 추진 의지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유치장 설치와 같은 사업 관련 이슈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

1) 개요

사업의 추진 주체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할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여건’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적 영향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태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 여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이해당사자는 사업의 추진 주체를 제외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이익집단이 해당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면 지역주민 모두가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

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다. 나아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이 모두 있어 갈등을 겪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에 대한 선호도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 여건 검토 시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부 여건 평가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본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에 대한 태도 및 갈등 여부 등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 조사과정에서 주무부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2) 검토 결과

먼저 본 사업의 추진 주체인 부산경찰청의 경우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하경찰서 현 청사는 1989년에 지어져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하다. 현장 답사 결과, 현재 청사 건물 구조물에 누수와 균열이 있으며, 보와 슬라브, 기둥에 박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사 부지가 연약지반이며 현재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사 건축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은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기 공간 부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여성 경찰관 증가에 따른 휴게실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산경찰청과 사하경찰서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사하경찰서 방문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사 자리에 재건축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부지 이전이나 신축부지 마련과 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토지용도 변경 등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준공한 별관 신축과 인근 지역의 경찰서 신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공사 진행을 지연할 수 있는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건설 기간에는 민원인들의 업무 처리에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나, 새 청사 건립 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사업 준비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약지반 내 공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 검토한 헬리컬파일 공사는 시공 시 소형 회전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공법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은 방법으로 도심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청사의 별관 공사 진행 시 헬리컬파일 공법을 도입한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다만 시공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음이나 폐기물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사업 진행 시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마련이 요구된다. 별관 공사 시 민원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했으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진행 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주무부처는 본 사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역시 본 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Ⅵ. 지역균형발전 분석

사업 시행의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으로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은 그 구조상 낙후된 지역의 사업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작게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줄고,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역낙후도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의 낙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은행의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이용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낙후된 지역에서 수행되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이 다소 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되지 않으나,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1. 지역낙후도²⁰⁾

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법

지역낙후도에 대한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낙후도지수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지역낙후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와 객관적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한다.

2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2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UI^r = \sum_j W_j \sum_i W_{ij} \cdot Z_i^r$$

단, $UI^r = r$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Z_i^r = r$ 지역의 표준화된 지표 i 의 값(단, $i = 1, 2, 3, \dots, \dots, 36$)

$W_{ij} =$ 요인 j 에 대한 지표 i 의 가중치(단, $i = 1, 2, 3, \dots, \dots, 36$)

$W_j =$ 요인 j 의 가중치(단, $j = 1, 2, 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지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며, 이들의 가중평균으로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한다. 균형발전지표는 ‘핵심·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구성되는데, 지역낙후도지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핵심·객관지표’만을 차용한다. 지수 산정에는 2020년에 발표된 균형발전지표의 핵심·객관지표 중 시·군·구 단위로 발표된 자료가 존재하는 36개 지표를 준용 및 변형하여 사용했다.²¹⁾

〈표 VI-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인구	연평균 인구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2010~2020) •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해당년/기준년)^{(1/기간)-1})×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경제	재정자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2018~2020) •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일반회계 세입)×100 	행안부 (지방재정365)
주거	노후주택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 	통계청 (주택총조사)
	빈집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 * 빈집: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 (신축되어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통계청 (주택총조사)
	상수도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구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환경부 (상수도통계)
	하수도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 	환경부 (하수도통계)

21) 2020년 자료 기준 총 43개의 핵심·객관지표가 발표되었으나, 이들 중 시·군·구 단위로 발표된 자료 총 36개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

〈표 VI-1〉의 계속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교통	도로포장률	• 개통도 연장에 대한 포장도로 연장비율	국토부(도로현황조사) 및 통계청(e지방지표)
	고속도로 IC 접근성	•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 가까운 고속·고속화철도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서비스 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총 주민등록인구수×100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산업 일자리	사업체 수 증감률	• 최근 3개년 •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해당년/기준년) ^{(1/기간)-1})×100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 증감률	• 최근 3개년 • 변화율은 연평균 증감률((해당년/기준년) ^{(1/기간)-1})×100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지식기반산업 집적도	• 3개년 평균 • 지식기반산업 = 지식기반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집적도(LQ) =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 지역의 전 산업 종사자 수)/(전국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 전국의 전 산업 종사자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상용근로자 비중	• 총 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 등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교육	유아(0~5세) 천명당 보육시설 수	• 보육시설 수/(총 주민등록인구 중 유아인구(0~5세) 수÷1,000)	통계청 (e-지방지표)
	학령인구(6~21세)당 학교 수(초·중·고)	• 초중고 학교 수/총 주민등록인구 중 학령인구(6~21세)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인구 비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영유아(7세 이하)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영유아 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초등학령 (8~13세)인구 수×100/총 주민등록인구 중 초등학령 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문화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여가시설 수	• (문화여가시설 수÷총 주민등록인구수)×100,000 * 문화여가시설=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①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② 생활문화시설: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③ 공공체육시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체육시설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 문체부 행정자료 (생활문화센터, 공공체육시설현황)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공연문화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표 VI-1〉의 계속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도서관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공공체육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총 주민등록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안전	119 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 수	• 주민등록인구수÷119안전센터 수	통계청(e-지방지표)
	소방서 접근성	• 가장 가까운 소방서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경찰서 접근성	• 가장 가까운 경찰서까지 도로 이동거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환경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 (도시공원 조성면적/주민등록 인구)×1,000(㎡/인) * 도시공원: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간(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포함)	도시계획정보서비스 (UPIS) 도시계획현황통계
	녹지율	• (녹지면적/도시지역면적)×100 * 녹지: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간	도시계획정보서비스 (UPIS) 도시계획현황통계
	1㎢당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배출량(kg)/시군구 면적(1㎢)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8개(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임	환경부 시군구별 배출량 자료, UPIS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생활권공원으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에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보건 복지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 65세 이상 1인 가구수×100/전체 일반가구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비중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보건분야 예산액)×100/전체 일반회계 예산	통계청(e지방지표)/ 행안부(지방재정연감)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 (총 사회복지시설수÷주민등록인구)×100,000 *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을 포함	통계청(e지방지표)/ 시도통계연보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주민등록인구)×1,000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통계청(e지방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표 VI-1〉의 계속

부문	지표	측정방법	통계 출처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내 노인인구 비율	• 노인여가복지시설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노인(60세 이상)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 노인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병원시설로부터 서비스권역 이내 위치한 격자에 거주하는 인구수×100/행정구역 내 총 거주인구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

자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지표 간 척도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단위정상법(unit normal scaling)을 사용하여 지표를 표준화했다.

$$Z_i = \frac{X_i - \bar{X}}{S}$$

단, S 는 표준편차, \bar{X} 는 표본평균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지표별 가중치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36개 지표를 이용하여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의 3개의 요인을 도출했다. 지표별 가중치는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별 지표의 가중치(W_{ij})는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요인별 가중치(W_j)는 3개 요인의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을 이용했다. 이렇게 산출된 지표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²²⁾

22)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0) 참조

〈표 VI-2〉 요인별 지표 가중치(요인점수 추정결과)

부문	지표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인구	연평균 인구증감률	-0.0459	-0.1438	0.2793
경제	재정자립도	0.1649	-0.1429	0.1424
주거	노후주택비율	0.2451	-0.3217	-0.0796
	반집비율	0.0502	-0.0151	-0.0294
	상수도보급률	-0.0144	0.0123	-0.0328
	하수도보급률	0.0528	-0.0939	0.0185
교통	도로포장률	0.0256	-0.0254	-0.0049
	고속도로 IC 접근성	0.1171	-0.2062	-0.0135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	0.1212	-0.2871	0.0840
	주차장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0.0183	0.0070	-0.0466
산업 일자리	사업체 수 증감률	-0.2000	0.0783	0.3455
	종사자 수 증감률	-0.0374	-0.0120	0.0989
	지식기반산업집적도 3년 평균	-0.0381	0.0434	0.0342
	상용근로자 비중	-0.0637	0.0680	0.0281
교육	유아(0~5세) 천명당 보육시설 수	-0.0294	0.0280	-0.0098
	학령인구 천명당 학교 수	0.0758	-0.3275	-0.0516
	어린이집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비율	0.0058	0.1992	-0.0273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0.0724	-0.0713	-0.0564
문화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0274	-0.0490	0.0463
	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0.0778	0.0691	-0.0380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0.2109	-0.0690	-0.0422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	-0.0274	0.0199	0.0035
안전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 수	0.1030	-0.0184	0.0284
	소방서 접근성	-0.1800	0.0529	0.0306
	경찰서 접근성	-0.0216	-0.0610	0.0019
환경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0.0094	0.0186	-0.0122
	녹지율	0.0048	0.0016	0.0105
	1㎢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	0.2232	-0.2075	-0.1280
	생활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0.2702	-0.0111	-0.0367

〈표 VI-2〉의 계속

부문	지표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보건 복지	65세 이상 1인가구 비율	-0.3704	0.4229	-0.252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 비중	-0.0017	0.1840	-0.0006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0.0137	0.0398	-0.0073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0.0968	0.2291	-0.0989
	노인여가복지시설서비스권역 내 노인비율	-0.0181	0.0381	0.0328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0.0213	0.0814	-0.0675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0.0983	-0.0315	-0.0772

자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표 VI-3〉 요인별 가중치(요인별 표본 총분산 설명비율)

기본생활여건	기타 사회기반시설여건	기타 경제활동여건
0.5017	0.2792	0.2192

자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나.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앞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토대로 산정된 시·도별 및 시·군별 지역낙후도지수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사업의 대상지가 위치하는 부산광역시의 지역낙후도는 17개 시·도별 기준으로는 8위에 해당하며, 167개 시·군별 기준으로는 22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도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시·군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지역낙후도 측면에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표 VI-4〉 시·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구분	지역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 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종합지수	순위
특별· 광역시	서울특별시	2.598	-0.037	-0.647	1.151	1
	부산광역시	0.564	0.957	-1.004	0.330	8
	대구광역시	0.524	0.938	-0.563	0.402	7

〈표 VI-4〉의 계속

구분	지역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 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종합지수	순위
	인천광역시	1.521	-0.366	0.023	0.666	2
	광주광역시	0.681	1.445	-0.610	0.611	3
	대전광역시	0.705	1.058	-0.418	0.558	4
	울산광역시	1.103	-0.078	-0.228	0.482	5
	세종특별자치시	-1.318	-0.456	4.147	0.120	9
도	경기도	0.233	0.457	0.901	0.442	6
	강원도	-1.249	-1.069	0.044	-0.915	16
	충청북도	-0.646	-0.083	0.117	-0.321	11
	충청남도	-0.942	-0.264	0.197	-0.503	13
	전라북도	-0.804	0.287	-1.097	-0.564	14
	전라남도	-1.067	-0.751	-1.009	-0.966	17
	경상북도	-1.158	-0.686	-0.296	-0.837	15
	경상남도	-0.552	0.209	-0.408	-0.308	10
	제주특별자치도	-0.193	-1.561	0.850	-0.346	12

주: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표 VI-5〉 시·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지역		기본생활 여건	기타 사회기반 시설 여건	기타 경제활동 여건	종합지수	순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705	0.561	-0.705	0.857	22

자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2. 균형발전효과

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는 사업별·지역별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지역에 대해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를 산정하여 정량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도입되었다. 즉,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낙후도 수준만 평가에 반영되고 해당 사업이 해당 지역 낙후도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영되지 않던 부분을 개선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평가항목의 하나로 도입하게 되었다.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의 평가는 36개 균형발전지표 중 해당 사업·지역에 관련된 지표들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제시하면 조사수행기관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검토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1)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이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간 거래관계, 즉 일정기간 중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 간 거래(최종 수요와 산업 간의 거래 및 원초적 투입요소와 산업 간의 거래)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일반균형 통계체제를 말한다.²³⁾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면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Model)’이 된다. 한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산업 간 거래가 국내 산업 간 거래와 국외 거래뿐이지만,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는 지역 내 산업 간 거래와 국외 거래 이외에 국내 다른 지역 간의 거래가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23) ‘Input Output Model’은 산업연관모형 혹은 투입산출모형 등으로 불리는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관례(전국 ‘산업연관표’ 등)를 따라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

본 재검토에서는 한국은행의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 IRIO)을 보완한 모형 및 자료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한국은행의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의 구조, 산업분류, 대상 지역, 투입계수 및 교역계수작성 방법 등 본 모형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 개요

가) 작성현황

한국은행은 지역통계의 확충과 통계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2007년 3월에 2003년 기준의 6개 권역²⁴⁾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를 작성·발표하였다. 동 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한 공식적인 지역산업연관표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권역 세분화 및 최신 경제구조 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9년 8월에 2005년 기준의 16개 시·도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실측 지역 간 산업연관표 작성 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작업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하여 2005년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실측이 아닌 2003년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연장표로 작성하였다. 그 이후 매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작성기준에 맞추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5년 10월에 그동안 축적된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기법과 산업연관표 연장기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0년 및 2013년 지역표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발표하였으며, 2020년 7월에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공표하였다.

나) 작성기준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로 구분한 지역 간 투입산출표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2010/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와 달라진 점은 전업 환산²⁵⁾ 지역 고용표를 함께 작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지역별 산출 및 소득통계, 수출입 및 카드 사용 실적 등 지역생산과 지역 간 이출입 관련

2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을 의미함

25) 전업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노동투입량 측면의 취업자 수 측정을 위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

기초자료를 이용하였고, 부문분류는 165부문으로 기준년 2015년의 상품분류를 적용하였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가격 기준은 2005년 생산자가격 기준에서 2010년 기초가격 기준으로 전환하였으나, 2015년 다시 생산자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각종 계수를 산출하였다. 기초가격이란 생산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를 차감하여 생산자가 실제 수취하는 금액으로, 수요처 간 생산물 세율의 차이를 배제하고 동질적인 기준으로 거래액과 투입구조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생산자가격에는 생산물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처가 기업, 가계 또는 정부 인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거나 한 부문에 세율이 다른 여러 품목을 포함하고 있을 때 생산자가격평가표를 이용하면 파급효과 측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기초가격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순생산물세가 중간투입이나 부가가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투입계수 및 각종 유발계수 도출 시에 순생산물세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혼돈과 분석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5년에는 생산자가격으로 계수를 도출하였다.

다)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업연관표는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 경제구조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세로(열, column)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구조이다. 투입구조는 생산활동에 사용한 원·부재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가로(행, row) 방향은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기 위해 판매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의미한다. 배분구조는 다른 사업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중간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성된다.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는 산업 간 거래내역을 나타내는데 이를 내생부문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외생부문이라고 한다.

지역산업연관표도 전국산업연관표와 같이 행렬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전국산업연관표와 동일하다. 다만 지역연관산업표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으로 나뉜 지역 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되므로, 지역 내인지 지역 간인지에 따라 표의 구성 형식이 다르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투입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의 구성과 동일하나 각 산업부문의 배

분구조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해외부문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수출 및 수입처럼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이출과 이입이 추가되는 것이 전국산업연관표와 다르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에서 국내의 타 지역으로 이출되는 생산품은 수출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에 포함되며,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를 총수요라고 하는데 총수요에서 수입과 이입을 공제한 것이 지역 내 총산출액이 된다.

- 총산출액=총투입액
- 총투입액=중간투입+부가가치[투입구조]
- 총산출액=중간수요+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이출)-수입-이입[배분구조]
- 총수요(=총공급)

타 지역 생산품(이입품)과 수입품을 구분하지 않은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일반적인 형식은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입 (공제)	이입 (공제)	지역 내 산출액
		산업1	...	산업n	중간 수요계	소 비	투 자	수 출	이 출	최 종 수 요 계			
내생 부문	산업1	X_{11}	투 입 조	X_{1n}	W_1	C_1	I_1	E_1	O_1	Y_1	M_1	N_1	X_1
	⋮			배 분 구 조 →									
	산업n	X_{n1}		X_{nn}	W_n	C_n	I_n	E_n	O_n	Y_n	M_n	N_n	X_n
	중간투입계	U_1		U_n									
외생 부문	피용자보수	R_1	↓	R_n									
	영업잉여	S_1		S_n									
	고정자본소모	D_1		D_n									
	순생산세	T_1		T_n									
	부가가치계	V_1		V_n									
지역내산출액		X_1		X_n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동 산업연관표의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의 산업 1부문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 부문 및 타 부문에서 생산된 중간재와 본원적 생산요소인 부가가치 $V_1 (= R_1 + S_1 + D_1 + T_1)$ 을 구입하였음을 나타낸다. 가로 방향은 산업 1부문이 자기 지역에서 산출한 X_1 과 해외에서 수입한 M_1 및 타 지역에서 이입한 N_1 을 합한 총공급액($= X_1 + M_1 + N_1$)이 자가지역의 산업 1부문 및 타 부문으로만큼 중간수요로 판매되고, 소비·투자·수출 및 타 지역 이출로 $Y_1 (= C_1 + I_1 + E_1 + O_1)$ 만큼 최종수요로 판매되었음을 나타낸다. 지역 내 산업연관표에서 타 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은 해외로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중간재 또는 최종재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이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는 타 지역으로 이출된 제품이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사용된 것과 소비 및 투자의 최종재로 사용된 것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 항목에는 이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 [그림 VI-2]와 같다.

[그림 VI-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지역 내산 출액
			지역 1		...		지역 n		지역 1		...		지역 n		
			산 업 1	산 업 n	산 업 1	산 업 n	산 업 1	산 업 n	소 비	투 자	수 출	소 비	투 자	수 출	
국산 투입	지 역 1	산업1 ⋮ 산업n	Z_{11}		투 입 구 조 ↓		Z_{1n}		Y_{11}^d		...		Y_{1n}^d		X_1
	⋮	산업1 ⋮ 산업n	배 분 구 조 →												
	지 역 n	산업1 ⋮ 산업n	Z_{n1}				Z_{nn}		Y_{n1}^d		...		Y_{nn}^d		
수입 투입			M_1		M_n		Y_1^m		...		Y_n^m				
부가가치			V_1		V_n										
지역내산출액			X_1		X_n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지역 간 산업연관표에서 세로 방향은 특정 지역이 생산활동을 위해 자가지역 및 타 지역과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투입내역과 임금, 이윤, 생산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낸다. [그림 VI-2]에서 지역 1의 세로 방향은 지역 1이 생산활동을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Z_{11}),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이입된 중간재($Z_{21} + \dots + Z_{n1}$),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중간재(M_1), 그리고 노동, 자본 등의 본원적 생산요소(V_1)를 투입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가로 방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자가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원·부재료로 판매된 내역과 자가지역 또는 타 지역의 소비와 투자로 판매되거나 해외로 수출된 내역을 나타낸다.

[그림 VI-2]에서 지역 1의 가로 방향은 지역 1에서 생산된 제품은 자가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Z_{11}) 및 타 지역의 생산활동에 사용된 중간수요($Z_{12} + \dots + Z_{1n}$)와 자가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해외)로 사용된 최종수요(Y_{11}^d) 및 타 지역의 소비투자로 사용된 최종수요($Y_{12}^d + \dots + Y_{1n}^d$)로 배분되었음을 나타낸다.

3) 건설 등 세분류 부문별 분석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는 165부문 기준으로 건설업 중 토목건설은 교통시설건설, 일반토목시설건설, 산업시설건설, 기타건설 4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대상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세부 산업²⁶⁾의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건설업부문뿐만 아니라 정보화부문 사업 등의 경우에도 세부 산업의 구분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5 기준년 상품분류와 2015 기준년 상품분류를 비교하였을 때 기본부문에서 공항시설은 도로시설에, 지하철시설은 철도시설에, 농림수산토목 중 일부는 하천사방에 포함되었다. 또한 비주택 건축은 비주거용 건물과 산업플랜트로 구분되었다. 특히 산업플랜트는 2005년 기준 상하수도시설, 기계조립설치의 일부 항목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본부문으로 제시되었다. 통신도 우편, 유선, 무선, 기타로 단순화되었으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속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로 변경되었다.

26) 원칙적으로는 상품이나 투입산출표가 상품 구분으로 작성되고 있고 한 산업에 한 상품이 생산된다는 가정하에 산업으로 표현함

〈표 VI-6〉 상품분류 구분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 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18	건 설	55	건축 건설	123	주택 건축	305	주택건축	5010	주거용 건물	501	주거용 건물	50	건물 건설 및 건축 보수		
				124	비주택 건축	306	비주택 건축	5020	비주거용 건물	502	비주거용 건물				
				125	건축 보수	307	건축보수	5030	건축보수	503	건축 보수				
		56	토목 및 특수 건설	126	교통 시설 건설	308	도로시설	5111	도로시설	511	철도시설	511	교통 시설 건설	51	토목 건설
						312	공항시설								
						309	철도시설	5112	철도시설						
						310	지하철 시설								
						311	항만시설	5113	항만시설						
				127	일반 토목	313	하천사방	5121	하천사방	512	일반 토목 시설 건설				
						315	농림수산 토목								
	314					상하수도 시설	5122	상하수도 시설							
	315					농림수산 토목	5123	농림수산 토목							
	316					도시토목	5124	도시토목							
	128	기타 특수 건설	320	기타건설	5131	환경정화 시설	513	산업 시설 건설							
			318	통신시설	5132	통신시설									
			317	전력시설	5133	전력시설									
	55	건축 건설	124	비주택 건축	306	비주택 건축	5134	산업 플랜트							
	56	토목 및 특수 건설	127	일반 토목	314	상하수도 시설									
			128	기타 특수 건설	319	기계조립 설치	5190	기타 건설							
					320	기타건설			519	기타 건설					
F													건설		

〈표 VI-6〉의 계속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 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22	통신 및 방송	62	통신	141	우편 및 전화	341	우편	5710	공영우편 서비스	571	공영우편 서비스	57	우편 및 소화물 전문 운송 서비스	H	운송 서비스		
						342	전화	5720	소화물 전문 운송 서비스	572	소화물 전문 운송 서비스						
					5911			유선통신 서비스	591	유.무선 및 위성 통신 서비스							
				142	부가 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3	초고속망 서비스	5912			무선 및 위성통신 서비스	59	통신 서비스				
						342	전화	5991	통신 재판매 및 중개 서비스	599	기타 전기 통신 서비스						
				142	부가 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4	부가통신	5999	기타 전기통신 서비스	J	정보 통신 및 방송 서비스
						143	방송	346	지상파 방송	6001	지상파 방송 서비스						
				347	유선 및 위성방송			6002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 서비스								
				62	통신	142	부가 통신 및 정보 서비스	345	정보 서비스	6100	정보제공 서비스	610	정보 서비스	61	정보 서비스		

〈표 VI-6〉의 계속

2005 기준년 상품분류				2015 기준년 상품분류											
통합 대분류 (28)		통합 중분류 (78)		통합 소분류 (168)		기본부문 (403)		기본부문 (381)		소분류 (165)		중분류 (83)		대분류 (33)	
24	부 동 산 및 사 업 서 비 스	65	부 동 산	153	컴퓨터 관련 서비스	366	소프트 웨어 개발공급	6211	게임 소프트 웨어 출판	621	소프트 웨어 개발 공급	62	소프트 웨어 개발 공급 및 기타 IT 서비스		
								6212	소프트 웨어 개발 공급						
						367	컴퓨터 관련 서비스	6290	기타 IT 서비스	629	기타 IT 서비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에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

그러나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의 소분류(165부문)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 등의 부문을 기본부문(381분류) 기준으로 세분화된 산업연관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방법을 달리하여 간접적으로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 간 산업연관표(165부문 또는 83부문)를 최대한 활용한 뒤 전국산업연관표상 기본부문별 유발계수와 소분류의 유발계수의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도로, 철도와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생산기술이 표준화되어 산업적 특성보다는 지역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현재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분류(165부문)까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파급효과를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기본부문 배분 시에는 전국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기본부문 및 소분류 유발계수의 비중을 고려함으로써 평균적인 기본부문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지역의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유발효과를 분석한다고 하자. 도로시설은 기본부문으로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을 포괄하는 교통시설 건설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 건설을 기준으로 A지역에 해당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i*지역, *j*산업(교통시설)의 파급효과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_{ij}$$

i 는 지역(16개 광역시도), j 는 산업(소분류 기준)

이후 전국산업연관표상에서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의 비율($\theta_{jk} = E_k / E_j$)을 기본부문 산업별(k , 도로시설)로 계산한다. 위 비율(θ_{jk})은 광역시도마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첨자 i 가 없다. 이 비율(θ_{jk})을 앞서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교통시설(j) 건설에 따른 i 지역의 파급효과(E_{ij})에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인 효과를 계산한다. 따라서 i 지역, k (도로시설) 산업의 최종적인 파급효과는 $E_{ik} = E_{ij} \times \theta_{jk}$ 가 되며 이를 지역별·산업별로 취합하면 A지역의 도로시설 건설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철도, 항만, 환경정화시설 등 기본부문이 없는 IRIO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기본부문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또한 생산유발효과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국산업연관표상 소분류 대 기본부문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의 제공자료가 지역산업연관표의 경우 중분류(82부문), 전국산업연관표는 소분류(161부문)까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선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의 중분류와 소분류의 비중을 적용하고, 소분류와 기본부문의 차이는 취업과 관련이 높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상 제공하지 않는 고용유발계수는 전국산업연관표상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 비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이상을 통해 추정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본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정 계수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통 세 가지, 즉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취업)유발효과 계측을 위하여 각각의 유발계수를 설명하기로 한다. 나아가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생산 유발효과

생산된 상품들과 해외부터 수입된 상품은 중간수요 혹은 최종수요의 형태로 소비된다. 투입산출표는 이를 내생부문에서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잔폐물 및 수입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잔폐물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하 생략한다.

이 과정은 식 (1)로 표현이 가능하다.

$$X_{i1} + X_{i2} + \dots + X_{in} + Y_i - M_i = X_i \quad \text{식 (1)}$$

- 식 (1)에서 X_{i1} 은 i 번째 상품에 대한 1번째 상품의 중간수요를 의미
 - 따라서, $X_{i1} + X_{i2} + \dots + X_{in}$ 은 i 번째 상품에 대한 내생부문의 총 중간수요의 크기를 의미
- Y_i 는 i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를 의미
- M_i 는 i 상품의 수입액을 의미
- X_i 는 i 상품의 국내 총산출액을 의미
- 즉 식 (1)은 i 상품에 대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이 국내 총산출액과 i 상품의 수입액의 합으로 총당되는 되는 과정을 나타냄

총 n 개의 상품에 대해 식 (1)을 모두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행렬의 형태로 투입산출표의 사용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X_{11} + X_{12} + \dots + X_{1n} + Y_1 - M_1 = X_1 \\
 &\quad \quad \quad \dots \\
 &X_{i1} + X_{i2} + \dots + X_{in} + Y_i - M_i = X_i \quad \text{식 (2)} \\
 &\quad \quad \quad \dots \\
 &X_{n1} + X_{n2} + \dots + X_{nn} + Y_n - M_n = X_n
 \end{aligned}$$

식 (2)의 내생부문에 표기된 각 X_{ij} 들을 $a_{ij} = X_{ij}/X_j$ 의 형태로 다시 쓰면,

$$\begin{aligned}
a_{11}X_1 + a_{12}X_2 \dots + a_{1n}X_n + Y_1 - M_1 &= X_1 \\
&\dots \\
a_{i1}X_1 + a_{i2}X_2 \dots + a_{in}X_n + Y_i - M_i &= X_i \quad \text{식 (3)} \\
&\dots \\
a_{n1}X_1 + a_{n2}X_2 \dots + a_{nn}X_n + Y_n - M_n &= X_n
\end{aligned}$$

○ 식 (3)의 a_{ij} 는 금액기준으로 표기된 투입산출표의 내생부문을 각 상품별 산출액으로 나누어 도출한 ij 상품의 투입계수를 의미함

이를 행렬 표현식으로 다시 표기하면 식 (4)과 같이 변형이 가능하다.

$$AX + Y - M = X \quad \text{식 (4)}$$

where,

$$X = \begin{pmatrix} X_1 \\ X_2 \\ X_3 \\ \dots \\ X_n \end{pmatrix},$$

$$A = \begin{pmatrix} a_{11} & a_{12} & \dots & a_{1n} \\ a_{21} & a_{22} & \dots & a_{2n}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a_{n-1n} \\ a_{n1} & a_{n2} & \dots & a_{nn} \end{pmatrix},$$

$$Y = \begin{pmatrix} Y_1 \\ Y_2 \\ Y_3 \\ \dots \\ Y_n \end{pmatrix},$$

$$M = \begin{pmatrix} M_1 \\ M_2 \\ M_3 \\ \dots \\ M_n \end{pmatrix}.$$

이제 식 (4)의 우변과 좌변을 정리하여 국내총산출 벡터인 X 와 나머지 벡터들 사이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X = (I - A)^{-1}(Y - M) \quad \text{식 (5)}$$

식 (5) 우변의 $(I - A)^{-1}$ 는 단위행렬에서 투입계수행렬을 차감한 것의 역행렬 값을 의미한다. 무한등비급수를 행렬에 적용하게 되면 이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begin{aligned} (I - A)^{-1} &= I + A + A^2 + A^3 + A^4 + \dots \\ &= \sum_{l=0}^{\infty} A^l \end{aligned} \quad \text{식 (6)}$$

식 (6)을 살펴보면 해당 역행렬이 최종수요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 는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직접 생산의 변화를 의미
- A 는 투입계수 행렬이므로 이것과 최종수요의 변동이 곱해지게 되면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1차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됨
- A^2 와 최종수요 변동의 곱셈 항목은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2차 파급효과를 의미
- 마찬가지로 논리로 A^n 과 최종수요 변동의 곱셈 항목은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n 차 파급효과를 의미함

이와 같은 과정은 무한대까지 지속되게 되므로 $(I - A)^{-1}$ 항은 여기에 곱해지는 최종수요 변동 값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무한대 합을 의미하게 된다. 즉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량의 변동은 다음의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Delta X = (I - A)^{-1} \Delta Y \quad \text{식 (7)}$$

식 (7)의 $(I - A)^{-1}$ 행렬은 생산유발계수표로 불리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종수요 변동(ΔY)에 따라 경제의 생산이 어떻게 바뀔지는 생산유발계수표 $(I - A)^{-1}$ 에 의해 바로 결정된다. 이는 다시 $(I - A)^{-1}$ 행렬이 최종수요 변동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신규 재정사업의 집행으로 인해 최종수요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식 (7)을 이용하여 국내 전 산업 분야의 생산 변동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생산유발효과 분석이라 명명한다.

권태현(2020)에 따르면 생산유발계수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호킨스-사이몬 조건(Hawkins-Simon Condition)이 충족되어야 한다.

- 호킨스-사이몬 조건은 식 (7)을 도출하기 위한 수학적 필요조건을 의미함
 - 행렬 A 의 모든 원소들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행렬 A 의 norm이 다음을 만족할 것: $N(A) < 1$
- 한국은행에서 투입산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은 충족되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들에서 호킨스-사이몬 조건은 충족됨

[그림 VI-3]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의 핵심개념인 파급 및 유발효과의 개념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에 엔진, 타이어 등등 여러 가지 중간재가 투입된다.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여러 가지 중간재가 투입되며, 이와 같은 생산의 파급과정은 무한히 계속된다 볼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표는 A 에 해당하는 투입계수표를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수입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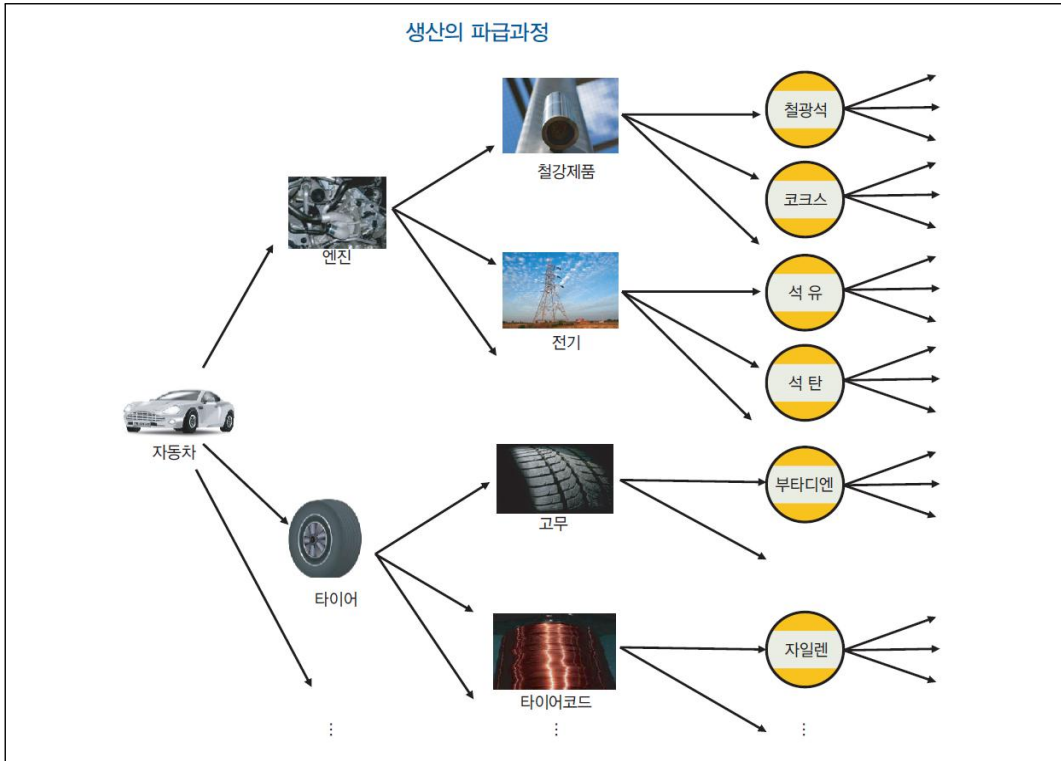
- $(I - A)^{-1}$ 는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중간수요가 모두 내생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A 행렬을 쓴 경우임
- $(I - A^d)^{-1}$ 는 국산품에 대한 내생부문만 추출된 국산투입계수 행렬인 A^d 를 사용한 생산유발계수로 수입재에 의한 투입효과를 배제한 채 국산품의 생산구조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국내 분석에서 주로 활용됨
- 이 밖에도 다양한 생산유발계수표가 존재하며 이는 수입을 외생변수로 취급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²⁷⁾

이하의 분석은 $(I - A^d)^{-1}$ 형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다.

- $(I - A^d)^{-1}$ 형 생산유발계수표는 국내생산파급효과와 수입으로 인한 효과를 구분한다는 장점이 있음
- 나머지 여러 생산유발계수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된 A 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효과가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Delta X = (I - A^d)^{-1} \Delta Y^d$ 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음

27) 다양한 형태의 생산유발계수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2014)의 『산업연관분석해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그림 VI-3] 산업연관분석 유발효과의 개념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투입산출표에는 내생부문뿐만 아니라 상품별 부가가치액 또한 작성되고 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상품별 부가가치액을 벡터 v 로 표기하고 상품별 총산출액 벡터 X 를 사용하면 다음의 상품별 부가가치투입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A^v = v/X, \tag{8}$$

$$\text{where } v = \begin{pmatrix} v_1 \\ v_2 \\ \dots \\ v_{n-1} \\ v_n \end{pmatrix}$$

A^v 를 $n \times n$ 대각행렬로 작성하여 \widehat{A}^v 를 생성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v = \widehat{A}^v X \quad \text{식 (9)}$$

식 (9)의 우변에 위치한 X 를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의 곱을 치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v &= \widehat{A}^v X \\ &= \widehat{A}^v (I - A^d)^{-1} Y^d \end{aligned} \quad \text{식 (10)}$$

식 (10)의 우변의 식을 이용할 경우 국내최종수요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 변동분을 계산할 수 있다. 우변은 부가가치유발효과로 불리고, 우변의 $\widehat{A}^v (I - A^d)^{-1}$ 항은 부가가치유발계수라 명명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단순히 상품별 부가가치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는 최종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이 유발되고 그 과정에서 상품별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직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 고용(취업) 유발효과

생산유발계수와 상품별 부가가치투입계수 벡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계산한 것처럼 고용 및 취업자 수에 대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산업연관표 부속표로 고용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매년 산업연관표 공표와 함께 발표되고 있다.

고용표는 상품별로 연간 투입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부속표이다. 상품 및 산업별 연간 취업자 수와 피용자 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최근 개편으로 각각의 평균 근로시간 정보 또한 작성되고 있다.

고용표는 고용자를 크게 취업자와 피용자로 구분하고 있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피용자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무급가족종사가 많은 농림어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와 피용자 수에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표를 투입산출표와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최종수요 증가에 따른 노동수요 증감의 파급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상품별 고용량(취업자 수 혹은 피용자 수)을 벡터 e 로 표기하고 상품별 총산출액 벡터 X 를 사용하면 다음의 상품별 취업계수(취업자 수) 혹은 고용계수(피용자 수)를 도출할 수 있다.

$$A^e = e/X, \quad \text{식 (11)}$$

$$\text{where } e = \begin{pmatrix} e_1 \\ e_2 \\ \dots \\ e_{n-1} \\ e_n \end{pmatrix}.$$

A^e 를 $n \times n$ 대각행렬로 작성하여 \widehat{A}^e 를 생성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e = \widehat{A}^e X \quad \text{식 (12)}$$

식 (11)의 우변에 위치한 X 를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의 곱으로 치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음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계산식을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e &= \widehat{A}^e X \\ &= \widehat{A}^e (I - A^d)^{-1} Y^d \end{aligned} \quad \text{식 (13)}$$

식 (13)은 앞서 설명한 식 (9)와 모두 동일하나 생산유발계수에 곱해진 대각행렬이 취업계수 혹은 고용계수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식 (13)의 우변을 취업유발효과 혹은 고용유발효과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우변의 $\widehat{A}^e (I - A^d)^{-1}$ 항은 취업유발계수 혹은 고용유발계수라 명명된다. 이는 최종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이 유발되고 그 과정에서 상품별 고용이 변동될 것이기에 최종적인 취업자 수 및 피용자 수의 변동량은 취업계수(고용계수)와 생산유발계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변동(소비 혹은 투자)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다. 최종수요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다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각각의 유발효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에 대하여 지역 내·외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본 사업의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입비는 순수 공사비와 부대비를 합산한 것으로,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의 건설(비주거용 건물) 부문에 투입하여 집계하였다. 통상의 I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중 용지보상비 역시 이전거래이므로 제외하였다. 예비비는 실투자액이 아니므로 역시 투입비에 포함하지 않았고, 사업비 추계 시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이상의 전제사항을 토대로 본 분석에 적용되는 투자비 내역은 <표 VI-7>과 같으며 총투자비는 검토안 기준 402억원, 대안 기준 385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VI-7>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단위: 억원)

투입부문	비용항목	부산광역시	
		검토안	대안
건설(비주거용 건물)	공사비	359	345
	시설부대경비	43	40
합계		402	385

- 주: 1. 총투자비는 2022년 기준임
 2. IRIO 분석을 위한 총투자액은 순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지역 귀속이 불분명한 시운전비 제외)를 합산한 것임
 3. 총투자액은 본 모형의 지역구분과 산업부문분류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의 건설(비주거용 건물) 부문에 투입
 4. IRIO 분석에서는 건설기간 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계하므로 완공 후 운영비는 제외함
 5. 사업비 중 보상비는 이전소득이므로 제외함
 6. 사업비 추계 시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표 VI-8>에 따르면, 본 사업의 지리적 입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부산광역시 지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수도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검토안)

지역별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45	5.7	23	7.0	38	7.1	27	7.1
인천	14	1.8	5	1.5	7	1.3	5	1.3
경기	51	6.4	19	5.8	28	5.2	20	5.1
대전	3	0.3	1	0.3	2	0.4	1	0.4
세종	1	0.2	0	0.1	0	0.1	0	0.1
충북	13	1.6	4	1.3	5	0.9	3	0.9
충남	20	2.5	6	1.8	5	1.0	4	0.9
광주	3	0.4	1	0.3	2	0.4	1	0.3
전북	10	1.3	3	1.0	4	0.7	2	0.6
전남	19	2.3	6	1.7	5	0.9	3	0.8
대구	7	0.8	3	0.8	5	0.9	3	0.8
경북	25	3.2	8	2.5	9	1.6	6	1.6
부산	508	63.5	225	67.4	396	73.0	287	73.8
울산	22	2.7	7	2.0	6	1.1	4	1.1
경남	49	6.1	17	5.2	25	4.6	17	4.3
강원	9	1.1	4	1.1	4	0.8	3	0.7
제주	1	0.2	1	0.2	1	0.2	1	0.2
계	799	100.0	333	100.0	542	100.0	389	100.0

검토안 기준, 생산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99억원이며, 사업 대상지인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3.5%인 508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33억원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7.4%인 22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각각 542명, 389명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취업 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73.0%인 396명, 고용 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73.8%인 287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VI-9〉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대안)

지역별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고용자수 (명)	지역별 비중(%)
서울	43	5.7	22	7.0	37	7.1	26	7.1
인천	14	1.8	5	1.5	7	1.3	5	1.3
경기	49	6.4	19	5.8	27	5.2	19	5.1
대전	2	0.3	1	0.3	2	0.4	1	0.4
세종	1	0.2	0	0.1	0	0.1	0	0.1
충북	12	1.6	4	1.3	5	0.9	3	0.9
충남	19	2.5	6	1.8	5	1.0	4	0.9
광주	3	0.4	1	0.3	2	0.4	1	0.3
전북	10	1.3	3	1.0	4	0.7	2	0.6
전남	18	2.3	5	1.7	4	0.9	3	0.8
대구	6	0.8	2	0.8	4	0.9	3	0.8
경북	24	3.2	8	2.5	9	1.6	6	1.6
부산	486	63.5	215	67.4	379	73.0	275	73.8
울산	21	2.7	6	2.0	6	1.1	4	1.1
경남	47	6.1	17	5.2	24	4.6	16	4.3
강원	8	1.1	4	1.1	4	0.8	3	0.7
제주	1	0.2	1	0.2	1	0.2	1	0.2
계	765	100.0	319	100.0	519	100.0	372	100.0

대안 기준, 생산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65억원이며, 사업 대상지인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3.5%인 48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19억원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효과 중 67.4%인 21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취업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각각 519명, 372명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취업 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73.0%인 379명, 고용 유발효과는 전체 효과 중 73.8%인 275명으로 추정되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 지역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해당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이다. 해당 지수는 사업 투입액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이 클수록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제규모가 적을수록 높게 측정된다.

부산광역시 내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검토안 기준 225억원이며, 대안 기준 215억원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지역내총생산액은 1,042,968억원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검토안 기준 0.0216%, 대안 기준 0.0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단위: 억원)

구분	검토안	대안
투입액 ¹⁾	402	385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225	215
지역 내 총생산(GRDP) ¹⁾	1,042,968	1,042,96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²⁾	0.0216	0.0206

주: 1)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잠정치임

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위 투입액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임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2022, 2024. 1. 23,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016~2021년 전체 비수도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은 0.4918%, 이중 1,000억원 미만 규모 사업의 평균은 0.0703%로, 이와 비교할 때 본 사업은 전체 사업의 평균이나 유사 규모 사업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비수도권 건축 외 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은

0.1573%, 이중 1,000억원 미만 규모 사업의 평균은 0.0691%로, 본 사업은 유사 부문 사업의 평균이나 유사 부문 및 유사 규모 사업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및 비교치

(단위: 억원, %, 건)

구분	본 사업				비교치 (2016~2021년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검토안		대안		전체 사업 ²⁾		유사 규모 ³⁾		유사 부문 ⁴⁾		유사규모·부문 ⁵⁾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전국	해당 지역
생산 유발효과	799	508	765	486	9,910	6,324	1,289	2,787	2,983	1,779	1,424	830
부가가치 유발효과	333	225	319	215	4,005	2,731	524	353	1,206	788	561	367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	0.02161)	-	0.02061)	-	0.4918	-	0.0703	-	0.1573	-	0.0691
사업 수	-				77		29		14		8	

주: 1) 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투입액(검토안 402억원, 대안 385억원)에 대한 사업 해당지역인 부산광역시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1,042,968억원, 2022년 잠정치)으로 나눈 지수를 의미함

2) 제시된 기준치는 2016~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77건을 기준으로 작성됨

3) 유사 규모 비교치는 1,000억원 미만의 사업의 평균값임

4) 유사 부문 비교치는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임

5) 유사 규모·부문 비교치는 1,000억원 미만인 건축 외 부문 사업의 평균값임

자료: 연구진 작성

VII.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은 근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신평동 569-1)’에 위치한 사하경찰서의 현 부지의 청사 일부를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제 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적정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었다.²⁸⁾

본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 한차례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다.²⁹⁾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9,59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연면적 17,187㎡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18억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조사 중 사업계획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변경 사업계획에 따르면 부지규모는 동일하나 청사의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6층의 연면적 13,733㎡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420억원으로 제시되었다.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사업 목적, 부지, 시설규모의 적절성의 검토를 실시했다. 사업 목적에 대한 검토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협소도를 재산정한 결과 161%로 나타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현 부지는 매립지 및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측면에서 사업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대상부지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며, 부지계획 및 주변현황과 유사사례의 평균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탕으로 비교할 때 사업부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규모는 경찰관서 설계기준 등의 면적을 바탕으로 주무부처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확정된 최종인원을 반영하여 적절한 대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대안의 면적은 사업계획안 대비 543.40㎡ 감소한 13,189.54㎡로 산정되었다. 감소된 면적 중 유치장 면적은 부산경찰청이 일부 거점 경찰서에서 통합유치장을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사업에서 유치장의 설

28)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요청(조세연)」, 2023. 5. 11.

29)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변경 통보(부산 사하경찰서 신축)」, 2023. 12. 6.

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면적을 제외했다. 또한 본 사업 이후 존치 예정인 별관 등 건물과 중복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했으며, 검토를 통해 전용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공용면적 역시 감소되었다.

조정된 시설규모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사업계획안의 시설면적을 그대로 준용한 검토안의 경우 사업계획안 대비 66억원 증가한 486억원으로, 대안의 경우 45억원 증가한 465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총사업비 증가 요인으로는 현장조사 결과 추가로 필요하다 판단하여 반영된 헬리컬파일 공사비와 예비비가 있었으며, 기본공사비와 철거공사비는 사업계획안보다 감소했다.

정책성 분석에서는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과 이해당사자 사업수용성 등 외부 여건의 두 가지 세부평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 추진 여건을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했다. 내부 여건 측면에서 본 사업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무부처의 사업 추진 의지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유치장 설치와 같은 사업 관련 이슈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여건 측면에서는 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역시 본 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는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사업의 대상지인 부산광역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7개 시·도 기준으로는 8위에 해당하여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7개 시·군별 기준으로는 22위로 나타나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검토안과 대안이 각각 0.0216%, 0.0206%로 나타났다. 이는 2016~2021년도 전체 비수도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인 0.4918%나, 이중 1,000억원 미만 규모 사업의 평균인 0.0703%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동 기간 비수도권 건축 외 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인 0.1573%나, 이중 1,000억원 미만 규모 사업의 평균인 0.0691%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Ⅶ-1〉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요약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신평동 569-1)			
사업규모	부지면적	9,596㎡		
	건축연면적	13,732.94㎡	13,189.54㎡	
사업기간	2024~2029년			
총사업비	공사비	37,861	39,437	37,905
	시설부대경비	4,144	4,778	4,394
	예비비	-	4,422	4,230
	합계	42,005	48,637	46,529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2)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정책제언

부산 사하경찰서는 32만 사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본 청사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내·외부 균열과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립지 연약지반에 건설되어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신규 청사 건설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무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방문 민원인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진은 사업의 여건에서부터 적정규모, 비용, 정책과의 일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추진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진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다. 경찰서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규모 및 사업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시점의 정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뢰 시점에는 정원 산정에 오류가 있어 사업 진행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자체 유치장 시설의 경우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나, 현재 부산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광역유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치장 시설의 이용 현황과 향후 유치장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신축 경찰서가 향후 예상되는 치안서비스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시설공간 및 인력 등을 연
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지는 인구밀집지역과 밀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으며, 실제로 별관 신축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
나 공무로 인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 주무부처 차원에서 이를 저감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본 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경찰관서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4~2018년)」, 2013.
- _____,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경찰관기동대) 시설면적 기준 개선」, 2020.
- _____, 「경찰관서 설계기준」, 2021.
-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2020. 9.
- ____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_____,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2022. 12.
- _____,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2023. 5.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3. 5.
- _____,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_____, 「총사업비 관리지침」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2021. 5.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2022.
- 부산광역시, 「제59회 부산통계연보」, 2021.
- 사하구, 「제42회 통계연보(2021)」, 2022.
- 부산광역시, 「제61회 부산통계연보」, 2023.
- _____,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2023. 3.
- _____,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2023. 5.
- _____,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5호, 2022. 10. 21.
- 공사비정보광장, <http://pcae.g2b.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https://zeb.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한국환경건축연구원, <https://www.kriea.re.kr/>


부록 관련 공문

1. 관련 공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기 획 재 정 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o-Location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요청(조세연)

2023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오니, 수행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제1차 사적 요청 목록(조세연). 끝.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수신자 법사예산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전달 05/11

주무관 박형민 담당성심사과장 윤범석

참조자

시행 타당성심사과-413 (2023-05-11) 접수 연구사업팀-1809 (2023. 5. 12.)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ef.go.kr>
(어진동)
전화 044-215-5413 전송 0508-215-8120 / gudais3957@mosf.go.kr / 비공개 (5)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나라



기 획 재 정 부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사업계획 변경 통보(부산사하경찰서 신축)

1. 경찰청 재정담당관-5279호(2023.12.6)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수행중인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에 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주무부처가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계획 변경 요구서 제출 공문 1부.
 2. 사업계획 변경 요구서(부산사하경찰서 신축) 1부. 끝.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수신자

사무관	정철교	타당성심사과장	윤병석
-----	-----	---------	-----

참조자

시행 타당성심사과-1044 (2023-12-06) 접수 연구사업팀-4478 (2023.12.7.)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 http://www.moef.go.kr
 (어진동)
 전화 044-215-5416 전송 044-215-8120 / kyo80@korea.kr / 비공개 (5)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나라

튼튼한 당당한 화합하는 부산경찰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 제출(2차)

1. 관련근거

정부투자분석센터-1550(2023.7.24.)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2차)

2.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 추가 보완자료(2차)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적정성 검토 추가 보완자료(2차) 1 부. 끝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장



수신자

연일 09/15

경위 강래관 공업사무관 김홍기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협조자

시행 경무기획과-24265 (2023-09-18) 접수 정부투자분석센터-1975 (2023.9.20.)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경찰청 / http://www.bspolice.go.kr
공공안전부 경무기획과 시설계 (연산동)
전화 051-899-3922 전승 051-899-1915 / kang1225@police.go.kr / 비공개 (5)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튼튼한 당당한 화합하는 부산경찰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 보완자료 제출(3차)

1. 관련근거

정부투자분석센터-1903(2023.9.6.)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3차)

2.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 추가 보완자료(3차)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적정성 검토 추가 보완자료(3차) 1 부.

붙임1,2,3) 추가 보완 서류 첨부. 끝.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장



수신자

연일 09/15

경위	강래관	공업사무관	김홍기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	-----	-------	-----	--------	-----

협조자

시행 경무기획과-24264 (2023-09-18) 접수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경찰청 / <http://www.bspolice.go.kr>
 공공안전부 경무기획과 시설계 (연산동)
 전화 051-899-3922 전승 051-899-1915 / kang1225@police.go.kr / 비공개 (5)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튼튼한 당당한 화합하는 부산경찰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제출(4차)

1. 관련근거

정부투자분석센터-2237(2023. 10. 25.)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

2.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적정성 검토 추가 설명자료 1 부. 끝.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장



수신자

전달 12/01

경위 강래관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협조자

시행 경무기획과-31317 (2023-12-01) 접수 정부투자분석센터-2648 (2023. 12. 4.)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경찰청 / http://www.bspolice.go.kr
공공안전부 경무기획과 시설계 (연산동)
전화 051-899-3922 전승 051-899-1915 / kang1225@police.go.kr / 비공개 (5)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튼튼한 당당한 화합하는 부산경찰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수신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제출(5차)

1. 관련근거

정부투자분석센터-61(2024.1.9.)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협조 요청(5차)

2.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검토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적정성 검토 추가 설명자료 1 부. 끝.

부 산 광 역 시 경 찰 청 장



수신자

01/11

경위 강래관 공업사무관 김홍기 경무기획과장 김만수

협조자

시행 경무기획과-1171 (2024-01-11) 접수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경찰청 / <http://www.bspolice.go.kr>
공공안전부 경무기획과 시설계 (연산동)
전화 051-899-3922 전승 051-899-1915 / kang1225@police.go.kr / 비공개 (5)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